공공기관연구자료 17 – 01

www.mosf.go.kr, www.kipf.re.kr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

공공기관 현황 편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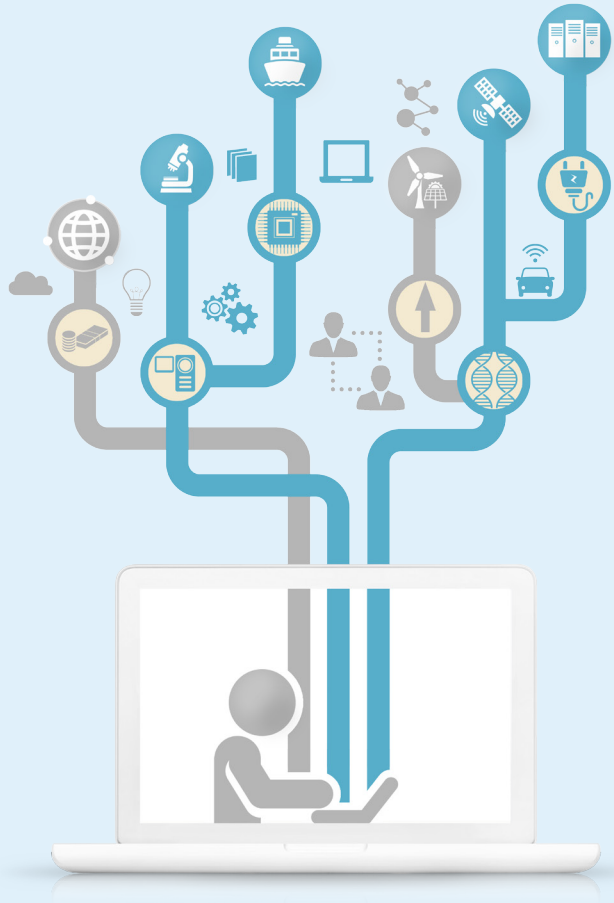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 공공기관 현황 편 -

2017. 10.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간 사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인력(임직원 정원)은 2016년 말 현재 약 29만 9천여 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약2,725만 명) 중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경찰, 일반행정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만 9천명)의 47.6%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015년 말 비중(46.0%)보다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기관 총 수입액 규모는 정부예산의 약 1.6배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국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인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로의 접근 편의성 및 이용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방만 경영 실태, 채용 현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증가하는 검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알리오시스템의 통합공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검색 기능을 탑재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월)』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2019년까지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더 나아가 현 알리오시스템을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마당을 신설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현황 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는 1장에서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지정현황,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그리고 공공기관 전체의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총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2장에서는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본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최근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알리오시스템의 40개 경영정보 항목 중 20개 항목과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기관개요, 인력 및 조직현황, 경영현황, 보수수준, 외부평가결과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2012~2016년)의 기관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정보로의 접근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 17

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17

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 17

1) 공공기관의 지정 ····· 17

2)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18

3)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20

나. 2017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21

1) 2017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 21

2)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 27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 33

가.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 33

1)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 33

2)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 ····· 41

나.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 45

1)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 45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50

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동향 ····· 63

1)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요 ····· 63

2) 1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65

3) 2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72

4) 3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 84

3. 2017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100

가. 일반현황 ····· 102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 102

2) 공공기관 설립형태 ····· 107

3)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115

4)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117

5)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 120

6)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 129

7) 상장 공공기관 현황 ····· 146

나. 인력현황 ····· 162

1) 임직원 수 현황 ····· 162

2) 신규채용 현황 ····· 169

3)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 175

다. 재무현황 ····· 177

1) 총평 ····· 177

2) 부채 현황 ····· 181

3) 자산 현황 ····· 192

라. 손익현황 ····· 197

마. 보수수준 ····· 204

1)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4

2) 상임임원 연봉 수준 ····· 209

3) 복리후생비 수준 ····· 216

바. 외부 평가결과 ····· 222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 222

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48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72

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 294

참고문헌 ····· 308

〈부록 1〉 기관명 색인 ····· 315
〈부록 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30개, 2017.9월 현재) ····· 329
〈부록 3〉 공공기관 설립근거(2017.9월 기준) ····· 335
〈부록 4〉 공공기관 소재지 및 홈페이지(2017.9월 기준) ····· 351
〈부록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7.9월 기준) ····· 372
〈부록 6〉 2017년 기금현황(67개 기금) ····· 377
〈부록 7〉『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 383
〈부록 8〉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 386
〈부록 9〉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 422

표 차 례

<표 I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 20
<표 I -2> 2017년 공공기관(330개, 2017.9월 기준) ····· 23
<표 I -3> 2017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7.9월 기준) ····· 27
<표 I -4>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7.9월 기준) ····· 28
<표 I -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7.9월 기준) ····· 29
<표 I -6> 2017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 31
<표 I -7> 비정규직 업무 구분 ····· 41
<표 I -8>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으로 인한 전형별 주요 변화 ····· 42
<표 I -9> 공공기관 부채 현황 ····· 50
<표 I -10>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 52
<표 I -11>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 58
<표 I -12>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 58
<표 I -13> 부채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 59
<표 I -14>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 ····· 60
<표 I -15>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 ····· 64
<표 I -16> 해외자원개발 분야 부채감축계획(2013~2017년) ····· 65
<표 I -17>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선안 ····· 67
<표 I -18>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후 기관별 정원・예산 변동 ····· 67
<표 I -19>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후 변화 ····· 68
<표 I -20> 고용・복지 분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조정 내역 ····· 70
<표 I -21>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능조정 전후 변화 ····· 72
<표 I -22> 2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16.12월말 기준) ····· 76
<표 I -23>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 78
<표 I -24>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 80
<표 I -25>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 81
<표 I -26>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세부계획 변경 ····· 83
<표 I -27>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통합 세부계획 보완 ····· 84

<표 I -28> 3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16.12월말 기준) ····· 85
<표 I -29>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 85
<표 I -30> 에너지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 90
<표 I -31>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 90
<표 I -32>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안 ····· 92
<표 I -33>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조정 ····· 92
<표 I -34> 환경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 과제 ····· 93
<표 I -35> 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 94
<표 I -36> 교육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 과제 ····· 95
<표 I -37> 분야별 완료 과제 ····· 96
<표 I -38>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 98
<표 I -39> 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 99
<표 I -40>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 99
<표 I -4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7.9월 기준) ····· 103
<표 I -42> 전년대비 2017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 106
<표 I -43>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 ····· 110
<표 I -44>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 111
<표 I -45>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 ····· 111
<표 I -46>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 112
<표 I -47>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 113
<표 I -48>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 114
<표 I -4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116
<표 I -50>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23개 기관) ····· 118
<표 I -5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7.9월 기준) ····· 121
<표 I -52> 2016~2017년 지역별 소재 공공기관 분포율 비교(309개 기관 기준) ··· 121
<표 I -53> 2017년도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 122
<표 I -54>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 124
<표 I -5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126
<표 I -56> 2016~2017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 비교 ····· 127
<표 I -57>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7.7.31. 기준) ····· 128

<표 I -58>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 132
<표 I -5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7년 기준) ····· 134
<표 I -60>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135
<표 I -61>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 140
<표 I -6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 141
<표 I -6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 145
<표 I -64> 상장 공공기관 개요 ····· 148
<표 I -65>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 149
<표 I -66>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 150
<표 I -67>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4~2016년) ····· 152
<표 I -6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4~2016년) ····· 156
<표 I -69>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4~2016년) ····· 158
<표 I -70>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4~2016년) ····· 159
<표 I -7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 163
<표 I -7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 164
<표 I -73>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 166
<표 I -74> 2016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 168
<표 I -75> 2016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 169
<표 I -76>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 170
<표 I -77>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 171
<표 I -78> 2016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 172
<표 I -79>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6년 기준) ····· 173
<표 I -80>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 174
<표 I -8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기간제) ····· 175
<표 I -8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 176
<표 I -8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 176
<표 I -84>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 179
<표 I -85>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 182
<표 I -86>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 189
<표 I -87> 2016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 190

<표 I -8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 193
<표 I -89>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 195
<표 I -90> 2016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 197
<표 I -91>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 198
<표 I -92> 2016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 201
<표 I -93>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 203
<표 I -94> 최근 5년간 소관 회계별 정부배당수입 실적 ····· 204
<표 I -95>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 205
<표 I -96>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 208
<표 I -97>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 210
<표 I -98>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 216
<표 I -99>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 219
<표 I -100>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 221
<표 I -101> 2016년도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대상 기관 ····· 226
<표 I -102>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 228
<표 I -103>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 229
<표 I -104>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 ····· 234
<표 I -105>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 ····· 235
<표 I -106>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종합등급기준) ····· 236
<표 I -107>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 237
<표 I -108>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공기업) 현황 ····· 241
<표 I -109>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위탁집행·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현황 ··· 242
<표 I -110>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강소형 준정부기관) 현황 ····· 243
<표 I -111>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 245
<표 I -112>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 246
<표 I -113>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 247
<표 I -114>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247
<표 I -115>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그룹분류(2016년 기준) ··· 249
<표 I -11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 251

<표 I -117>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 252
<표 I -118>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 254
<표 I -119>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17.1월 기준) ····· 255
<표 I -120>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 257
<표 I -121>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 261
<표 I -122>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 263
<표 I -123>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 263
<표 I -124>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 266
<표 I -125> 2016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 269
<표 I -126>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 269
<표 I -127>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 270
<표 I -128> 2016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 278
<표 I -129> 전년대비 2016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 282
<표 I -130> 전년대비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 285
<표 I -131>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 286
<표 I -132>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287
<표 I -133> 2016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 289
<표 I -134> 2016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 290
<표 I -13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7년 3월 기준) ····· 295
<표 I -13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7년 3월 기준) ····· 295
<표 I -137>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 296
<표 I -138>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 298
<표 I -139>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 ····· 300
<표 I -140>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 301
<표 I -141>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현황 ····· 302
<표 I -142>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 304
<표 I -143>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 305

> 그림 차례

<그림 I -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7년) ····· 22
<그림 I -2>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 108
<그림 I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 138
<그림 I -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 138
<그림 I -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 140
<그림 I -6>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 144
<그림 I -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 146
<그림 I -8>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 154
<그림 I -9>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 154
<그림 I -1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 163
<그림 I -11>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 174
<그림 I -12>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추이 ····· 180
<그림 I -13>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 180
<그림 I -14>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 183
<그림 I -15>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 183
<그림 I -16>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 184
<그림 I -17>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 185
<그림 I -1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 186
<그림 I -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 186
<그림 I -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 187
<그림 I -2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가율 추이 ····· 188
<그림 I -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 193
<그림 I -23>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 194
<그림 I -2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 199
<그림 I -25>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 206
<그림 I -26>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 206
<그림 I -27>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기관장) ····· 212

<그림 I -2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상임이사) ····· 213
<그림 I -29>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상임감사) ····· 213
<그림 I -30>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기관장) ····· 214
<그림 I -31>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상임이사) ····· 215
<그림 I -32>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상임감사) ····· 215
<그림 I -33>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 217
<그림 I -34>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율 추이(무상지원 기준) ····· 218
<그림 I -35>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 219
<그림 I -36>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 220
<그림 I -37>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 221
<그림 I -38>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 230
<그림 I -39>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 231
<그림 I -40>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 232
<그림 I -41>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비교 ····· 233
<그림 I -42>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61
<그림 I -43>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 271
<그림 I -44>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275
<그림 I -45> 공공기관 유형별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 287
<그림 I -46>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 및 불성실공시기관 수 ····· 301
<그림 I -47>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분포 ····· 303
<그림 I -48>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유형별 벌점 구간 분포 ····· 303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 2017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Ⅰ 공공기관 현황 개요

1.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 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 비해 기관 운영상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가 용이한 편임.

2)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여기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을 설계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2에 이르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기타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제11조~제15조, 보칙 조항(제53조~제54조) 및 벌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이외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운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및 <별표2>에서 명문화 되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표 Ⅰ－1〉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 참고

3)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유형구분 변경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나. 2017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1)]

1) 2017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 2017년 1월 총 332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17년 공공기관 수는 2016년(321개, 12월 기준)[2)] 대비 11개 기관이 증가함.

- 2016년 공공기관(321개) 중 2개 기관[3)]이 2017년에 지정 해제되고 13개 기관[4)]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수가 전년대비 11개 기관 증가함.

○ 공운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17년 공공기관의 수(332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34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Ⅰ-1>과 같음.

---

1) 기획재정부『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보도자료 및『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을 참조

2) 2016년 1월 기준 공공기관의 수는 323개였으나 4개의 공공기관이 2개 기관으로 통·폐합(舊대한체육회+舊국민생활체육회→통합 대한체육회, 舊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舊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되어 7월 수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기준 공공기관 수는 321개 임.

3) 기초전력연구원, 녹색사업단

4) <표 Ⅰ-5> 참고

〈그림 Ⅰ－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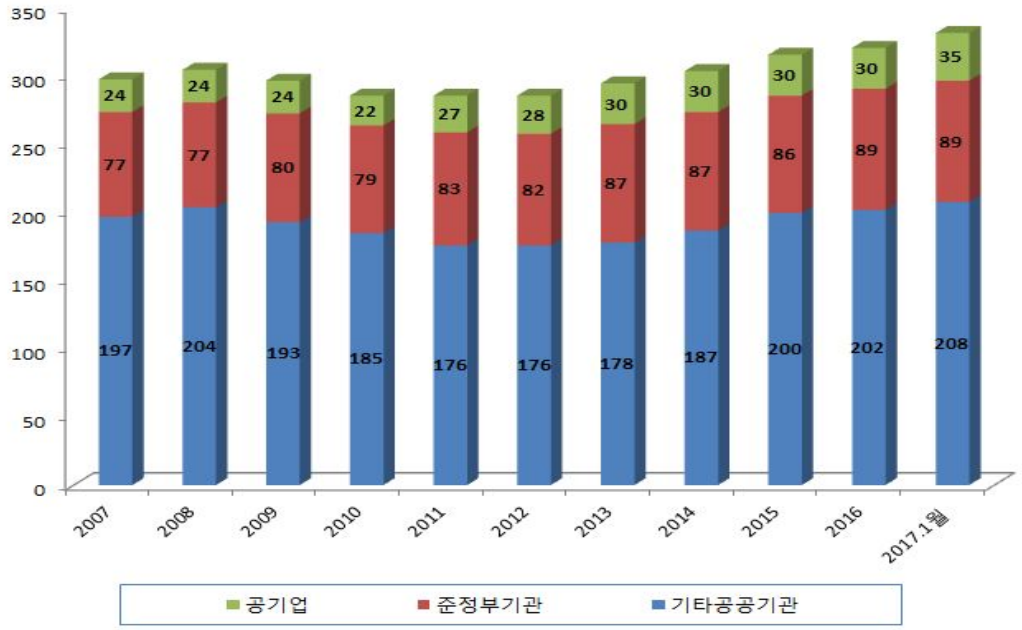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6)』 및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4.)』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 2017년 상반기 중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기존 4개의 공공기관이 2개 기관으로 신설 출범하게 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수시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수는 1월 기준 332개보다 2개 기관이 적은 330개로 조정됨.

○ 2017년 2월 13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舊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舊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타공공기관)이 통합하여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 출범함.

○ 2017년 4월 1로 기타공공기관인 舊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및 舊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민간기관인 舊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등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신설 출범함.

○ 기존 4개 공공기관의 통합을 통해 신설 출범한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017년 9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

-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2개 통합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 수시 지정됨.

○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330개)은 <표 Ⅰ-2>와 같음.

〈표 Ⅰ－2〉 2017년 공공기관(330개, 2017.9월 기준)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2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舊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형구분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2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舊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舊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07개)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07개)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07개)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을 참고하여 재구성

주: 1. 2017년 7월 개편된 정부조직과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330개)을 기준으로 작성. 부처명 변경 또는 신설 부처는 아래와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舊 국민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소방청(舊 국민안전처)

2. 밑줄 표시된 기관(5개)은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된 기관임.
3. 굵게 표시된 기관(15개)은 2017년 1월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13개)과 9월 수시 지정된 기관(2개)임.
4. 2017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후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3개)은 (괄호)에 변경 전 기관명을 명기함.

□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표 Ⅰ-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5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1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88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6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2개 기관임.

- 2017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73개였으나 9월 공공기관 수시 지정 결과[5]에 따라 72개로 조정됨.

○ 기타공공기관은 207개 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62.7%를 차지함.

- 2017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은 208개였으나 기존 3개 기관이 기관 통·폐합[6]으로 해산되고 신설 출범한 2개 기관[7]이 2017년 9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에 따라 기관수가 207개로 조정됨.

---

5) 2017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舊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기타공공기관인 舊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2017년 4월 통합되어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 출범하고 9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가 73개(1월 기준)에서 72개(9월 기준)으로 줄어듦.

6) 2017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舊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舊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폐합되었으며 舊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과 舊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통·폐합됨.

7)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표 Ⅰ-3〉 2017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7.9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30개	14개 (4.2%)	21개 (6.4%)	16개 (4.8%)	72개 (21.8%)	207개 (62.7%)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을 참고하여 재구성
주: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330개)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16년 말 공공기관과 2017년 9월 기준 공공기관을 비교하면,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30개로 2016년 12월 기준의 공공기관 수(321개)보다 9개 증가함.

○ 2017년에 발생한 신규지정, 유형변경 및 통합기관 수시 지정결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유형별 기관수가 2016년과 차이가 있음.

-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16년과 기관수가 동일함.
- 2016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5개 기관[8]이 2017년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어 준시장형 공기업 수가 16개에서 21개로 증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당초 2017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시에는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나 2017년 9월 공공기관 수시 지정의 영향으로 기관수가 변동함[9].
-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지정(13개), 변경 지정(5개) 및 지정해제(2개)의 영향과 2017년 9월 공공기관 수시 지정의 영향으로 2016년(202개)보다 기관수가 5개 증가한 207개임.

○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 현황과 기관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표 Ⅰ-4>와 <표 Ⅰ-5>와 같음.

8) <표 Ⅰ-5> 참고

9) 2017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舊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기타공공기관인 舊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2017년 4월 통합되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 출범하고 9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가 73개(1월 기준)에서 72개(9월 기준)으로 줄어듦.

〈표 Ⅰ－4〉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7.9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16년말 (A)	2017년		(전년대비 변동내역)			
		1월	9월(B)	증감 (B–A)	신규 (수시 지정)	해제 (기관해산)	유형변경
① 공기업	30	35	35	+5	-	-	+5
시장형	14	14	14	-	-	-	-
준시장형	16	21	21	+5	-	-	+5
② 준정부기관	89	89	88	△1	-	△1 (△1)	-
기금관리형	16	16	16	-	-	-	-
위탁집행형	73	73	72	△1	-	△1 (△1)	-
③ 기타공공기관	202	208	207	+5	+15 (+2)	△5 (△3)	△5
계	321	332	330	+9	+15 (+2)	△6 (△4)	-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을 참고하여 재구성

주: 1. '전년대비 변동내역'은 2016년 말 공공기관과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을 비교하여 작성

2. 기관 통·폐합에 따라 해산된 기존 공공기관은 '해제'에 포함하여 처리(괄호에 해산된 기관수 표시)하고 통합 신설기관으로 수시 지정된 기관은 '신규'에 포함하여 처리(괄호에 수시 지정된 기관 표시).

〈표 Ⅰ-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7.9월 기준)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15개)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舊 미래창조과학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17.9월 수시 지정 (舊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9월 수시 지정 (舊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제 (5개)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전력연구원	지정해제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他기관과 통·폐합
	산림청	녹색사업단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 (기관해산)	2017.9월 수시 지정 (기관통합에 따른 이전기관 청산)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형 변경 (2개)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 공기업	(2016) 기타공공기관 → (2016)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을 참고하여 작성

주: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주무부처명 기재.

□ 2017년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2017년 1월 신규 지정된 13개 기관과 9월 수시 지정된 통합 신설 출범 2개 기관 등이 포함됨.

○ 2017년 1월 신규지정 기관(13개) 중 2015년 하반기 또는 2016년 중 신설 출범한 기관은 6개 기관이며 나머지 7개 기관은 2015년 하반기 이전 설립된 기관이거나 직원정원 증가 등으로 공운법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2017년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기관임.

- 신규 지정된 기관 중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재출연기관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2015년 5월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중 농림·수산분야 기능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 기능 중 일부를 포괄 승계하여 신설 출범한 기관임[10].

○ 2017년 9월 수시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유사·유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여 신설한 기관임.

○ 2017년 신규 지정된 15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구분됨.

○ 2017년 중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은 <표 Ⅰ-6>과 같음.

10) 2016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녹색사업단은 제2차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고 산림복지 업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였으며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시 지정 해제됨.

〈표 Ⅰ-6〉 2017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시기	기관규모 (2016년말기준)	
					직원 정원	자산
2017.1월 신규지정 (13개)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2016.7월	158	833
	교육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16.6월	150	20,80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舊 미래창조 과학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2.12월	31	7,487
		국립부산과학관		2015.7월	40	1,967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3.1월	35	2,221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9월	66	2,007
	산업통상 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2000.1월	670	134,506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2011.9월	52	65,362
	보건복지부	한약진흥재단		2015.11월	55	25,196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1978.10월	250	17,290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1.9월	103	257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6.4월	148	107,531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012.5월	51	1,421
2017.9월 수시지정 (2개)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17.4월	96	-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2월	208	-

자료: 기획재정부『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주무부처명 기재.

2. 2017년 통합 신설출범한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직원정원은 2017년 2분기 기준이며 자산 규모는 관련 정보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 공란으로 처리

□ 2016년 공공기관 중 2017년에 지정 해제된 5개 기관[11]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흡수 통합되거나 기관 해산되고 신규기관으로 신설 출범한 기관임.

○ 2016년 기타공공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은 제3차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의 에너지 분야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으로 2016년 12월 흡수 통합됨에 따라 2017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2016년 기타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은 제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의 농림·수산 분야 추진계획에 따라 기관 업무가 한국임업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2016년 신설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되고 기관이 해산됨에 따라 2017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7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

○ 2016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2017년 4월 통합되어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신설 출범함에 따라 기관이 해산됨[12].

- 정부는 기증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와 인체조직구득기관의 통합을 추진함.
-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신설된 기관임.
- 신설 출범한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017년 9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

○ 2016년 공공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제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의 농림·수산 분야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 출범함에 따라 기관이 해산됨[13].

- 신설 출범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9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됨.

---

11) <표 Ⅰ-5> 참고

12) 기관이 해산되고 다른 기관과 통합되어 신규 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해산된 종전 기관에 대한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행위는 하지 않음.

13) 기관이 해산되고 다른 기관과 통합되어 신규 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해산된 종전 기관에 대한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행위는 하지 않음.

□ 2016년 공공기관 중 5개 기타공공기관[14]이 2017년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 되어 공운법 적용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 5개 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모두 현재 공기업으로 지정된 3개 기관의 자회사임.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한국관광공사(준시장형 공기업)의 자회사이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시장형 공기업)의 자회사이며, 나머지 3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시장형 공기업)의 자회사임.

○ 이들 기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등이 추진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변경 지정함.

2.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15]

(1)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

□ 정부의 2016년, 2017년 인력운영 방향은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정착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6년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임.

-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에너지·SOC 공공기관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채용연계 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준수하게 함.

---

14) <표 Ⅰ-5> 참고

15)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2016.2.26.)』 및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2017.2.10.)』을 참고하여 작성함

○ 2017년에도 청년고용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직무능력중심 채용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보다 강조함.

- NCS[16]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는 2015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30개 기관에 도입되었고 2016년 230개 기관으로 확산됨.
- 2017년에는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채용 관련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자 함.

□ 채용제도 부문의 기본방향으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강조됨.

○ 고졸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고졸취업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졸자 채용 확대와 조직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채용형 인턴제와 체험형 인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턴 과정을 보다 내실화하여 인턴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35%를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17].

-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확대 계획을 기관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기 수립된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여성관리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인력운영제도 부문의 기본방향으로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확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의 적정처우 제공 등이 제시됨.

○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 비정규직과 간접고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종전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개편하는 등 비정규직 인력운용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하도록 함.

---

16)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7)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9조 ②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기관별 여건에 맞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

○ 그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채용·인력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관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절차의 사전 공개 및 임직원 가족의 채용 우대 금지 등 인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인력운영 세부 추진방안[18)]

□ 공공기관 신규채용 부문의 청년고용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고용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총 18,518명 수준임.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2016년 4,441명)을 활용하여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절벽을 완화하고자 함.
- 육아 휴직자 대체 충원을 활성화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함.
-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청년의무고용비율(3%)를 준수하도록 함.

○ 채용, 승진 등 공공기관 인사 운영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관 내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구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잡알리오(job.alio.go.kr) 같은 채용관련 포털에 이를 공지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분기별과 월별로 기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18)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인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신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2)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채용'에서 별도로 기술

□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확대 및 내실화의 일환으로 고졸채용 기반구축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고졸적합직무 발굴 및 고졸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고졸취업자가 공공기관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 2016년에는 기관별 고졸채용 계획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분야, 난이도, 인력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함.

- 연도별 고졸자 채용 규모[19]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 고졸자 채용계획은 전년대비 3.0% 늘어난 2,137명임.

○ 고졸자의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위하여 『2014년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한 보수·승진·교육 등의 지원방안이 보다 내실화되어 운용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자 함.

- (보수) 고졸 초임을 대졸의 70% 이상으로 최저 기준 설정
- (승진) 근속승진 최소기간(통상 4년) 후 대졸과 동등한 직급으로 승진
- (교육) 대졸 수준의 근무 능력 확보와 충분한 교육 훈련 보장
- (후진학 지원) 직무유관 분야 중심으로 후진학 프로그램 발굴·운영

○ 이밖에도 고졸채용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고졸자 수준에 맞는 채용방식을 권고하였으며 응시기준에 '군필'을 배제하도록 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함.

○ 공공기관은 신규인력을 인턴을 거쳐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제 또는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인턴들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최저교육이수제, 최종업무발표회 등 인턴 내실화 및 기관의 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함.

○ 채용형 인턴제는 정규직 채용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채용 자격·절차는 신규채용에 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보수수준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규직 전환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인턴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5개월[20]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함.

---

19) 연도별 고졸자 채용 규모 : (2013년) 2,118명 → (2014년) 1,859명 → (2015) 2,075명

20) 2017년 기준 2~7개월

○ 체험형 인턴제는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학교장 추천, 지역학교 연계 등 다양한 채용방식을 권장하였으며 근무기간은 1~5개월[21] 범위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함.

○ 인턴에 대한 권장 보수수준은 2016년 기준 월 135만원으로 업무 난이도·기관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였으며, 채용규모는 전년도말 공공기관 정원의 약 5%로 하고 정규직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7년에는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함.

○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근무 관리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고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함.

○ 인턴의 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취업시험 응시자에게 특별휴가제를 시행하고, 경력증명서·입사추천서 발급 등 취업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공공기관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설정한 2017년도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간선택제·자동육아휴직제도 활용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 문화를 선도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은 여성관리자 확대계획(2013~2017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기관별로 설정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관리대상기관[22]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3년 13.0%에서 2017년 18.8%로 확대할 계획임.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함.

- 공공기관이 경력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일·가정양립 문화를 선도하도록 함.
-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연계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함.

---

21) 병원, 연구원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 해외근무 등 장기 근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5개월을 초과하여 운영 가능

22) 2015년 기준 총 267개로 여성관리자 비율 40%이상 기관 등을 제외함.

- 2017년에는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인증 획득하도록 유인[23]을 제공함.

○ 201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에게 조속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17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남는 정원이 있을 경우 인근직장 및 지역사회 등에 개방하여 지역의 여성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2017년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 연가 사용 활성화 등 출산장려 대책 도입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공공부문 출산장려를 권고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2016.8월, 보건복지부)』 내용[24]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용인원의 35%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

○ 전년도에 비수도권 지역인재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채용인원의 35%)에 미달한 기관은 당해연도 중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2017년에는 기관 특성상 권장기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25]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설정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기관별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확대방안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함.

-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이전지역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부여 등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확대정책을 1개 이상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 함.
- 채용여건 등에 맞는 적정 채용목표를 설정하고 기관별로 설정된 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권역별로 이전지역 인재를 관리하도록 하여 현재 10개 시·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6대 권역별로 관리하도록 함.

---

23)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사업 참여십 가점, 투·융자 대출시 우대 등 혜택 부여함.

24) ① 다자녀 교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공공기관 확산
② 공무원연가신청 사유란 삭제,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 확산

25) 신규채용이 없거나 기관 특성상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및 전환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전환형 패키지 및 공공기관 대체인력풀 활용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전문기관 컨설팅, 교육·홍보 활성화 및 가족친화 인증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확산시키고자 함.

○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불리하지 않게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운영하도록 함.

- 신규채용 및 전환 인원이 2016년 신규채용의 7% 수준, 2017년 신규채용의 10% 수준이 되도록 기관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함[26].
- 2017년에는 2018년까지 전환인원이 공공기관별 정규직(무기직 포함) 정원의 3% 이상[27]이 되도록 기관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권고 함.
- 2016년에는 육아휴직, 질병·사고, 퇴직준비 등과 연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운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시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활용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 제도의 설계와 도입, 활용과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스마트워크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인증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초과근로 감소, 연차휴가 활성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유도하고자 함.

□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지속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목표관리제 시행 및 정규직 채용을 제도화하여야 하며,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상시·지속업무[28]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예외사유[29]를 제외하고 정원의

---

26) 연도별 시간선택제 확대 계획: (2014년) 3% → (2015년) 5% → (2016년) 7% → (2017년) 10%

27) 『일·가정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방안(2016.11월)』에 따라 중앙부처·공공기관에 도입된 권고 목표

28) 비정규직 업무 중 ①일시·간헐업무, ②한시적 업무, ③60세이상 고령자, ④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제외한 업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에서는 5%내 운영 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함.

29) 출연(연) 등 연구직 비정규직은 제외함.

5% 이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2016년 4월말까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고자 함.

○ 공공기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인력소요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채용은 제한함.

- 각 공공기관『인사규정』에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수탁사업 및 단시간 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될 경우 정규직 형태로 활용하도록 함.

○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강화함.

-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함.
- 합리적 사유 없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함.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종전의 정규직 위주 계획에서 2016년부터 비정규직·간접고용까지 포괄하는 계획으로 개편하도록 함.

○ 2017년에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적정 처우를 제공하도록 함.

-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유의하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가 적정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용역근로자 임금산정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2.1월)』을 준수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표 Ⅰ-7〉 비정규직 업무 구분

비정규직 목표관리 대상 업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
▪ 상시·지속 업무 - 연중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한시적 업무(기간이 정한 업무) ▪ 일시·간헐 업무(일일근로 등)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나, 업무성격이나 인력 활용의 특수성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년퇴직자 활용 - 정규직으로 채용시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 - 정부 일자리사업의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곤란한 경우 ▪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2016.2.26.)』에서 발췌
주: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되면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

2)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30]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채용직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직무능력을 토대로 한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그동안은 충분한 직무설명, 명확한 채용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는 기업 위주의 채용공고 및 이를 통한 채용이 진행되어 왔음.

○ 취업준비생은 명확한 채용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됨.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도 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채용이 추진되기 시작함.

□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이란, 채용대상 직무를 NCS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31]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의미함.

30)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2016.3.)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10문 10답"(2016.7.21.) 참조하여 작성함.

31) 직무능력 :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인 '직업기초능력',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지식·기술·태도)인 '직무수행능력' 등으로 구성함.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임.

- NCS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수준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됨.
- 고용노동부는 NCS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하고자 함.

〈표 Ⅰ-8〉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으로 인한 전형별 주요 변화

구분	기존 채용	능력중심 채용
채용 공고	▪ 행정직 00명, 기술직 00명 등 단순기초정보 제공	▪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명세(NCS기반), 채용전형 등 사전 공개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자료' 첨부)
서류 전형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 본적, 취미・특기 등) ▪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봉사, 토익 등) ▪ 자전적 자기소개서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 ▪ 직무관련 스펙 (직무관련 교육・자격・경험 및 경력 등) ▪ 직무관련・경험 중심 자기소개서
필기 전형	▪ 인성・적성 평가, 단순지식 측정 필기시험 등	▪ 직무능력 측정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관련 상황 및 문항 설정)
면접 전형	▪ 비구조화 면접(취미, 성장배경 등 직무무관한 일상적 질문)	▪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 (직무관련 질문 및 유형으로 구성)

자료: 기획재정부『능력중심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2016.3.31.)』보도자료

(2) 추진경과[32)]

□ 고용노동부가 NCS를 2016년 7월 22일 확정・고시함으로써 그간 개발・검증된 NCS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됨[33)].

32)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2016.2.26.)』및『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2017.2.10.)』을 중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33) 고용노동부『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10문 10답(2016.7.21.)』보도자료

○ NCS 관련 고시 내용은 24대 직업 분야, 847개 NCS 및 이를 구성하는 10,599개 능력단위 등을 포함함.

○ NCS 고시는 2013년 이후 3년간 1만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식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한 것임.

- NCS 개발은 2002년 정부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 고용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NCS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847개 NCS를 개발함.

○ NCS는 미래유망 기술, 신규 직무 수요 등에 따라 매년 추가 개발될 예정이고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매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최대 5년 주기로 재검토될 계획임.

□ 2016년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채용 추진을 위하여 NCS 채용모델 추가 도입기관을 선정하여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준비생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함.

○ 2015년 도입기관은 NCS 채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6년 신규 도입기관을 선정하여 NCS 기반 채용을 확대하고자 함.

- 2015년 NCS MOU를 체결한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130개)은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지속 추진함.
- 기관별 여건 및 채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중 추가로 100개 수준의 공공기관이 컨설팅을 거쳐 NCS 채용을 도입함.
- 이로써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병원, 출연연 제외)은 3개 기관[34]을 제외하고 모두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하게 됨.

○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주관)으로 NCS 우수기관[35]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로 소개·확산시킴.

-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담당자 NCS 교육 실시, NCS 기반 채용과 일학습병행제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

---

34) 축산물인증원(통합예정), 국방과학연구소(직무 재설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지방이관예정)

35)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우수기관으로 소개됨.

- 채용 뿐 아니라 교육·훈련, 평가·보상 등에 대해서도 직무능력에 기반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취업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NCS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NCS 포털(ncs.go.kr)을 통해 기관별 채용정보, 기출·샘플문제, 동영상강의 등 NCS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권역별 NCS 설명회를 확대하고 모바일 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함.

□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채용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나갈 예정임.

○ 이는 전체 공공기관에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

- NCS 채용 도입기관 수는 2015년 130개에서 2016년 230개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을 목표로 함.

○ 공공기관은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 핵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채용공고) NCS 기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
- (서류전형)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입사지원서 요구사항 최소화
- (필기·면접전형)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평가 실시

○ 온라인, NCS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중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각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홈페이지에 NCS 채용기준, 필기과목별 샘플문항 등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NCS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취업준비생과 소통 강화함.

나.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36]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운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있음[37].

○ 예산편성지침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며[38], 차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달됨.

○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지침과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등을 내용으로 함.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모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1)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시달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뒷받침 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정착시키며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

36)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5.12.20.)』 및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6.12.8.)』 보도자료와 공공기관에 시달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6.1.15.)』 및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1.25.)』을 참고하여 작성

37)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8)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경비(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됨

□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의 제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한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며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관련 경영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2015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39][40], 공공기관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에 따라 재무 정보를 산출하여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여야 함.

○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복리후생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금지하여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려고 노력해야 함.

- 2014년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를 동결해야 함.
- 다만,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41],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함.

○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15년에 전면 개편된 알리오시스템에 부채 및 방만경영 정보 등을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예산편성지침은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감축 재원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부터 발생한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함.

---

39)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설정된 기관별 공사채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사채 잔액을 관리하여야 함

40)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2017년 8월 25일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함.

41) 1인당 기금누적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공공기관 자체 자금 이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향도 제시함.

○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소비 촉진·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에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도 설계를 허용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신규채용을 촉진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15년도 기관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42].

○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경력직 및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신규채용 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등 선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2016년 회계연도 중 2016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일반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및『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

42)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2013~2015년간 총 11,784명을 전환할 계획이며 2015년 중 5,197명을 전환하기로 함

-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함.
- 각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2)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주요 내용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뒷받침, 재무건전성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2016년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 것과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6년 184%이고 2017년은 174%, 2018년은 165%임.

○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노력을 강화함.

□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항목별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대비 3.5%로 설정함.

-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건비 상한인 3.0%보다 상향 조정됨.
-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2015년, 20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차등 적용하도록 함[43].

43)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1.5%(5.0%)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1.0%(4.5%)

○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함.

○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하여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함.

□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일반지침의 주요 골자는 2016년과 동일하며 항목별 집행지침 중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44]'을 준용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외로 적용함.

○ 기존 직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업무 대행시, 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2017년도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의 5%이상을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

- 정부 예산의 경우에도 2017년도 업무추진비의 5% 이상을 절감 집행토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함.

○ 각 기관별로 개인별 성과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배분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재배분시 환수토록 하는 규정 등을 기관별로 마련할 것.

- 감사원은 3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 감사결과, 성과급 재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기본재산 사용 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기금누적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함.(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간외근무의 경우,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 외로 인정 가능함을 규정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45)]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표 Ⅰ-9〉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채규모	249.3	460.3	496.1	520.4	519.7	505.3	499.4
부채비율	112%	196%	220%	217%	201%	183%	167%

자료: 기획재정부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에서 발췌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공공기관 재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45) 기획재정부의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4.9.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및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 상태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토록 함.

○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공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12년 39개 기관이 최초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음.

○ 법률상 작성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하는 기관은 <표 Ⅰ-10>과 같음.

○ 작성대상 기관수는 2012년 39개, 2013년 41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2016년 39개 기관이 대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 신규지정 되면서 포함되었고,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부터 작성대상에 포함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4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됨.

〈표 Ⅰ－10〉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구분	2012년(39개)	2013(41개)	2014(40개)	2015(39개)	2016(39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구분	2012년(39개)	2013(41개)	2014(40개)	2015(39개)	2016(39개)
준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4.9.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및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아래의 3가지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 당해 연도 제출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전년도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동되어야 함.

- 전년도 제출계획상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제출될 계획상 목표를 선정해야 함[46].

○ 정상화계획 이후 발표·관리 중인 2013~2017년 부채감축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2014년 부채감축 실적이 양호하면서 2015~2019년 외부 여건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관은 2015~2019년 투자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6) (예시1) '14년 부채비율 초과달성한 기관의 경우에 '15~'19년 계획(부채, 부채비율 등)이 '14~'18년 계획보다 개선
(예시2)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 큰 기관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 2013년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2월『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도 높은 부채관리를 위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39개 기관이 제출대상이며[47] 기관별 비핵심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 39개 부채감축계획 제출대상기관은 2014년부터 부채감축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특히, 과거 5년간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12개 기관[48]을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 2013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채감축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으로 낮추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49].

- 이는 통상적인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신용등급 BBB수준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2013년 12월말에『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50].

○ 운용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운용지침에서는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4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부채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95%를 차지함

4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49) 2013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20%임

50)『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2013.12.31.)』보도자료

- 부채감축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은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우선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구조조정·자산 매각·경영효율화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채감축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사업의 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확립해야 함.

-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함.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근거인 각종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함.
-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와는 별도로 기관 내부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반영해야 함.

○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하여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부채감축계획은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비에 대한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 공공기관은 보유자산의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출자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각종 금융기법 활용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적 담보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부채 감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 경영실적평가에서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계획보다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을 제한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

-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3.12월)』에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의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계량과 비계량을 포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51].

- 실제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평가등급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률 0%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함.

(2)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52]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016년 9월 국회에 제출함.

□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은 향후 5년간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됨.

○ 향후 5년간(2016~2020년) 총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15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15년 194%와 대비하여 43%p 하락한 수치임.

---

51)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4.6.18.)』 보도자료

52)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및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표 Ⅰ-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부채규모도 향후 5년간 490조원 대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임.

○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SOC 분야의 11개 공공기관[53]의 부채비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1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부채규모는 2018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220조원 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분야의 12개 공공기관[54]의 부채비율은 전력공기업 등의 영업실적 호조로 2016년부터 하락세가 지속되어, 2020년에는 173%로 전망됨. 반면, 부채규모는 신규 발전소 건설수요 등으로 2016년부터 증가하여 2020년에는 189.4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 전망됨.
- 금융 분야의 12개 공공기관[55]의 부채비율은 향후 5년간 47%p 감소하여, 2020년에는 82% 수준으로 하락될 것이 전망됨. 부채규모도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 등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74.8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 기타 분야의 4개 기관[56] 또한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이 16%p 감소하여, 2020년에는 122% 수준으로 하락될 것이 전망됨. 부채규모는 향후 5년간 0.4조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국회에 제출된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비교해 보면(<표 Ⅰ-12>), 2016~2020년 계획상의 총 부채 및 부채비율이 전년도 전망치보다 보다 개선된 모습임.

- 2015~2019년 계획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3~7%p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부채규모 전망치는 매년 12~17조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53)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54)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6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55)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6)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표 Ⅰ－11〉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15년 (실적)	'16(A)	'17년	'18년	'19년	'20년(B)	증감 (B-A)
전체(39개)	480.9	491.0	495.0	495.6	495.9	496.5	5.5
(부채비율)	194%	184%	174%	165%	158%	151%	△32%p
- SOC(11개)	215.5	221.0	225.2	225.8	224.5	221.5	0.5
	228%	220%	213%	206%	197%	188%	△32%p
- 에너지(12개)	168.0	170.0	174.0	178.8	184.2	189.4	19.4
	202%	190%	183%	179%	176%	173%	△18%p
- 금융(12개)	87.2	89.6	85.1	80.2	76.2	74.8	△14.8
	139%	129%	112%	98%	87%	82%	△47%p
- 기타(4개)	10.2	10.5	10.8	10.8	10.9	10.8	0.4
	140%	138%	139%	133%	129%	122%	△16%p

자료: 기획재정부『'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1)』 보도자료에서 발췌

〈표 Ⅰ－12〉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 %p)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5~'19년 중장기(A)	부채	496.6	508.2	507.0	508.2	510.6	-
	부채비율	197%	191%	177%	170%	163%	-
'16~'20년 중장기(B)	부채	(480.9)	491.0	495.0	495.6	495.9	496.5
	부채비율	(194%)	184%	174%	165%	158%	151%
차이(B-A)	부채	△15.7	△17.2	△12.0	△12.6	△14.7	-
	부채비율	△3%p	△7%p	△3%p	△5%p	△5%p	-

자료: 기획재정부『'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에서 발췌

□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채규모 기준 상위 5개 기관(<표 Ⅰ-13>)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이상 공기업), 예금보험공사(준정부기관) 등 부채규모 상위 5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5개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5개 기관의 총 부채액은 2016년 278.2조원에서 2020년 271.7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2016년 220%에서 2020년 16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년~2020년 재무 전망을 정리하면 <표 Ⅰ-14>과 같음.

〈표 Ⅰ－13〉 부채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단위: 조원)

구분	기관명	항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상위5개사 합계]	부채	278.2	279.1	278.3	275.8	271.7
		부채비율	220%	205%	194%	180%	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35.0	138.8	139.9	138.8	135.6
		부채비율	358%	351%	345%	332%	312%
2	한국전력공사	부채	52.6	53.8	55.8	57.5	59.1
		부채비율	94%	92%	92%	92%	92%
3	한국가스공사	부채	32.0	32.4	32.7	33.2	33.4
		부채비율	302%	288%	277%	264%	247%
4	한국도로공사	부채	28.4	29.1	29.6	30.5	30.1
		부채비율	88%	87%	85%	84%	82%
5	예금보험공사*	부채	30.2	25.1	20.3	15.7	13.5
		부채비율	무자본 특수법인				

자료: 기획재정부『'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표 Ⅰ－14〉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

(단위: 조원)

구분	기관명	항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9개 기관 전체	자산	758.1	779.9	795.6	810.6	824.6
		부채	491.0	495.0	495.6	495.9	496.5
		부채비율	184%	174%	165%	158%	151%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72.7	178.3	180.4	180.6	179.1
		부채	135.0	138.8	139.9	138.8	135.6
		부채비율	358%	351%	345%	332%	312%
2	한국도로공사	자산	60.5	62.7	64.6	66.7	67.0
		부채	28.4	29.1	29.6	30.5	30.1
		부채비율	88%	87%	85%	84%	82%
3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18.6	19.0	19.1	19.0	18.8
		부채	20.7	21.1	21.1	21.0	20.8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0.8	22.0	23.4	24.6	25.4
		부채	14.1	14.8	15.6	16.1	16.3
		부채비율	213%	206%	201%	191%	178%
5	한국철도공사	자산	20.3	18.6	17.8	16.9	17.5
		부채	13.9	11.6	11.2	10.4	11.1
		부채비율	217%	168%	170%	162%	174%
6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1.1	12.3	12.2	12.4	13.3
		부채	3.9	4.3	3.6	2.9	3.1
		부채비율	54%	54%	41%	31%	30%
7	부산항만공사	자산	5.7	6.0	6.2	6.4	6.5
		부채	1.8	2.0	2.1	2.2	2.2
		부채비율	46%	50%	52%	52%	51%
8	인천항만공사	자산	2.9	3.1	3.2	3.2	3.2
		부채	0.7	0.9	0.8	0.9	0.8
		부채비율	34%	41%	34%	36%	34%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4	4.6	4.7	4.9	5.1
		부채	0.4	0.4	0.4	0.4	0.4
		부채비율	10%	10%	10%	10%	9%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5	2.7	2.2	2.0	1.8
		부채	1.5	1.7	1.1	0.9	0.7
		부채비율	144%	171%	97%	78%	69%
11	여수광양항만공사	자산	1.9	1.9	1.8	1.7	1.7
		부채	0.5	0.5	0.4	0.4	0.3
		부채비율	40%	34%	30%	25%	21%

구분	기관명	항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2	한국전력공사	자산	108.3	112.5	116.4	120.0	123.5
		부채	52.6	53.8	55.8	57.5	59.1
		부채비율	94%	92%	92%	92%	92%
13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53.4	55.7	59.4	63.1	66.6
		부채	28.3	29.2	31.6	34.4	37.1
		부채비율	113%	110%	114%	120%	126%
14	한국중부발전	자산	9.1	10.1	11.3	12.0	13.1
		부채	5.6	6.2	6.7	7.0	7.2
		부채비율	161%	158%	148%	138%	122%
15	한국서부발전	자산	9.7	10.0	10.2	10.4	10.6
		부채	5.9	6.1	6.1	6.2	6.3
		부채비율	156%	153%	149%	148%	146%
16	한국동서발전	자산	9.3	9.6	10.0	10.3	10.8
		부채	5.1	5.1	5.3	5.4	5.6
		부채비율	120%	115%	112%	109%	109%
17	한국남부발전	자산	9.9	10.0	9.9	9.7	9.9
		부채	6.0	6.0	5.7	5.5	5.5
		부채비율	154%	150%	138%	128%	124%
18	한국남동발전	자산	9.7	10.2	10.9	11.4	11.9
		부채	5.0	5.2	5.5	5.6	5.8
		부채비율	106%	102%	104%	98%	95%
19	한국가스공사	자산	42.7	43.6	44.5	45.8	46.9
		부채	32.0	32.4	32.7	33.2	33.4
		부채비율	302%	288%	277%	264%	247%
20	한국석유공사	자산	22.3	22.2	21.5	21.0	20.8
		부채	19.2	19.5	19.3	19.1	19.1
		부채비율	614%	741%	858%	1,028%	1,129%
21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5.2	5.7	5.9	6.2	6.5
		부채	3.4	3.8	3.9	4.0	4.2
		부채비율	196%	195%	191%	188%	184%
22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4.9	4.9	4.2	3.9	3.9
		부채	5.1	5.1	4.4	4.3	4.3
		부채비율	자본잠식				
23	대한석탄공사	자산	0.7	0.7	0.7	0.7	0.7
		부채	1.6	1.7	1.7	1.8	1.8
		부채비율	자본잠식				

구분	기관명	항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4	예금보험공사*	자산	20.5	18.3	16.2	15.5	16.6
		부채	30.2	25.1	20.3	15.7	13.5
25	한국장학재단**	자산	13.3	13.6	13.9	14.2	14.4
		부채	12.5	12.7	12.9	13.1	13.3
26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	16.5	15.8	15.2	14.8	14.4
		부채	14.9	14.3	13.6	13.3	12.9
27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0.9	11.3	11.3	11.4	11.3
		부채	8.8	9.1	9.1	9.2	9.0
		부채비율	405%	420%	410%	404%	391%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6.0	37.2	38.7	38.5	36.6
		부채	8.2	8.8	9.6	10.0	10.7
		부채비율	30%	31%	33%	35%	41%
29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6.7	16.9	17.0	16.9	17.1
		부채	7.5	6.7	6.4	6.3	6.4
		부채비율	83%	66%	60%	60%	59%
30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12.1	13.6	14.1	15.3	16.4
		부채	4.0	4.9	4.6	5.1	5.2
		부채비율	51%	56%	49%	49%	46%
31	신용보증기금	자산	9.8	9.2	8.2	7.8	7.5
		부채	3.9	3.6	2.9	2.7	2.6
		부채비율	66%	63%	54%	54%	53%
32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4.1	4.3	4.4	4.6	4.8
		부채	2.7	2.9	3.0	3.0	3.1
		부채비율	200%	210%	201%	190%	178%
33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3.6	4.2	5.0	5.3	5.4
		부채	1.9	2.5	3.2	3.4	3.6
		부채비율	109%	140%	179%	189%	193%
34	기술보증기금	자산	3.3	3.1	3.0	2.9	2.9
		부채	1.2	1.2	1.2	1.1	1.1
		부채비율	55%	60%	63%	64%	64%
35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4.3	4.5	4.7	5.0	5.3
		부채	1.5	1.5	1.6	1.6	1.6
		부채비율	54%	53%	49%	47%	44%
36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5.9	5.7	5.9	6.0	6.2
		부채	1.6	1.6	1.6	1.6	1.7
		부채비율	37%	38%	37%	35%	37%

구분	기관명	항목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산	17.7	19.0	20.8	22.3	24.1
		부채	0.9	0.9	0.9	0.8	0.8
		부채비율	6%	5%	4%	4%	3%
38	한국마사회	자산	2.6	2.7	2.7	2.8	2.8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5%	5%	5%	5%	5%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2	0.2	0.2	0.2	0.2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45%	47%	44%	44%	44%

자료: 기획재정부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1. (*) 표시된 기관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2. (**) 표시된 기관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요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제시됨.

○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추진체계 마련'임.

○ 정상화 대책 중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됨.

□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추진근거는 공운법 제14조 제1항임.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 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공기관 기능재편, 절감된 자원의 미래 지향적 활용임.

○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및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

○ (비핵심업무 축소) 설립목적 외 사업, 단순위탁 업무 등 축소

○ (민간개방 확대) 공공부문 독·과점 수행분야 민간개방 확대

○ (민간경합 축소) 민간시장 성숙분야 업무·기능의 축소·폐지

○ (경영효율화)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및 부실정리

□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2014년 추진된 1단계 정상화 대책과 2015년 추진된 2단계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됨.

○ 1단계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능조정은 해외자원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됨.

○ 정부는 1단계 정상화 대책의 후속으로 2015년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하였으며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7개 분야 이외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 계획을 2016년 6월 발표하여 추진함.

〈표 Ⅰ－15〉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

단 계	발표시기	대상분야
1 차	2014. 2. 25.	해외자원개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2 차	2015. 5. 27.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3 차	2016. 6. 13.	에너지, 환경, 교육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2013.12.31.)』,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2014.2.)』,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2015.5.27.)』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3.)』 보도자료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기능조정 대상 분야가 정해지면, 해당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조정 대상 기능을 선별함.

○ 이때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능조정 방향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개별 방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진 중에는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함.

2) 1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1) 해외자원개발 분야[57]

□ 해외자원개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다른 분야보다 조속히 완료됨.

○ 해외사업은 비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조달 등을 위해 일부 지분매각을 추진하기로 함.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유연탄, 우라늄 광산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석유공사는 해외광구 내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기로 함.

○ 해외사업 사업조정(약 15.2조원 규모)은 <표 Ⅰ-16>과 같으며 주로 해외자원개발 3사(약 11.1조원 규모)[58]와 한국전력공사 등의 해외·자원사업(약 3.6조원 규모)의 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표 Ⅰ－16〉 해외자원개발 분야 부채감축계획(2013~2017년)

(단위: 조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해외사업	1.6	2.1	3.6	3.9	4.0	15.2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2015.7.29.)』

57)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2015.7.29.)』를 참고하여 작성

58)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7.8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 2.1조원, 한국석유공사 1.2조원 등임

(2) 정보화 분야[59]

□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은 정보화 연구개발(이하 'R&D') 전 주기 관리 추진, 정보화 신산업 유사·중복 기능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R&D 정책, 기술 기획·평가·관리, 성과 확산, 기술거래로 연결되는 ICT R&D 전 주기를 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ICT R&D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60]에 따라 정보화 R&D를 다른 산업의 R&D로부터 분리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함.

- ICT R&D가 정책[61], 기획·평가·관리[62], 기술사업화[63]로 분산관리 되던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기능과 절차를 통합하여 ICT R&D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라 가능하도록 정비함.

○ 그간 산업통상자원부(ICT 일반),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및 미래창조과학부[64](ICT 일반, 전파통신) 산하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관련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공공기관에 분산된 ICT R&D 인력(총 137명)[65]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ICT R&D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세부적 사항은 <표 Ⅰ-17>과 같음.

---

59) 기획재정부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 5. 1.)』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60)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2013년 8월 제정

61) 관련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이 있음

62) 관련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이 있음

63) 관련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있음

64)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이 변경됨.

6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45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40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25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1명), 한국콘텐츠진흥원(6명) 등임.

〈표 Ⅰ－17〉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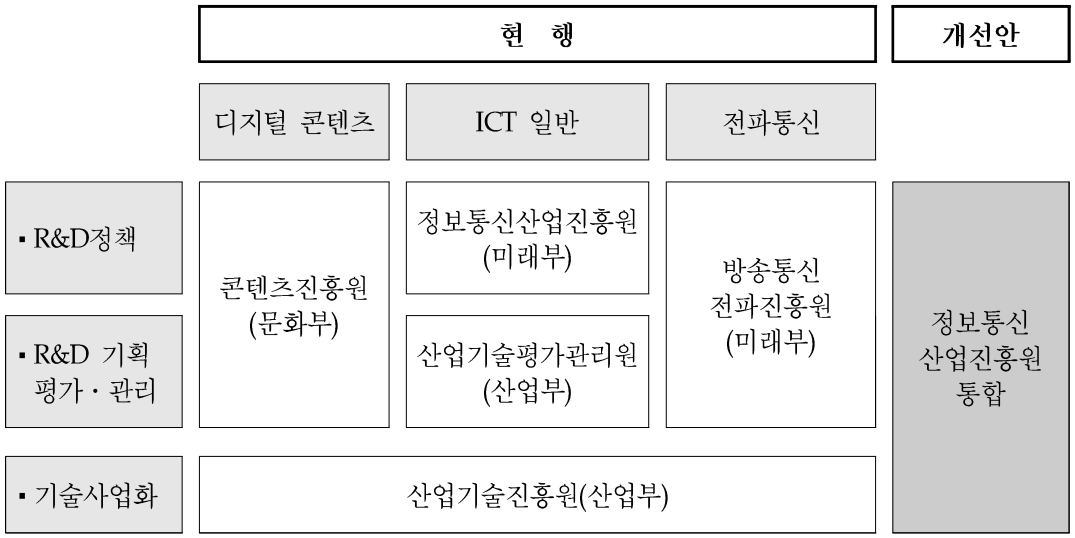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5.1.)』 보도자료
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이 변경됨.

〈표 Ⅰ－18〉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후 기관별 정원·예산 변동

(단위: 명, 억원)

기 관 명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증 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 원	303	387	84
	예 산	4,485	10,851	6,36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 원	260	215	△45
	예 산	21,768	17,741	△4,0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 원	262	237	△25
	예 산	13,452	13,45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 원	288	274	△14
	예 산	3,919	2,254	△1,665
한국콘텐츠진흥원	정 원	205	186	△19
	예 산	2,484	1,971	△51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 원	350	369	19
	예 산	1,664	1,503	△161
한국정보화진흥원	정 원	328	328	-
	예 산	3,091	3,091	-

자료: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5.1.)』 보도자료

□ 한편,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사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이하 'IoE') 등 ICT 신산업육성을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공공기관 간 기능을 조정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

○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IoE, M2M(Machine to Machine, 이하 'M2M') 등 인터넷 신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서 IoE, M2M, 클라우드 등 유사 사업을 중복 수행 중임.

○ 정보통신기술(ICT) R&D 정책, 기술 기획·평가·관리, 성과 확산, 기술거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표 Ⅰ-19〉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후 변화

기 관 명	조정 전	조정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 SW산업/ICT 정책 육성 · 정진기금 관리(-) · 전자거래/전자문서(-) · ICT 해외진출 지원	· SW산업/ICT 정책 육성 · ICT R&D 全주기 관리(+) · ICT신사업 육성(+) · ICT해외진출 총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 (ICT R&D 제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산업기술 연구/기획 · 산업기술 이전/사업화(-) ·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	· 산업기술 연구/기획 · 산업기술 이전/사업화 (ICT R&D 제외) · 산업기술연구기반조성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KCA)	· 전파산업/활성화 · 방송산업진흥 · 방송통신 R&D 기획관리(-)	· 전파산업/활성화 · 방송산업진흥 · 방발/정진기금관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 문화산업정책 개발/평가 · 콘텐츠/게임산업 육성 · 디지털 콘텐츠 R&D(-)	· 문화산업정책 개발/평가 · 콘텐츠/게임산업 육성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 개인정보보호/인터넷 윤리 · 방송통신 해외진출지원(-)	·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 개인정보보호/인터넷윤리 · 전자거래/전자문서(+)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 국가정보화 · 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 · 전자정부지원	· 국가정보화 · 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 · 전자정부지원

자료: 기획재정부『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5.1.)』 보도자료

(3) 고용·복지 분야[66]

□ 고용·복지 분야 기능조정은 그간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보망과 복지정보망이 상호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고용센터 모두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One-stop 민원처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토록 함.

○ 고용·복지 통합정보 제공과 더불어 온라인 상호지원 기능을 마련하여 고용정보망에서 보육·아이돌봄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제출서류도 통합정보망을 통한 확인으로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고용센터와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고용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상담해주도록 통합컨설팅기능을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예정임.

○ 2015년 중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후,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 Ⅰ-20>과 같음.

○ 그동안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훈련성과 및 품질의 하락, 부정수급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등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6)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1.11.)』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20〉 고용·복지 분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조정 내역

(단위: 명, 백만원)

현 행					통 합	
역할 및 기능	수행주체	현원	'15년 예산			
훈련과정 심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원격)	18	2,681	➡	한국기술교육대학	①훈련과정심사 ②훈련기관 평가·인증 ③타 부처 훈련평가 ④훈련이수자 평가 ⑤훈련기관 감사 (부정훈련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집체)	19	3,878			
훈련기관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3,399			
타부처 훈련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	1,162			
신규기관 사전평가	('15년 신규)	-	689			
훈련이수자 평가	('15년 신규)	-	1,248			
훈련기관 지도점검	고용센터	47	-			
총계		119	13,057			

자료: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1.11.)』 보도자료에서 발췌

□ 한국잡월드가 직업체험서비스 뿐 아니라 청소년진로지도 전문기능도 수행하도록 역할·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체험 외에 1:1 진로설계·직장체험·진로멘토링, 직업훈련 등 종합 진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하여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평가업무 관련 인력은 총 14명 수준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아동, 노숙인 등 11종 사회복지시설 평가인력이 7명임.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재단 등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평가 인력이 7명임.

(4) 중소기업 분야[67]

□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첫째,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통폐합하였는데 현재 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R&D 관리를 중소기업청[68]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양성 등 R&D 이외의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가 동일기준으로 전주기 관리되어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창업지원업무 관련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 이는 그간 창업관련 예산 확대 등으로 신설 법인 수 증가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음에도 선진국 대비 낮은 생존율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임.

○ 창업준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업정보와 신청 및 법인설립 등을 통합하도록 창업시스템(창업넷)을 개편하였음.

- 유망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진흥원 내에 창업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신설함.
- 우수 창업기업에는 자금[69]·보증·판로를 연계한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여 창업 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지방 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67)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1.11.)』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68) 중소기업청은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명이 변경됨.
69)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창업 후 사업화 자금 250억('15년)을 지원함

○ 현재 일부 센터는 입주기관 간, 입주기관과 본사와의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수출역량진단 후 지원을 위해 본사를 재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음.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역량진단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수출역량진단과 지원이 One-Stop으로 처리되도록 센터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표 Ⅰ-21〉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능조정 전후 변화

(단위: 명, 억원)

기 관 명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증 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 원	77	100	+23
	예 산	4,284	9,006	+4,7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 원	233	209	△24
	예 산	23,273	16,665	△3,608
산학연협회	예 산	1,685	-	△1,685
중소기업진흥공단	정 원	893	903	+10
	예 산	835	1,406	+571

자료: 기획재정부『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1.11.)』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1. 정원 및 예산은 '15년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2. 산학연협회는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민간기관)

3) 2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70]

□ 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SOC 분야 32개 기관, 농림·수산 분야 16개 기관, 문화·예술 분야 39개 기관 등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4개 기관을 폐지하고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관련 인력 약 5,700명, 예산 7.6조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분야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음.

○ 축산물안전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을 통합하여 이원화된 HACCP 인증 기능을 일원화함.

○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기존 기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신설 기관)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함.

70) 기획재정부『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5.2.)』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대형(60m2이상) 분양주택 공급기능을 폐지하고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을 확대함.
○ 한국철도공사의 3개 부문(물류, 정비, 유지·보수)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전환하고 안전관련 기능을 강화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 기능과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의 민간개방을 확대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의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함.

(1) SOC 분야

□ SOC 분야 기능조정은 주택,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분야 전반에 걸쳐 유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주택시장 과열은 해소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공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을 지속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기능에 중점을 두고 중대형 분양 기능은 폐지하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임대주택 관리상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관리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주고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됨.

□ 철도물류 분야는 2020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철도물류 부분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역 127개를 80개로 통·폐합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영업수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철도차량·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정비부실, 유지보수 비효율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전문정비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유지보수비 기획·집행·정산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평가 등 철도이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속도로 재난대비 강화 차원에서 도로의 대형 재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고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통계, 민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민간부문의 확정측량·공간정보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보유기술, 운영노하우 등을 민간에 제공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의 본부·지사를 통폐합 및 축소 등 기관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함.

□ 여객운항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민간→공공기관)하며 운항관리자 주기적 교육 및 재평가 등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해운조합의 선원 안전교육, 선박점검 등 안전 및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관련 분야 기능조정과 개선이 요구됨.

(2) 문화 · 예술 분야

□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체육인재 육성기능 통합, 문화상품 개발기능 일원화, 한국관광공사 인증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함.

○ 체육인재 육성기능 통합을 위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함.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소규모 인력으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교육 현장과의 협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문화상품 개발 기능을 일원화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 문화상품개발기능이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인력·예산·품질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관광품질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증관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인증 품질의 향상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유관협회 등에서 각각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인증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품질보증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됨.

(3) 농림·수산 분야

□ 농림·수산 분야 기능조정의 대표적 사례는 '직불제 이행점검 일원화' 임.
○ 그간 직불제 정보관리와 이행점검이 분산[71]되어 있어 직불금 지급 및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해 옴.

□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DB관리)으로 일원화하여 직불제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지원, 부정·중복 수급 적발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2차 기능조정 주요 추진 실적

□ 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한 과제(<표 Ⅰ-22>)는 총 96건으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과제 중 46개(47.9%)가 완료되었으며 47개(49.0%)가 정상추진 중이며 3개(3.1%)[72] 과제가 지연됨.

---

71) 정보관리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 업무는 논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72) 전문정비업체 인증제 도입, 단위선로사용료 제도 마련,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표 Ⅰ－22〉 2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16.12월말 기준)

구 분	과제수	세부추진계획				추진 실적('16.3월말)		
		'15(실적)	'16말	'17말	'18이후	완료	정상추진	지연
SOC	65	17	10	23	15	24	38	3
농림・수산	14	6	3	2	3	9	5	-
문화・예술	17	11	5	1	-	13	4	-
합 계	96	34	18	26	18	46	47	3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2017.1.25.)』에서 발췌

□ 2차 기능조정 계획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2016년 완료를 목표로 한 29개 과제 중 46개 과제가 완료됨.

○ (HACCP 인증기관 통합) 2015년 12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73]하고,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 출범함.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2016년 3월 (통합)대한체육회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 및 법원 등기가 완료됨.

○ (녹색사업단 기능이관 후 해산) 2016년 7월 녹색사업단 해산 후 기존 기능을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

○ (aT센터 민간위탁) 2016년 1월부터 aT센터 전시・컨벤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시장 활용도를 제고함.

○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일원화) 2016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74]함.

○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2016년 6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2016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완료함.

○ (철도관제 독립성 확보) 신규노선 도입[75]에 따른 공정경쟁・안전확보 위해 공사내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합동관제를 실시함.

73) '17.2월 시행, 법인 설립 완료함

74)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 주차설비협회,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검사업무 수행

75) 수서발 KTX('16), 부전-일광('16), 성남-여주('16) 등

□ 완료 과제를 제외한 50개 과제 중 47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임.

○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폐지(한국토지주택공사), 물류·차량정비·유지보수 사업부 자회사 전환(한국철도공사) 등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임.

○ 다만, 올림픽스포츠센터, 뉴서울·88골프장, 강원랜드 출자지분 매각 등 4개 과제는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올림픽스포츠센터, 뉴서울 골프장, 강원랜드 출자지분은 당초 2016년까지 매각이 목표였으나, 완료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계획을 수정함.
- 기능조정 이행실적의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에 매각을 독려하는 등 집중관리를 추진 중임.
- 기능조정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경영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 할 수 있음.

□ 당초 2016년 완료를 목표로 한 과제 중 3개 과제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전문정비업체 인증제 도입)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철도안전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지연 되고 있음.

- 2017년 내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및 통과를 추진할 예정임.

○ (단위 선로사용료 제도 마련) 단위 선로사용료 적용을 위한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2017년 2월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의결을 통해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3분기 중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2017년 내 적용할 예정임.

○ (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의 마련이 늦어져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음.

- 2016년 12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개정을 완료('16.12.29일)하였으나, 시설안전공단 자체 예산으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임.
- 이후,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통합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 2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의 과제별 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Ⅰ-23>, <표 Ⅰ-24> 및 <표 Ⅰ-25>와 같음.

〈표 Ⅰ-23〉 SOC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연번	소관기관	과제명	완료기한	추진현황
1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 민간이양 및 공적기능강화	'15	완료
2	교통안전공단	▪ 정비소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15	완료
3	교통안전공단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일원화	'15	완료
4	한국도로공사	▪ 재난 대비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15	완료
5	한국도로공사	▪ 민자도로 유지관리 참여 제한	'15	완료
6	선박안전기술공단	▪ 운항관리 기능 이관	'15	완료
7	한국시설안전공단	▪ 부실점검사전예방	'15	완료
8	한국시설안전공단	▪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 민간 개방	'15	완료
9	인천국제공항공사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관리감독 강화	'15	완료
10	한국철도공사	▪ 책임사업부제도입	'15	완료
11	한국철도시설공단	▪ 차량구매 업무 폐지	'15	완료
12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설관리권 추가설정	'15	완료
13	코레일관광개발	▪ 열차내 판매 효율화	'15	완료
14	코레일네트웍스	▪ 외부주차장, 레스토랑 운영 등 폐지	'15	완료
15	코레일유통	▪ 온라인 쇼핑몰 철수	'15	완료
16	코레일테크	▪ 코레일테크 테마파크 기능 이관	'15	완료
17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이해관계 조정지원 강화	'16	완료
18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이관	'16	완료
19	한국철도공사	▪ 관제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16	완료
20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설개량 강화	'16	완료
21	한국철도시설공단	▪ 유지보수 서비스평가	'16	완료
22	한국철도시설공단	▪ 품셈확대, 위탁방식 변경	'16	완료
23	항만공사	▪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	'16	완료
24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16	지연
25	한국철도공사	▪ 전문정비업체 인증제 도입	'16	지연
26	한국철도공사	▪ 제도 개선(선로사용료, 신규노선 시범제)	'16	지연
27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주택 관리업무 단계적 민간개방	'17	정상추진
28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산매각 및 재고 판매	'17	정상추진
29	교통안전공단	▪ 대형차 검사 전담	'17	정상추진
30	교통안전공단	▪ 항공기 인증 일원화	'17	정상추진
31	한국국토정보공사	▪ 확정측량 민간 이양 및 검사 기능 부여	'17	정상추진

연번	소관기관	과제명	완료기한	추진현황
32	한국도로공사	▪ 휴게소 운영 민간참여 확대	'17	정상추진
33	한국도로공사	▪ 비핵심사업 매각	'17	정상추진
34	한국수자원공사	▪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투자규모 축소	'17	정상추진
35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상수도 투자시기 조정, 물 복지에 집중	'17	정상추진
36	한국수자원공사	▪ 개발사업 규모 조정 및 방식 변경	'17	정상추진
37	한국수자원공사	▪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 및 시기 조정	'17	정상추진
38	한국수자원공사	▪ 해외사업 투자계획 조정	'17	정상추진
39	한국시설안전공단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	'17	정상추진
40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시설개선 사업 축소 조정	'17	정상추진
41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해외사업규모 축소	'17	정상추진
42	한국철도공사	▪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구조 전환	'17	정상추진
43	한국철도공사	▪ 공항철도, 민자역사 지분 등 매각	'17	정상추진
44	한국철도공사	▪ 조직효율화(지역본부재편, 무방식 개선 등)	'17	정상추진
45	한국철도공사	▪ 철도 안전관리 강화	'17	정상추진
46	한국철도공사	▪ 물류분야 경쟁여건 조성	'17	정상추진
47	한국철도시설공단	▪ 유지보수 기획·집행·정산기능 강화	'17	정상추진
48	한국철도시설공단	▪ 역세권 개발 LH와 협업	'17	정상추진
49	코레일 네트웍스	▪ KTX 특송, 카셰어링 적자 지속시 중단	'17	정상추진
50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지사 축소	'18	정상추진
51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20	정상추진
52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등 구조조정	'22	정상추진
53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22	정상추진
54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재생 기능 강화	'22	정상추진
55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	정상추진
56	선박안전기술공단	▪ 운항관리자 자질 향상	계속	완료
57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손실 축소 방안 추진	계속	정상추진
58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강화	계속	정상추진
59	한국도로공사	▪ 건설기능 2.5조원 수준 유지	계속	정상추진
60	한국도로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계속	정상추진
61	한국철도공사	▪ 자회사 단계적 전환	계속	정상추진
62	한국철도공사	▪ 신규운영자 선정, 보조금 입찰제 적용	계속	정상추진
63	한국철도공사	▪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 확대	계속	정상추진
64	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간 협업	계속	정상추진
65	한국철도시설공단	▪ 정비 분야 아웃소싱 확대	계속	정상추진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2017.1.25.)』에서 발췌

〈표 Ⅰ－24〉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구분	소관기관	과제명	완료기한	추진현황
1	한국농어촌공사	▪ 직불제 이행점검 국립농관원으로 일원화	‘15	완료
2	농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미디어홍보 일원화, 기관별 교육 전문화	‘15	완료
3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aT센터 운영 민간위탁	‘15	완료
4	한국마사회	▪ 경마사업 중심으로 조직 개편	‘15	완료
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곡물조달시스템 축소	‘15	완료
6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지원부서 인력 재배치	‘15.8	완료
7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HACCP 인증기관 통합	‘16	완료
8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 농식품모태펀드를 중소기업모태펀드와 통합	‘16	완료
9	녹색사업단	▪ 녹색사업단 기능이관 후 해산	‘16.6	완료
10	한국농어촌공사	▪ 전원마을・농공단지 사업 내실화	‘17	정상추진
11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효율화 강화 (도매시장 위탁 확대)	‘17	정상추진
12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 SOC분야 민간개방	‘18	정상추진
13	한국농어촌공사	▪ 수리시설 유지・보수 인력 기사직 전환	‘19	정상추진
14	한국농어촌공사	▪ 새만금・저수지수변개발 민자유치	‘22	정상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2017.1.25.)』에서 발췌

〈표 Ⅰ－25〉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구분	소관기관	과제명	완료기한	추진현황
1	한국관광공사	▪ 관광공사조사연구센터 폐지	‘15	완료
2	한국관광공사	▪ 관광공사의 관광인증기능 강화	‘15	완료
3	한국관광공사	▪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관리 기능 폐지	‘15	완료
4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	‘15	완료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근거 마련	‘15	완료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광연의 관광전문인력 교육 기능을 관광공사 이관	‘15	완료
7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정보원의 통계기능 문광연 이관	‘15	완료
8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의 식음료사업 민간위탁	‘15	완료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박물관문화재단·문화재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일원화	‘15	완료
10	국립극단	▪ 명동·정동극장 분리 ▪ 명동극장을 국립극단으로 이관	‘15.4	완료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지원기관을 분야별로 지원기능 특화	‘16	완료
12	강원랜드	▪ 강원랜드 출자지분 매각	‘16	정상추진
13	한국문화진흥㈜	▪ 뉴서울골프장 매각	‘16	정상추진
14	한국체육산업개발	▪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	‘16	정상추진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출판사 수출지원기능 출판진흥원으로 일원화	‘16.1	완료
16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16.3	완료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2017.1.25.)』에서 발췌

(5) 후속조치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 당초 201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162억원)'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확정·반영함.

○ 당초 2016년 6월 완료 예정이던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4개 항만공사간 중복투자 방지 및 협력 등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근거(항만공사법 개정)를 마련하여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 중임.

□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 및 88골프장 매각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은 당초 2016년 말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지역주민 및 국회 반대 등으로 매각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12월 매각 공모 등 매각 절차 진행 중임.

-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반대결의('15.10월) 후 지역주민 설명회('15.10월), 자산매각 지원위원회 개회('15.10월), 매각 관련 연구용역('15.11월~'16.3월) 등이 추진됨.

○ 당초 2017년 6월 완료예정이던 88골프장 매각이 이해관계자 반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매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매각을 포함한 관리체계 개선 등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보훈단체는 88골프장이 국가유공자 정치연금과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국가유공자 소유시설로 인식하여 정부의 매각방침에 반발함.
- 관련 연구용역은 2016년 9월~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용역결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민자 유치,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통합은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보완하여 추진 중임.

○ 당초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6공구 매립사업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실시하되, 6공구 조성 및 여타 공구는 민간 대행 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초기 공사차입 제약 및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새만금 개발사업 적기 추진 및 군장항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계획을 변경한 것임.
- 그간 6공구 사업 공모 결과 총 2회 유착('16.1월, 7월)되었으며 민간관심 저하로 단기간 민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6공구 매립이 되어야 7·8·9공구 개발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로 매린 지연 시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새만금 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군장항 준설을 2016년 내에 착수할 것을 2016년 5월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음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을 변경함.

○ 농업정책금융보험원에서 운영 중인 농식품 모태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 할 계획이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말로 통합시점을 확정함.

- 해당 연구의 용역결과 중장기적으로 모태펀드를 통합 운용하여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합 시기는 농·식품업체 지원 관련 초기시장 형성 정도, 농식품 관련 운용사의 역량 성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금융보험원에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시장형성, 운용사 역량강화 조치계획을 검토 중이므로 계획수립 후 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말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확정함.

〈표 Ⅰ－26〉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세부계획 변경

현 행		
구분	공사	민간
매립	1,2,5공구	3,4,6,7,8,9 공구
조성	1,2,5공구	3,4,6,7,8,9 공구

⇨

변 경		
구분	공사	민간
매립	1,2,5,6 공구	3,4,7,8,9 공구
조성	1,2,5공구	3,4,6,7,8,9 공구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6.8.31.)』에서 발췌

〈표 Ⅰ－27〉 농식품 모태펀드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통합 세부계획 보완

현 행	보 완
▸통합여부 및 방식은 역량평가 후 확정	▸통합여부 및 방식은 역량평가 후 확정
▸평가연구용역('15.10～'16.3)	▸평가연구용역('15.10～'16.3)
▸평가 결과 후속조치('16.4～12)	▸평가 결과 후속조치 계획 수립('16.4～12) ▸후속조치 추진 및 통합('16.12～'19.12)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6.8.31.)』에서 발췌

4) 3차 기능조정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76]

□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유관 기관별 기능 분류 및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발표된 기능조정(안)을 통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될 예정임.

○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해산)하고 해당 기능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함.

○ 다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함.[77]

○ 부실・적자운영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감.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부문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효율화 함.

○ 전력 판매, 가스 도입,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함.

○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순차적으로 상장함[78].

○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일원화 함.

○ 3개 분야 36개 기관이 44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2016년도 12월 기준 13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30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었으며 1개[79] 과제가 지연중임.

---

76)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2016.6.13.)』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4.)』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77)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

78)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DN(주), 한국가스기술(주)

79) 토양오염조사 기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표 Ⅰ－28〉 3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16.12월말 기준)

구 분	과제수	완료계획			추진현황		
		'16말	'17말	'18이후	완료	정상추진	지연
합 계	44	14	20	10	13	30	1
에너지	23	4	10	9	4	19	-
환 경	14	5	8	1	4	9	1
교 육	7	5	2	-	5	2	-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7.1.25.)』에서 발췌

(1) 에너지 분야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기관은 총 27개 기관(<표 Ⅰ-29>)임.

○ 27개 기관의 정원은 약 6만 9,000명이고, 예산 174조원 규모임.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기관의 주요업무는 발전·송배전, 석유·가스·광물·석탄 등 주요자원 개발과 비축 및 에너지 안전·기술·홍보임.

〈표 Ⅰ－29〉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분 류	기관명
공기업(12개)	▪ 한국전력공사,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7개)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8개)	▪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자료: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2016.6.13.)』에서 발췌
주: 한전KPS(주), 한전KDN(주) 및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7년 9월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2016년 6월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발표 당시 기타공공기관이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내용 작성

□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기관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독과점적 산업구조와 재무구조 악화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됨.

○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 지속으로 경쟁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가 미흡한 실정임.

○ 채산성 악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부실이 누적되어 대한석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임.

□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개방 확대, 부실 정리,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핵심기능 강화 및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전력연구, 발전 해외진출, 전기점검, 댐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전력연구) 전력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함.

○ (발전 해외진출) 기관간 중복진출,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 진출분야를 특화[80]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함.

○ (전기점검) 일반용 전기의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81].

○ (댐관리)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수원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함.

□ 대한석탄공사의 부실정리, 해외자원개발 효율화, 발전원료 해외개발 매각,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 전신주 관리 민간이관, 에너지특별회계 관리 등을 통해 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고자 함.

○ (부실정리)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대한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함.

○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80) 한국전력공사는 대형사업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 특화하고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O&M 분야로 특화함

81) 산업용・교육용은 전기안전공사가 담당중이나, 주택용・농사용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병행 수행 중임

○ (발전원료 해외개발) 발전기능 이관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을 폐지하고 보유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임.

○ (전기용품 시험·인증) 민간·공공 부문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을 폐지함.

○ (전신주 관리) 전신주 관리는 정보통신기술과 무관한 비핵심 업무로서 민간수행이 가능하므로 한전KDN(주)의 전신주 관리업무를 철수하고 민간으로의 이관을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특별회계 관리) 융자 집행·상환 등의 업무는 단순 자금중개기능으로 기관 핵심기능과 무관하므로 에너지특별회계의 회계사무(한국석유공사) 및 융자(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함.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전력판매, 가스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원전 상세설계, 광통신망 구축 등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함.

○ (전력판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부문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 (가스 도입·도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 조성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민간개발로 전환함[82].

○ (화력발전 정비) 한전KPS의 신규발전기 정비 독점 폐지 등을 통해 화력발전 정비 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원전 상세설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임[83].

○ (광통신망 구축)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2017년부터 중단함.

---

82)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하며, 현재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4개사가 직수입중임('15년 총 LNG 수입량의 5.7%)

83) 원전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1차 수주 후, 상세설계의 약 50%를 다시 민간에 하도급하는 구조로 민간 개방비율을 '17년 60%로 상향하고 점진적으로 개방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자 함

□ 공공기관 상장, 지역난방 유상증자,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도 추진될 예정임.

○ (공공기관 상장)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임[84].

○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를 추진함[85](현행 공공지분 65% → 51%).

○ (출자회사 정리) 설립목적을 달성한 한국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86]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9개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함[87].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학회·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사업,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임.

○ (원전사업)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88],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단기 과제인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정리, 비핵심 업무 축소 등의 과제(14개 과제)는 2017년 말까지 대부분 완료할 예정임.

○ (기초전력원구원 통·폐합) 인수·통합 T/F를 구성·운영하고, 2016년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합함.

○ (한수원 원천수출기능 강화) 2016년 9월까지 원전수출 고시[89]를 개정하고, 2016년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합함.

---

84) 대상기관은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주),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이며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하여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85) 공공지분 51% 한도 내 유상증자 시 부채비율 20%p 내외 하락 전망

86) 국내 집단에너지 기술보급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 집단에너지 설계 등의 분야에 4개의 민간기업이 활동 중임

87) 지분 정리대상 출자회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등 6개 회사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등 3개 회사임.

88) 해외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하되, 정부→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관간 경합을 방지

89)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간 업무협력지침

○ (전기 사용전 점검 일원화) 2016년 말까지 개정안(전기사업법 제66조)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함.

○ (발전용댐 위탁 운영) 관계기관 T/F[90]를 구성하고, 2016년 말까지 위탁운영 세부 방안을 도출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함.

○ (전기용품 시험·인증 폐지) 2017년 3월까지 기술표준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2017년 6월 이후 업무를 철수함[91].

○ (발전원료 해외개발 폐지) 2016년 말까지 매각자산 가치평가 및 양도 협상을 진행하고, 2017년 말까지 자산 매각을 완료함.

○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2016년 말까지 관계법령 및 지침을 개정[92]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업무 이관을 완료함.

□ 중장기 9개 과제인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전력판매·가스 도입 민간개방 등은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2016년 말까지 석·연탄 가격 현실화 방안 및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 및 정원을 감축함.

○ (해외 자원개발 효율화) 2016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함[93].

- (광물자원공사) 2017년 말까지 해외사무소(몽골, 칠레, 인니)를 철수하고, 책임사업부제는 2016년 도입준비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도입을 완료함.
- (석유·가스공사) 2016년부터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 유치와 경영 관리를 강화함.

○ (전력판매 민간 개방) 2016년 말까지 개방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함.

○ (가스 도입·도매 민간 개방) 2017년 상반기까지 개방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기관 상장) 2016년 T/F를 구성하고 상장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장함.

---

90)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

91) 인증기관 인정서 반납

92) 에특회계법 시행령, 에특회계 사무위탁규정 등

93) 해외자산의 경우 매년 가치평가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매각

〈표 Ⅰ－30〉 에너지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추진기한	주요 과제
‘16년	▪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발전사업 기관별 특화 전신주 관리업무 철수(한전KDN(주)), 원전 해외수출기능 강화(한수원) 등 4개
‘17년	▪ 일반용 전기 사용전점검 일원화(한전), 발전용 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한수원),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 폐지(한전), 전기용품 시험·인증기능 폐지(전기안전공사), 에특회계 사무·융자이관(광물, 석유),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등 10개
‘18년~(계속)	▪ 대한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및 정원의 감축 ▪ 해외 자원개발 기능조정(석유,가스,광물) 및 광물자원공사 출자회사 정리 등 4개 ▪ 공공기관 상장,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등 2개 ▪ 전력판매(한전),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및 도입·도매(가스)시장 민간개방 등 2개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6.8.31.)』에서 발췌

(2) 환경 분야

□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총 10개 기관(<표 Ⅰ-31>)이며 정원 4,300여명, 예산 2.4조원으로 환경보전, 환경오염 피해구제, 환경·기상 분야 R&D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표 Ⅰ－31〉 환경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주무부처	분 류	기관명
환경부	준정부기관(4)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타공공기관(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낙동강생물자원관, 상하수도협회
기상청	준정부기관(1)	▪ 한국기상산업기술원[94]
	기타공공기관(2)	▪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자료: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2016.6.13.)』에서 발췌

□ 환경 분야 공공기관은 기관 간 업무중복 및 이원화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민간이 수행 가능한 비핵심 업무의 직접 수행, 민간시장이 성숙한 사업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관계에 있음.

94)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됨

○ 환경피해구제, 생태·생물 보전·연구 등 기관 간 업무중복 및 이원화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립공원 주차장, 기상콜센터 등 민간이 수행 가능한 비핵심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민간영역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 민간시장이 성숙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이나 하수도 진단 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관계에 있음.

□ 정부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정리 등으로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함.

○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중) 4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여 생물조사·연구기능도 일원화하고자 함[95].

○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여 화학물질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고 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된 상·하수도 통계생산 기능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임.

○ 법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운영업무는 위탁기간 만료 시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96],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매점 운영의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97].

○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며[98] 한국환경공단이 민간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의 업무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는 방안이 마련됨[99].

---

95)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실용화, (국립환경과학관) 습지생태 연구

96) 하남시 펌프장·복합환경 기초시설('16.11월 만료),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16.12월),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관리 9개소('21.6월 만료)

97) 전체 민간위탁 시설(주차장, 휴게소·매점 등): 61 → 77개소

98)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상콜센터(☎131) 민간위탁

99) '18년 이후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시설 설치사업 등 참여를 중단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3,000m3/일 미만) 기술 진단 분야에서도 '17년부터 철수하여 민간기업이 전담하도록 함

〈표 Ⅰ－32〉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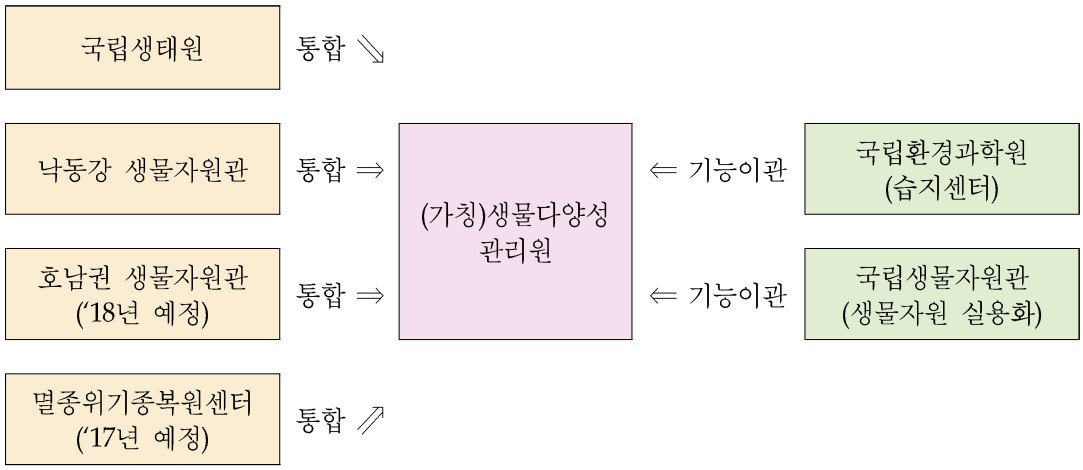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2016.6.13.)』에서 발췌

〈표 Ⅰ－33〉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조정

구 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정안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등록지원	⬅	화학물질 등록지원	환경공단
제품 안전관리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기 술 원
토양오염 조사	토양오염조사·평가 지원	⬅	토양환경평가	환경공단
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	⬅	폐자원특성화대학원 지원	환경공단
환경 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	환경오염피해구제	기 술 원
환경산업 통계	환경산업실태조사	➡	환경기술실태조사	기 술 원
국제 협력	해외사무소	➡	해외 환경협력센터	기 술 원

자료: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2016.6.13.)』에서 발췌

□ 추진계획상 2016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과제는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유사·중복기능 정리, 상하수도 통계관리 일원화 등 5개 과제임.

○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유사중복기능(화학물질·제품, 토양오염 조사, 특성화대학원) 정비, 상하수도 통계관리일원화 및 소규모하수도 기술진단 철수 등이 포함됨.

□ 생태·생물 관련기관 통합 등 법령 개정사항과 민간위탁 추진 등 8개 과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생태·생물 관련 기관 통합) 2016년 말까지 통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7년 6월까지 하위법령을 제정, 2017년 하반기 출범할 예정임.

○ (환경오염피해구제 일원화) 2016년 말까지 법률 개정안[100]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7년 3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2017년 7월 시행함.

○ (슬레이트 처리업무 철수 등) 2016년 말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신규사업 참여를 중단함.

○ (국립공원 시설 민간위탁 등)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사업 이관 준비 등을 위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함.

- 국립공원 시설(16개소) 민간 위탁: 2016년(7개소), 2017년(9개소)
- 기상산업진흥원 콜센터 민간 위탁: 2016년 위탁사 선정, 2017년부터 위탁 운영

□ 2018년 이후까지 추진 예정인 환경시설 운영 업무는 지자체 등과 기 계약한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철수할 예정임.

○ 하남시 환경기초시설(~2016년),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2021년), 기타 비점오염저감 및 생태하천 복원 설치지원(~'2017년) 등이 이에 해당함.

〈표 Ⅰ－34〉 환경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 과제

추진기한	주요 과제
'16년	▪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 (화학물질·제품 관리, 토양오염 조사, 특성화대학원) ▪ 상·하수도 통계관리 일원화,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철수
'17년	▪ 생태·생물 관련기관 통합 ▪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환경산업통계 일원화, 환경공단 해외사무소 철수 ▪ 국립공원 시설 및 기상콜센터 민간위탁 ▪ 기상산업진흥원 핵심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에서 철수 ▪ 슬레이트 처리 및 환경시설 설치·지원 철수
'18년 이후	▪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철수

자료: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6.8.31.)』에서 발췌

100)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및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개정

(3) 교육 분야

□ 교육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은 총 8개 기관임.

○ 8개 기관의 정원은 약 1,200여명이고, 예산 규모는 약 21.3조원임.

○ 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상 8개 기관의 주요업무는 국가장학사업, 사립교직원 복지사업, 역사·한국학 조사·연구, 평생교육 사업지원 등임.

〈표 Ⅰ－35〉 교육 분야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 현황

분 류	기 관 명
준정부기관(3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타공공기관(5개)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사학진흥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2016.6.13.)』에서 발췌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고전번역 등 기관별 유사·중복기능 수행으로 재정지원 효과 저하, 지원조직 과다, 비핵심 업무 수행 등 핵심역량 분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민간경합 축소, 교육·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 된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임.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의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은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에서 수행 중인 세무·회계교육 등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지원인력을 축소함.

○ 수요자 편의제고 및 직업훈련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학점은행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직업훈련정보(HRD-net, 고용정보원) 간 연계를 통해 학습이력 통합관리 및 구직자 편의 제고를 모색하고자 함.

□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중 2016년 내 완료 예정인 과제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일원화, 대학 재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사학연금공단 지원 인력 축소 등 5개 과제임.

○ 평생학습계좌와 직업훈련정보(HRD-net)간 시스템 연계[101], 국가 고전번역사업 일원화[102] 과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표 Ⅰ-36〉 교육 분야 연도별 주요 추진 과제

추진기한	주요 과제
'16년	▪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일원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 사학연금공단 지원 인력 축소, 학점은행제-직업훈련 과정 연계 강화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축소
'17년	▪ 평생학습계좌와 직업훈련정보간 시스템 연계 ▪ 국가 고전번역 사업 일원화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6.8.31.)』에서 발췌

(4) 3차 기능조정 주요 추진 실적

□ 2016년 12월 기준으로 3차 기능조정 계획의 44개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103]

□ 2016년 완료가 목표였던 14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완료됨.

○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이사회 의결 및 한전 전력연구원 내 『기초전력연구센터』를 개소함.('16.12월 완료)

○ (발전사업 해외진출 특화[104]) 『해외발전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개정함.('16.12월 완료)

○ (한수원 원전 해외수출 기능 강화) 관련지침[105] 개정 및 이사회 의결('16.12월)을 거쳐 KINGS 사무국을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을 완료함.

---

101) 전산 시스템 연계, 사용자 동의, 시범운영 기간 등 준비 기간 고려

102) 한중연이 기 수행중인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DB사업 기간('07~'17) 고려

103) 2016년 12월 기준 44개 과제에 대한 추진형황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7.1.25.)』를 기준으로 작성함

104) (한전) 에너지신산업, 대형발전, 경협 / (발전5사) 화력, 신재생, O&M(운영)

105) 한전-발전자회사 협력지침(제8조): 원전 수출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추진가능

○ (화학물질·제품관리 기능조정[1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16.8월 완료)

○ (상하수도 통계관리 일원화)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107]』을 제정함.('16.12월 완료)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축소)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중복되는 3개 분야 10개 교직원 연수사업을 폐지함.('16.10월 완료)

〈표 Ⅰ-37〉 분야별 완료 과제

분 야	과제수	과제명
에너지	4개	①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② 한전KDN(주) 전신주관리업무 철수, ③ 발전사업 해외진출 특화, ④ 한수원의 원전해외수출 기능 강화
환 경	4개	① 화학물질·제품관리 일원화, ② 특성화 대학원 일원화, ③ 상·하수도 통계관리 일원화, ④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철수
교 육	5개	①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일원화, ②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③ 사학연금공단 지원인력 축소, ④ 학점은행제-직업훈련 과정 연계 강화, ⑤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축소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7.1.25.)』에서 발췌

□ 2016년 완료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과제 중 30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임.

○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2월 공운위에 보고하고, 2017년 대상기관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상장 추진절차에 착수함.('16.12월~)

○ (댐관리 일원화) 2016년 10월 관계부처 협의[108]를 거쳐 2017년 3월내 위탁개시를 위한 계약사항을 협의 중임.

○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2016년 7월 '발전 정비 산업 경쟁도입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을 발전자회사가 공동으로 발주하여 진행 중임.

○ (가스도입 직수입 활성화·민간개방)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을 2016년 11월 완료함.

○ (국립공원 시설운영 민간개방) 주차장, 매점·휴게소 등 7개소 민간위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개소는 금년 중 위탁을 추진 중임.

106) 화학물질 등록지원(→환경공단),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환경산업기술원)

107) 한국환경공단(국가수도정보센터)의 업무(제5조) : 상하수도 통계 작성

108)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위탁 일정 및 인력조정 등에 대해 협의('16.10.11일)

○ (생태-생물기관 통합) 통합기관 설립을 위한 『통합실무추진단』을 2016년 6월부터 운영 중이며 근거법률안[109]이 2016년 12월부터 법제처에서 심사 중임.

○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철수) 하남시 환경시설 운영업무가 종료되었으며[110], 비점오염저감시설, 한강수계관측망 등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임.

○ (기상콜센터 민간위탁)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업체명 : KTCS)하여 2016년 12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중 위탁운영에 착수함.

○ (평생학습계좌 및 직업훈련 연계) 직업훈련 21개 과정을 2016년 10월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완료 하였으며 자동 연계시스템 구축을 협의 중임.

○ 다만, 『전력판매 민간 개방』의 경우 일부 민간참여 확대 방안[111]을 발표하였으나 전력판매 개방 로드맵 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구체적인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

□ 2016년 완료목표 예정이던 과제 중 1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음.

○ 2017년 1월 기준 토양오염 평가기능 일원화』의 경우 법률개정안[112]을 2016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계류 중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17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상임위를 설득 중임.

□ 3차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의 과제별 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Ⅰ-38>, <표 Ⅰ-39> 및 <표 Ⅰ-40>과 같음.

109) 법률명 :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0) 업무 수탁기관 변경 : 한국환경공단 → 하남도시공사

111) 신재생 생산 전력의 직거래 도입,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 직접구매 활성화 등 『에너지신사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16.7월)

112) 토양환경보전법 10조의10, ③ : 토양환경오염센터 운영을 환경공단에 위탁

〈표 Ⅰ-38〉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순번	과제명	추진시기	추진현황
1	▪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16년	완료
2	▪ 발전사업 해외진출, 기관별로 특화	'16년	완료
3	▪ 한전KDN(주) 전신주 관리업무 철수	'16년	완료
4	▪ 한수원의 원전 해외수출 기능 강화	'16년	완료
5	▪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17년	정상추진
6	▪ 한수원 발전용 댐 관리 수공에서 위탁 운영	'17년	정상추진
7	▪ 한전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 폐지	'17년	정상추진
8	▪ 전기안전공사 전기용품 시험·인증기능 폐지	'17년	정상추진
9	▪ 에특회계 사무·융자 업무 이관	'17년	정상추진
10	▪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확대	'17년	정상추진
11	▪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중단	'17년	정상추진
12	▪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17년	정상추진
13	▪ 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정리	'17년	정상추진
14	▪ 원자력문화재단 조직·인력 효율화	'17년	정상추진
15	▪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및 단계적 정원 감축	계속	정상추진
16	▪ 석유공사 해외자원 개발기능 효율화	계속	정상추진
17	▪ 가스공사 해외자원 개발기능 효율화	계속	정상추진
18	▪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 개발기능 축소 및 구조조정	계속	정상추진
19	▪ 전력판매 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계속	정상추진
20	▪ 가스 도입·도매 직수입 활성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	계속	정상추진
21	▪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계속	정상추진
22	▪ 광물자원공사 출자회사 정리	계속	정상추진
23	▪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속	정상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7.1.25.)』에서 발췌

〈표 Ⅰ-39〉 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순번	과제명	추진시기	추진현황
1	▪ 공단-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화학물질·제품)	'16년	완료
2	▪ 공단-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특성화 대학원)	'16년	완료
3	▪ 상·하수도 통계관리 일원화	'16년	완료
4	▪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철수	'16년	완료
5	▪ 공단-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토양오염 조사)	'16년	지연
6	▪ 생태·생물 관련기관 통합	'17년	정상추진
7	▪ 공단-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환경오염 피해구제)	'17년	정상추진
8	▪ 공단-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환경산업 통계)	'17년	정상추진
9	▪ 공단-기술원 유사·중복기능 정리(국제 협력)	'17년	정상추진
10	▪ 국립공원 시설운영 민간개방 확대	'17년	정상추진
11	▪ 기상산업진흥원 기상콜센터 민간위탁	'17년	정상추진
12	▪ 기상산업진흥원 핵심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 철수	'17년	정상추진
13	▪ 환경공단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업무 철수	'17년	정상추진
14	▪ 환경공단 환경시설 운영 업무 철수	'21년	정상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7.1.25.)』에서 발췌

〈표 Ⅰ-40〉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제별 추진실적

순번	과제명	추진시기	추진현황
1	▪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기능 일원화	'16년	완료
2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16년	완료
3	▪ 사학연금공단 지원인력 축소	'16년	완료
4	▪ 학점은행제-직업훈련 과정 연계 강화	'16년	완료
5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사업 축소	'16년	완료
6	▪ 평생학습계좌와 직업훈련정보간 시스템 연계	'17년	정상추진
7	▪ 국가 고전번역 사업 일원화	'17년	정상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2017.1.25.)』에서 발췌

3. 2017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이번 장에서는 201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17년도 공공기관 주요 경영정보는 332개 공공기관(2017년 1월 기준)과 23개 부설기관이 2017년 4월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113]와 2016년도 경영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114], 그리고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임.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2017년 9월 시점의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부설기관 현황,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115],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116], 상장 공공기관 현황[117]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17년 5월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 먼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대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118].

---

113) 2017년 1월 지정된 332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3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17년 4월말까지 2016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114)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115)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ltm.go.kr)' 참고.

116)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

117)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6) 참고

118)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119].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미함[120].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함[121].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임.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년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122].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전년도 통합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충분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123], 발표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결과, 벌점현황, 전년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119)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기타공공기관 중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 편람의 'Ⅱ. 기관별 현황'에 해당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함

120) 기획재정부가 알리오시스템 '31.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할 때 공시한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

121)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해당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며 동 편람의 'Ⅱ. 기관별 현황'에 해당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함.

12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2.7.)』 및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평가 관련자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05)

12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7.3.27.)』 보도자료 및 『'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6.3.24.)』을 활용

가. 일반현황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124)]

□ 2017년 9월 현재 330개 공공기관[125)]의 정부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부처가 산하에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1개임.

○ 35개 부처 중 25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이 있음.

○ 2017년 7월 단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종전의 국민안전처가 폐지됨에 따라 舊 국민안전처 산하 2개 공공기관이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와 소방청 소관 공공기관으로 재배치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신설 부처인 소방청 소관 공공기관으로 변경됨.

○ 또한 종전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舊 중소기업청 산하 5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됨.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舊 중소기업청 소관 공공기관보다 1개 기관 많은 9개 기관임.

○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수는 8개에서 7개로 조정됨.

○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Ⅰ-41>과 같음.

---

124)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2> 참고

125) 2017년 1월 지정된 33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통·폐합을 거쳐 2개 기관으로 신설 출범하여 2017년 9월 수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수가 330개로 조정됨.

〈표 Ⅰ－4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7.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30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2개)	기타 공공기관 (207개)
기획재정부	4	0	1	0	0	3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0	0	0	9	37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4	0	0	0	0	4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3	0	2	4	3	24
농림축산식품부	10	0	1	0	5	4
산업통상자원부	41	11	5	2	13	10
보건복지부	22	0	0	1	6	15
환경부	8	0	0	0	4	4
고용노동부	12	0	0	1	4	7
여성가족부	5	0	0	0	2	3
국토교통부	23	2	7	0	5	9
해양수산부	17	1	4	0	4	8
중소벤처기업부	9	0	0	2	2	5
국무조정실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1	2
금융위원회	7	0	0	4	0	3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2	0	0	0	1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3	0	0	0	1	2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지정(안)(2017.9.7.)』을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 7월 개편된 정부조직과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330개)을 기준으로 작성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하며 이 중 20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기관(19개 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0개 기관이 포함됨.
- 분야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41개 기관이며 전체 공공기관 유형에 기관이 고루 분포해 있음.

- 전체 공기업 중 16개 기관(45.7%)이 에너지 분야 기관으로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에 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중 공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처에 해당함.
- 특히 2016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3개 기관(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과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17년 1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가 2016년 1개에서 2017년에 5개로 증가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3개이며 이 중 2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문화·체육 분야의 특성상 사업성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관련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개 기관[126])이 다른 주무부처에 비해 많이 분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준시장형 공기업)뿐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20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6.4%를 차지함.

12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4개 기관임.

□ 2016년 대비 2017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12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있었음.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는 공공기관 수가 증가함.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3개 정부 부처는 2017년 7월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후속한 소관 공공기관 조정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수가 증가함.
- 나머지 8개 정부 부처는 2017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영향으로 소관 공공기관 수가 증가함.

○ 금융위원회는 종전 소관 공공기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수가 9개에서 8개로 감소함.

○ 보건복지부,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대비 산하 공공기관 수는 그대로 유지하나 실제 2016년과 2017년 소관 공공기관은 차이가 있음.

- 제외 또는 추가된 기관수가 동일하여 공공기관 수에 변동이 없음.

○ 2016년 대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와 부처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Ⅰ-42>와 같음.

〈표 Ⅰ－42〉 전년대비 2017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구 분	기관수		전년대비 변동내역	
	'16	'17	제외	추가
기획재정부	3	4 (+1)	-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21	22 (+1)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舊.미래창조과학부)	43	46 (+3)	-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행정안전부 (舊.행정자치부)	2	3 (+1)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舊.국민안전처 산하)
문화체육관광부	32	33 (+1)	-	한국저작권보호원
산업통상자원부	40	41 (+1)	기초전력연구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22	22 (-)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통합)
환경부	7	8 (+1)	-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11	12 (+1)	-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중소벤처기업부 (舊중소기업청)	8	9 (+1)	-	기술보증기금 (前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위원회	9	8 (△1)	기술보증기금	-
산림청	2	2 (-)	녹색사업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통합)
소방청 (신설 정부조직)	0	1 (+1)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舊.국민안전처 산하)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6.1.29.)』 보도자료,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및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지정(안) (2017.9.7.)』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부처명 변경 또는 신설 부처는 아래와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舊 국민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소방청(舊 국민안전처)

2. 전년대비 증감은 ( )로 표시

3. '제외'는 2016년 공공기관 중 2017년에 지정해제된 기관, 2017년 중 기관 통·폐합 등으로 인해 해산된 기관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된 기관 등을 포함함.

4. '추가'는 2017년 1월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2017년 9월 수시 지정된 기관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 등을 포함함.

2) 공공기관 설립형태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127]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128]

□ 공공기관 설립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Ⅰ-2>와 같음.

○ 공기업은 개별 설립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민법에 근거한 공기업은 없음.

○ 반면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상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수가 가장 적음.

---

127)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3> 참조

128)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인 동시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구분함.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만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함

〈그림 Ⅰ－2〉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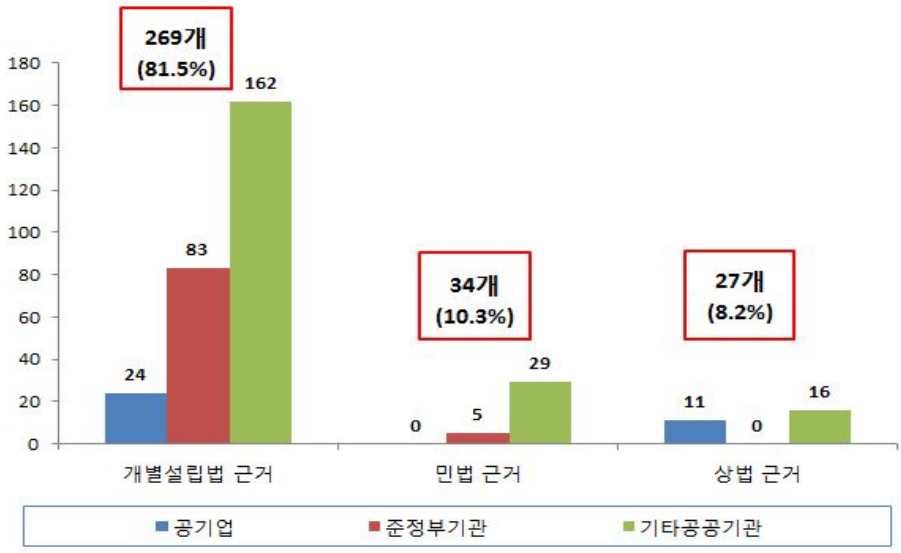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269개(81.5%)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特殊法人)으로 일컬어짐[129].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음.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에 개별 설립근거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변경된 기관임.

129)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예: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전담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해당 조문은 전담회사 설립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별 설립근거법령으로 보기 힘듦).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립근거법률 제정 이전까지는『자연공원법』제44조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었으나 2016년 5월『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변경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 1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3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됨.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4개 기관(10.3%, <표 Ⅰ-43>)임.

○ 공기업 중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5개 준정부기관과 29개 기타공공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임.

○ 전체 공공기관 중 사단법인 형태는 2개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이에 해당함.

○ 2017년 신규 지정 또는 수시 지정된 공공기관(15개) 중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고용노동부 산하) 등 4개 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4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됨.

〈표 Ⅰ－43〉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인 공공기관

구 분	기관명	
재단법인	준정부기관 (5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타공공기관 (27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정동극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재단, ICM이민정책연구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단법인	기타공공기관 (2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밑줄 친 기관은 2017년 신규 지정 또는 수시 지정된 기관임

□ 공공기관 설립형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27개 기관(8.2%, <표 Ⅰ-44>)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보유지분만큼 해당 기관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1개 공기업과 16개 기타공공기관임.

- 2016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5개 기관((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이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어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수가 2016년 6개에서 11개로 늘어남.

-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24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로 母기관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Ⅰ－44〉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11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16개)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벤처투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밑줄 친 기관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아니나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되어 상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33개(<표 Ⅰ-45>)임.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되는 기관은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6개 및 기타공공기관 6개임.

○ 이 중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른 기관의 자회사임.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Ⅰ－45〉 개별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

구 분	기관명
공기업 (21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6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6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과 이외 기관으로 구분됨.

□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표 Ⅰ-46>)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공기관 중 60개 기관임.

○ 60개 기관 중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6개, 기타공공기관은 22개 기관임.

- 전체 공기업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2개 공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기관에 해당함.
- 22개 기타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나머지 6개 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근거 형태는 다르나 모두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형성한 공공기관임.

〈표 Ⅰ－46〉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3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6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22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주)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88관광개발(주),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상장 공공기관은 밑줄로 표시

□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출자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이외 민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Ⅰ-47>).

○ 정부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정부출자기관)은 31개 기관으로 대부분 공기업임.

○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출자가 이루어진 기관은 28개 기관으로 이 중 26개 기관은 공공기관 단독 보유지분이 50%이상인 공공기관 자회사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Ⅰ-47〉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출자주체 기준)

구 분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6개)	기타공공기관(22개)
정부 출자 (31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88관광개발(주)
공공기관 자회사 (26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 공동출자 (2개)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간출자 (1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 공동출자는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지분이 30~50%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

□ 설립근거 기준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을 구분해 보면(<표 Ⅰ-48>), 상법에 따라 설립된 27개 기관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주식을 발생하는 33개 기관으로 구분됨.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개별설립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이 다수(27개)임.

○ 주식회사 형태인 기타공공기관(22개)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16개)이 72.7%를 차지함.

〈표 Ⅰ－48〉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 기준)

구 분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6개)	기타공공기관 (22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3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상법 근거 (27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88관광개발(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 공동출자는 공공기관 단독 또는 공동 지분이 30~50%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

□ 60개 기관 중 상장 공공기관(2017년 9월 기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이상 공기업),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8개 기관임.

○ 2016년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2017년에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임을 밝힘[130].

- 정부는 공공기관 상장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상장 대상인 공공기관은 모두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주) 등 7개 기관과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임.

3)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2017년 9월 기준 330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26개 기관이며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1개 기관임(<표 Ⅰ-49>).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母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공공기관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였거나, 母기관의 소유지분이 50%미만이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을 의미함.

-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50% 사이이나 실질적 지배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예: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 자회사를 보유한 11개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8개 기관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3개 기관임.

- 8개 공기업 중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한 7개 공기업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131].

○ 공공기관인 자회사가 있는 11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 기관씩 보유하고 있음.

---

130) 기획재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2016.6.14.)』 보도자료

131) 자회사를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임

□ 26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14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속함.

○ 공기업 유형인 공공기관 자회사는 11개이고 준정부기관 유형은 1개 기관(한국전력거래소)임.

- 2016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등 5개 기관이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됨.
- 이에 따라 공기업 유형인 공공기관 자회사가 2016년 6개에서 2017년 11개로 늘어남.

〈표 Ⅰ-4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뫂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6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1개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개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워터웨이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관광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4)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2017년 9월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이 23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음.

○ 부설기관을 보유한 1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부설기관의 모기관인 18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각 1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3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기관은 산하에 각 2개의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16년에는 24개 부설기관이 존재하였으나 2017년에는 23개 부설기관이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소프트웨어공학센터가 본원에 흡수됨에 따라 부설기관 수가 24개에서 23개로 줄어듦.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부설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알리오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을 요약하면, <표 Ⅰ-50>과 같음.

〈표 Ⅰ－50〉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23개 기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母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녹색기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고등과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재료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세계김치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요양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부설기관을 설치한 공공기관 중 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공공기관이 다수를 차지함.

○ 부설기관을 설치한 1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3개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5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개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개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은 3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고 한국특허정보원은 특정분야 진흥 관련 기관임.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본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132].

○ 23개 부설기관 중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이는 기관은 9개 기관임.

-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서울요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설기관(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예: 부설기관 부지·건물의 확보, 인력·예산 운영 등 사업추진계획 등)은 상급기관인 본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관에서는 본원의 소재지 관련 조항이나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을 통해 부설기관(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분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는 아니나 본원(또는 상급기관)과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및 인력·조직(인사) 관리상 독립성을 보장받음.

132) 부설기관의 설립근거는 <부록3> 참고

○ 부설기관은 일반적으로 본원 정관과 별도로 부설기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7조의3 제2항에서 분당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설기관의 장과 임원은 본원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23개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이 본원의 임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1개 기관뿐임[133].

5)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2017년 9월 현재 330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Ⅰ-51>)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117개(35.5%) 공공기관이 소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5.5%), 대전(10.3%), 경기(9.4%), 부산(6.1%), 세종(5.5%)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66.7%를 차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17.1%)이 낮아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편중 현상 해소 효과가 큼을 확인 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54.6%).
- 준정부기관은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이 33.0%임.

133)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5조(임원) 제1항 제3호에서 부설기관 소속 대표 3인(부설기관장 포함)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임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표 Ⅰ－5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7.9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7	20	15	7	4	34	9	18	31	12	11	7	7	13	10	12	3
	(35.2)	(6.1)	(4.5)	(2.1)	(1.2)	(10.3)	(2.7)	(5.5)	(9.4)	(3.6)	(3.3)	(2.1)	(2.1)	(3.9)	(3.0)	(3.6)	(0.9)
· 공기업 (35개)	4	3	2	2	0	4	3	0	2	3	0	2	0	4	3	2	1
	(11.4)	(8.6)	(5.7)	(5.7)	-	(11.4)	(8.6)	-	(5.7)	(8.6)	-	(5.7)	-	(11.4)	(8.6)	(5.7)	(2.9)
· 준정부기관 (88개)	20	7	6	1	1	5	3	3	9	6	6	2	4	8	2	4	1
	(22.7)	(8.0)	(6.8)	(1.1)	(1.1)	(5.7)	(3.4)	(3.4)	(10.2)	(6.8)	(6.8)	(2.3)	(4.5)	(9.1)	(2.3)	(4.5)	(1.1)
· 기타공공기관 (207개)	93	10	7	4	3	25	3	15	20	3	5	3	3	1	5	6	1
	(44.9)	(4.8)	(3.4)	(1.9)	(1.4)	(12.1)	(1.4)	(7.2)	(9.7)	(1.4)	(2.4)	(1.4)	(1.4)	(0.5)	(2.4)	(2.9)	(0.5)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괄호)는 전체 공공기관 및 유형별 각 지역 소재 기관 비중임
2.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자료 작성

□ 2017년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율을 2016년과 비교해 보면[134],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분포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가 소재한 강원, 충북, 전북 및 전남 지역은 공공기관 분포율이 증가함.

〈표 Ⅰ－52〉 2016~2017년 지역별 소재 공공기관 분포율 비교(309개 기관 기준)

(단위: %, %p)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년(A)	35.2	6.0	4.4	2.2	1.3	10.5	2.5	5.7	10.2	3.5	2.9	2.2	1.9	3.8	2.9	3.8	1.0
2017년(B)	34.3	6.0	4.4	2.2	1.3	10.5	2.5	5.7	9.8	3.8	3.2	2.2	2.2	4.1	2.9	3.8	1.0
전년대비 증감(B-A)	△1.0	-	-	-	-	-	-	-	△0.3	0.3	0.3	-	0.3	0.3	-	-	-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지역별 분포율은 2016년 공공기관 중 201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15개 기관을 기준으로 2016년 및 2017년 지역별 공공기관 수 비중으로 산출
2. 2016년 공공기관 중 2017년에 지정해제된 기관과 2017년 신규지정 또는 수시지정된 기관은 비교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

134)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소재지 정보는 <부록4> 참고

□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분포율 비교 시 제외한 2017년 1월 신규로 지정된 13개 기관과 9월 수시 지정된 2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 15개 기관 모두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하며 이 중 9개 기관이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표 Ⅰ－53〉 2017년도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 울	9개	한국재정정보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 산	1개	국립부산과학관
대 구	1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 전	1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 산	1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충 북	1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 북	1개	한약진흥재단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키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전대상 기관은 153개 기관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8개 기관임[135].

135) 당초 이전대상 기관은 154개로 이 중 공공기관은 109개였으나 이 중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7년 공공기관 기준 108개 기관이 이전대상임.

〈표 Ⅰ－54〉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8	19	49	40
· 부산	11	한국남동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강원	10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 충북	1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충남	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경북	8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136]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세종	19	-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연구원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지정된 3개 기관(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은 2017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자료 작성

□ 2017년 9월 현재 지방이전 대상인 108개 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92.6%)이 지방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137].

○ 공기업은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2016년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5.9%와 85.0%의 이전율을 보임.

○ 12개 지역별 이전 완료율을 살펴보면, 대구, 세종, 강원, 충남, 경북 및 경남 등 6개 지역은 대상기관 이전이 완료됨.

- 제주 혁신도시는 이전율이 33.3%로 대상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만 이전을 완료한 상태임.

136) 2016년 7월 1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137) 혁신도시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현황은 <부록5> 참고

〈표 Ⅰ－5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대상 공공기관	108	100 (92.6)	19	19 (100)	49	47 (95.9)	40	34 (85.0)
· 부산	11	10 (90.9)	2	2 (100)	4	4 (100)	5	4 (80.0)
· 대구	9	9 (100)	2	2 (100)	6	6 (100)	1	1 (100)
· 광주/전남	13	12 (92.3)	3	3 (100)	9	8 (88.9)	1	1 (100)
· 울산	7	6 (85.7)	2	2 (100)	4	3 (75.0)	1	1 (100)
· 세종	19	19 (100)	-	-	3	3 (100)	16	16 (100)
· 강원	10	10 (100)	3	3 (100)	6	6 (100)	1	1 (100)
· 충북	10	8 (80.0)	-	-	6	6 (100)	4	2 (50.0)
· 충남	2	2 (100)	2	2 (100)	-	-	-	-
· 전북	6	5 (83.3)	-	-	4	4 (100)	2	1 (50.0)
· 경북	8	8 (100)	3	3 (100)	2	2 (100)	3	3 (100)
· 경남	10	10 (100)	2	2 (100)	4	4 (100)	4	4 (100)
· 제주	3	1 (33.3)	-	-	1	1 (100)	2	0 (0.0)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17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을 2016년과 비교하면, <표 Ⅰ-56>과 같음.

○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율은 2016년 88.9%에서 92.6%로 3.7%p 증가함.

- 2016년 8월 이후부터 2016년 9월 사이 지방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준정부기관 3개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기타공공기관 1개 기관(한국교육개발원)이 포함됨.
- 공공기관 유형별 지방이전 완료율을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이 2016년 89.8%에서 2016년 95.9%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광주/전남, 강원, 충북 및 전북 등 4개 혁신도시는 2015년 대비 2016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이 개선됨.

〈표 Ⅰ－56〉 2016~2017년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율 비교

(단위: %, %p)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6 (A)	'17 (B)	증감 (B–A)	'16 (A)	'17 (B)	증감 (B–A)	'16 (A)	'17 (B)	증감 (B–A)	'16 (A)	'17 (B)	증감 (B–A)
전체(108개)	88.9	92.6	3.7	100	100	-	89.8	95.9	6.1	82.5	85.0	2.5
· 부산	90.9	90.9	-	100	100	-	100	100	-	80.0	80.0	-
· 대구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 광주/전남	84.6	100	7.7	100	100	-	77.8	88.9	11.1	100	100	-
· 울산	85.7	100	-	100	100	-	75.0	75.0	-	100	100	-
· 세종	100	-	-	-	-	-	100	100	-	100	100	-
· 강원	90.0	100	10.0	100	100	-	83.3	100	16.7	100	100	-
· 충북	70.0	-	10.0	-	-	-	100	100	-	25.0	50.0	25.0
· 충남	100	100	-	100	100	-	-	-	-	-	-	-
· 전북	66.7	-	16.7	-	-	-	75.0	100	25.0	50.0	50.0	-
· 경북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 경남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 제주	33.3	33.3	-	-	-	-	100	100	-	0	0	-

자료: 국토교통부『공공기관 지방이전』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12건으로 <표 Ⅰ-57>과 같음.

○ 미매각 부동산을 보유한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3개 12개 기관임.

- 이 중 2개 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방이전을 완료하지 못함.

○ 미매각 부동산 12건 중 서울 소재 부동산이 7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5건임.

〈표 Ⅰ－57〉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2017.7.31.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소재지	이전지	이전 여부	면적(㎡)		매각 예정액
					부지	건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안양	광주	미완료	377	1,414	46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마포	대구	완료	2,845	30,530	1,010
한국광해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종로	강원	완료	3,927	20,856	875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서초	충북	완료	60,037	12,353	8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완료	4,063	13,562	7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강남	대구	완료	76	1,138	56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구로	대구	완료	7,396	27,495	949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고양	부산	완료	6,928	22,626	506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완료	243	3,692	132
한국전력기술(주)	공기업 (준시장형)	용인	경북	완료	8,924	45,180	575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성남	경남	완료	37,998	72,011	4,25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안산	부산	미완료	92,939	30,342	917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종전부동산 매각대상 현황(2017.8.23.)』를 참고하여 작성

6)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138]

(1) 공공기관 관리 기금 개요

□ 국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국가재정법』 제4조 및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의미함.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함.

- 정부가 직접 설치한 기금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 정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동법 제102조 제6항[139]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2017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부록6>과 같음.

○ 2016년에는 총 65개의 기금이 설치되었는데, 2017년보다 2개의 기금이 신설되어 총 6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신설된 기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임.

---

138)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139)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67개 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 금융성 기금이 8개, 그리고 사업성 기금이 53개임.

- 2017년 신설된 2개 기금은 모두 사업성 기금에 해당함.

○ 67개 기금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속 조직이나 소관 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23개로 67개 기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 기금으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8개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개[140]이고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주체임.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141]이며 위탁관리 주체인 기관은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이 있음.
- 2017년 신설된 2개 기금은 모두 위탁 관리되고 있는 기금으로 이 중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민간기관인 손해보험협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음.

□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용하거나 정부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표 Ⅰ-58>)로 전체 기금(67개) 중 52.2%를 차지함[142].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3개, 금융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26개임.

- 금융성 기금(6개)은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임.

○ 관리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143]임.

---

14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상 한국은행 위탁관리), 농어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이상 농협중앙회 위탁관리), 수산발전기금(수협중앙회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손해보험협회 위탁관리)

142)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금 현황 및 기금별 개요는 <부록7>과 <부록8> 참고

143)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주무부처는 총 16개 정부부처로 부처별로 1~5개 이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표 Ⅰ-59>).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기금 수가 5개로 정부 부처 중 설치 기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16개 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함.

- 이외 공기업이 2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5개 기관임.

○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2개이고 나머지 24개 기관[144]은 각 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144)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과 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안전규제계정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음.

〈표 Ⅰ－58〉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회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기금	위탁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기금	직접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제교류기금	직접관리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국제질병퇴치기금 * 2017년 신설기금	위탁관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관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기타공공기관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학진흥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한국사학재단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015년 신설기금	위탁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발전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위탁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기금	위탁관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Ⅰ－5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7년 기준)

주무부처	소관 기금	
	개수	기금명
문화체육관광부	5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산업통상자원부	4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획재정부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교육부	2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외교부	2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국토교통부	1	주택도시기금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16개 부처	35개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주: 원자력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16개 부처의 소관 기금 수는 35개임

(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Ⅰ-60>과 같음.

〈표 Ⅰ－60〉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5말 (누계)	'16말 (누계)	'17계획 (당년)	'17계획 (누계)
2017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5,826,384	6,530,490	6,154,588	14,501,799	14,461,781	1,018,599	16,480,314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2,727,030	2,689,789	2,697,100	8,149,468	8,710,503	569,025	9,279,528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69,657	192,152	225,389	68,768	76,334	11,257	87,591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1,148,360	1,161,955	1,084,277	4,540,901	4,900,797	386,949	5,287,74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02,374	104,766	109,154	154,985	165,398	14,256	179,654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1,420,391	1,458,873	1,418,820	4,764,654	5,142,529	412,462	5,554,991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26,832	24,693	24,090	22,951	22,023	-1,804	20,219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27,985	31,598	33,022	13,515	11,897	-2,405	9,492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4,664	4,714	3,766	6,884	7,183	445	7,628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62,868	63,978	53,347	52,991	48,608	-4,480	44,128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61,713	70,849	89,913	-28,388	-12,108	16,999	4,891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27,806	33,905	31,908	54,497	59,511	5,350	64,861
	금융성 기금 소계			211,868	229,737	236,046	122,450	137,114	14,105	151,219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2,486	1,983	1,810	1,124	1,146	-61	1,085
	국민체육진흥기금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14,765	16,593	15,978	13,014	12,422	129	12,551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3,771	11,115	12,280	5,397	7,711	529	8,240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971	1,109	1,085	1,440	1,559	-60	1,499
	국제질병퇴치기금 * 2017년 신설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	-	831	-	-	406	406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5말 (누계)	'16말 (누계)	'17계획 (당년)	'17계획 (누계)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2,910	2,715	3,266	3,283	3,439	211	3,650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9,663	10,607	19,708	36,644	32,573	-737	31,836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3,960	24,697	28,850	39,642	39,900	565	40,465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601	1,928	2,271	1,550	1,771	326	2,097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16,594	25,725	20,703	66,794	76,468	92	76,560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9,393	9,088	10,194	41,697	46,050	7,301	53,351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3,350	3,909	5,402	1,110	814	1,471	2,285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20,334	28,382	48,592	51,340	57,215	8,125	65,340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9,607	11,469	9,834	4,010	3,589	-1,486	2,103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재단	4,768	4,613	4,431	13,919	13,909	-24	13,88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839	1,803	2,084	421	215	120	335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2,290	24,702	22,493	15,680	33,674	16,250	49,924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358	324	357	181	114	-60	54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3,189	2,924	3,273	3,362	3,539	-31	3,508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975	2,974	3,530	1	250	558	808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6,542	7,031	6,974	9,324	9,986	855	10,841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5,986	35,051	41,439	31,002	37,833	11,295	49,128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7,609	8,840	9,581	2,406	3,256	-793	2,463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5말 (누계)	'16말 (누계)	'17계획 (당년)	'17계획 (누계)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799,733	674,390	686,488	2,754,656	2,875,370	102,050	2,977,42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	80,943	89,098	80,683	164,330	168,040	-4,564	163,476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34	109	97	37	17	-9	8
	사업성 기금 소계			1,094,771	1,001,179	1,042,234	3,262,364	3,430,860	142,458	3,573,318

자료: 기획재정부『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기금운용은 기금수입 중 수납순액을 의미
2.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순조성액을 의미
3.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 규모는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는 기금 전체(67개 기금)와 상이한 추이를 보임.

- 기금 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기금은 2016년에 크게 증가하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규모가 다시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은 2015년 비해 2016년 운용 규모가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2017년에는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6년보다 다소 증가될 것이 예상됨.
-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기금은 2016년에 2015년 대비 다소 감소하다 2017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다소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조성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기금 유형별 운용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3개 유형 모두 상이한 추이를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은 2016년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2017년 계획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2015년보다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보임.
- 반면 사업성 기금은 2016년에 감소하다 2017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 규모가 2015년 운용 규모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임.
- 금융성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기금 유형별 조성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3개 기금 유형 모두 증가하는 모습임.

-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조성 규모 증가세가 2017년에 보다 강해지는 모습을 보임.

〈그림 Ⅰ-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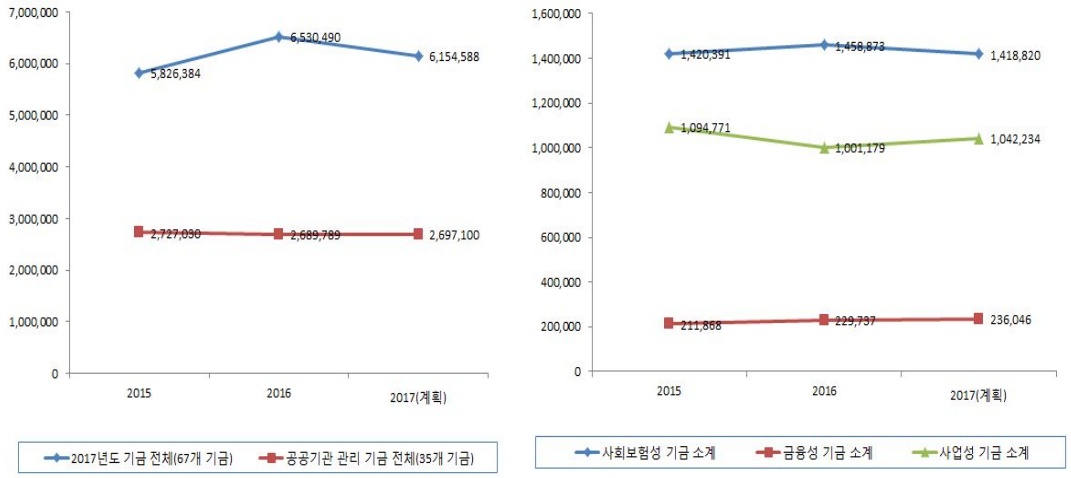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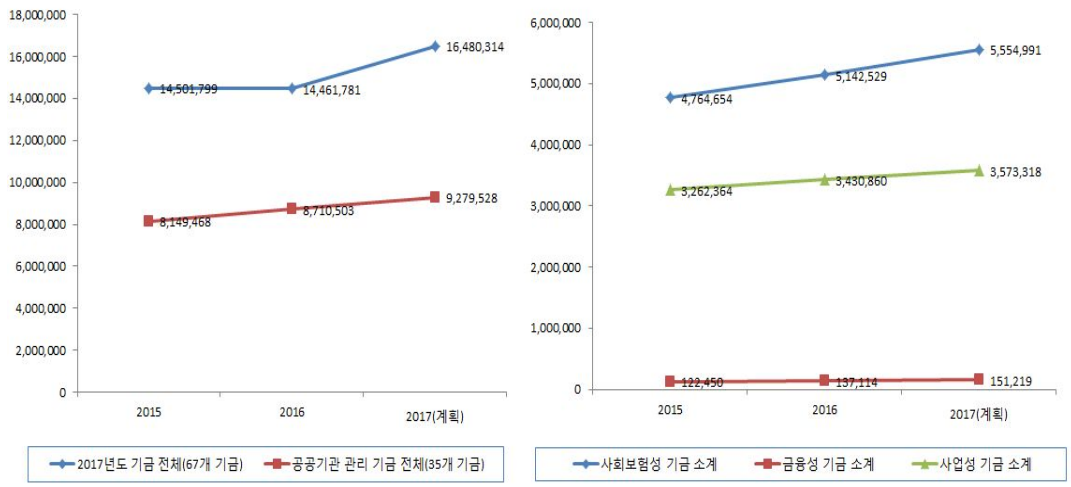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계획)) 공공기관 관리 기금(35개)이 전체 기금(67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3개의 유형별 기금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표 Ⅰ-61>)과 같음.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미만으로 2016년 41.2%에서 2017년 계획상 43.8%로 다소 비중이 커지나 2015년 수준(46.8%)에는 미치지 못함.

○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체 기금의 56.2%이었으며, 2016년과 2017년(계획)의 비중은 56.3%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에 있어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여 3개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3개 기금 유형이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개 유형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여 유사성을 찾기 어려움.

- 사회보험성 기금은 운용 규모상 비중이 2016년에 54.2%로 증가했다 2017년 계획상 52.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규모상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7년 계획상 59.9%를 차지할 예정임.
- 금융성 기금은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내이나 다른 두 유형의 기금과 달리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 기금은 2015년 대비 2017년(계획) 비중이 축소한 모습을 보이는데, 운용 규모상 비중은 2016년 감소하다 2017년(계획)상 증가하는 모습이나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 규모상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Ⅰ－61〉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

구 분	기금 운용			기금 조성			
	'15 (실적)	'16 (실적)	'17 (계획)	'15말 (누계)	'16말 (누계)	'17계획 (당년)	'17계획 (누계)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46.8	41.2	43.8	56.2	56.3	55.9	56.3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52.1	54.2	52.6	58.5	59.0	72.5	59.9
▪ 금융성 기금	7.8	8.5	8.8	1.5	1.6	2.5	1.6
▪ 사업성 기금	40.1	37.2	38.6	40.0	39.4	25.0	38.5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5〉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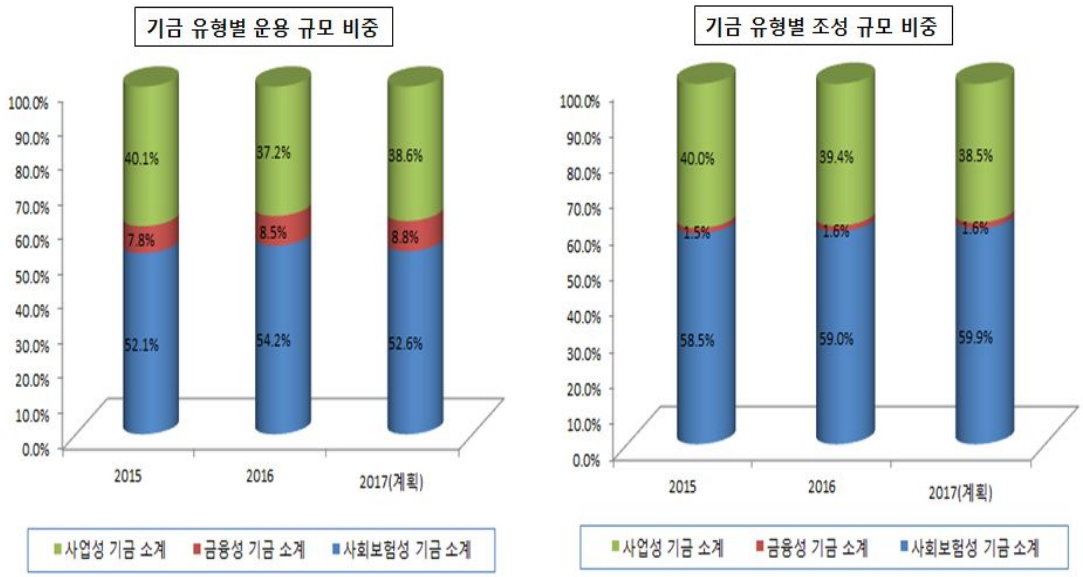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자산규모 및 2016년 결산 기준 자산 구성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Ⅰ-62>와 같음.

〈표 Ⅰ－6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5말 (실적)	'16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017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14,857,442	16,154,670	9,773,138	5,612,889	167,499	600,84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7,657,024	8,335,212	7,752,589	157,492	111,256	313,874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59,089	176,520	65,189	100	57,059	54,172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5,130,968	5,591,450	5,584,627	-	-	6,8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63,490	174,092	139,229	-	2,982	31,881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5,453,547	5,942,062	5,789,045	100	60,041	92,876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34,038	33,508	25,432	1,950	1,266	4,860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39,055	43,002	30,222	-	1,213	11,567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7,105	7,468	7,395	-	-	73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3,027	82,567	63,289	4,550	2,781	11,947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65,556	70,154	25,239	-	-	44,915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57,229	64,591	50,114	5,261	-	9,216
	금융성 기금 소계			286,010	301,290	201,691	11,761	5,260	82,578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852	857	857	-	-	-
	국민체육진흥기금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22,612	22,771	2,951	2,000	3,418	14,402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5,397	7,711	7,711	-	-	-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5말 (실적)	'16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548	1,681	1,133	400	-	148
	국제질병퇴치기금 * 2017년 신설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	-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4,245	4,496	3,722	-	535	239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36,644	32,573	2,300	-	582	29,691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41,285	40,754	34,568	-	3,017	3,169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551	1,772	1,772	-	-	-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97,577	110,938	56,365	15,116	29,681	9,776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41,758	46,182	1,230	-	-	44,952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5,799	5,524	951	-	4,538	35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51,340	57,215	18,793	8,500	-	29,922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5,797	6,256	4,628	1,000	369	259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14,001	14,009	13,795	-	182	32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628	375	322	-	-	53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465	31,990	31,946	-	-	44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234	176	99	-	53	24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6,274	6,484	4,091	800	1,492	101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	250	250	-	-	-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5말 (실적)	'16말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9,330	9,993	9,922	-	-	70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1,002	37,833	14,070	21,600	-	2,163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2,653	4,625	2,818	1,500	-	307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1,362,208	1,488,701	1,392,394	94,715	-	1,59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	159,231	158,679	155,150	-	2,088	1,441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35	15	15	-	-	-
	사업성 기금 소계			1,917,467	2,091,859	1,761,853	145,631	45,955	138,420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정부내부거래는 타회계 및 타기금 예탁금을 합산한 금액
3. 기타 자산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
4.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 2015년 대비 2016년 자산 규모는 67개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67개 전체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8.7%이고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8.9%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유형별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3개 유형 모두 전년대비 규모가 커짐.

- 기금 유형별 자산 규모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사업성 기금이 9.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사회보험성 기금이 9.0%로 나타났으며 금융성 기금은 5.3%임.

○ 기금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67개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동일하나 구성항목별 비중은 큰 차이를 보임[145].

145)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융자 등으로 구성됨

- 67개 기금의 자산 중 금융자산은 60.5%, 정부내부거래가 34.7%, 부동산이 1.0%, 기타 항목이 7.7%를 차지함[146].
-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은 금융자산이 93.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3.8%, 나머지 정부내부거래와 부동산은 각각 1.9%, 1.3%를 차지함.

〈그림 Ⅰ-6〉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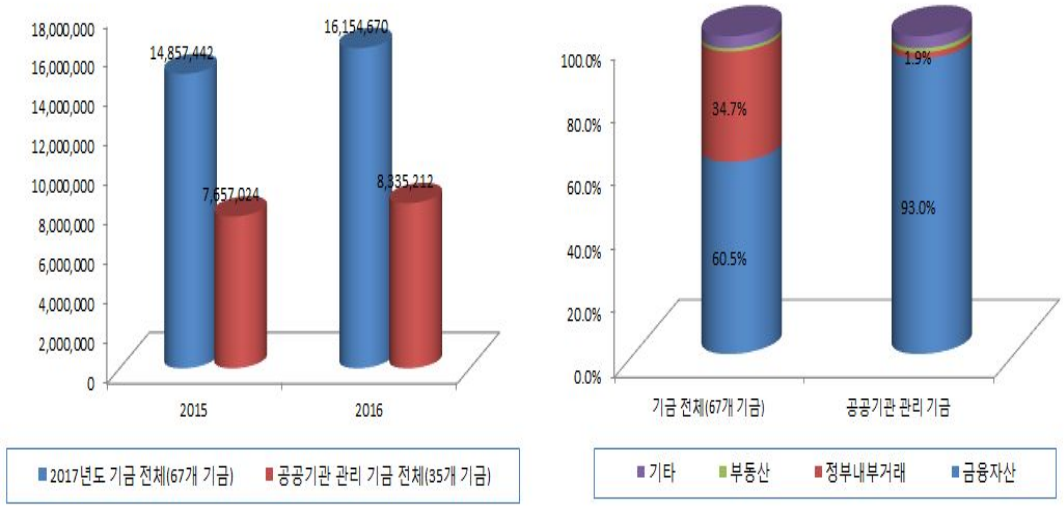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 2015년 대비 2016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Ⅰ-63>).

○ 67개 전체 기금의 자산 중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1.5%에서 2016년 51.6%로 증가함.

○ 2015년과 2016년 자산 중 각 기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사회보험성 기금 71.2%→71.3%, 사업성 기금 25.0%→25.1%)한 반면, 금융성 기금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한 모습(3.7%→3.6%)이나 증감 규모가 미미한 수준임.

146) 정부내부거래는 타 회계나 타 기금 예탁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항목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을 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비중 분포상 차이를 보임.

○ 사회보험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97.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1.6%, 부동산이 1.0%를 차지함.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정부 내부거래가 0%임.

○ 금융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66.9%를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27.4%를 차지함.

- 다른 기금 유형은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나 금융성 기금은 27.4%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외 정부내부거래가 3.9%, 부동산이 1.7%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도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84.2%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다른 기금 유형에 비해 타 회계나 타 기금의 예탁 등 정부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7.0%)이 다소 높음.
- 이외 기타 항목이 6.6%, 부동산이 2.2%를 차지함.

〈표 Ⅰ－6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 비중(기금 자산 규모)

(단위: %)

구 분	자산 규모 비중		'16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15말 (실적)	'16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1.5	51.6	79.3	2.8	66.4	52.2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71.2	71.3	74.7	0.1	54.0	29.6
▪ 금융성 기금	3.7	3.6	2.6	7.5	4.7	26.3
▪ 사업성 기금	25.0	25.1	22.7	92.5	41.3	44.1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	-	97.4	0.0	1.0	1.6
▪ 금융성 기금	-	-	66.9	3.9	1.7	27.4
▪ 사업성 기금	-	-	84.2	7.0	2.2	6.6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은 67개 기금 대비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비중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은 당해연도 자산 규모에서 각 기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도 자산 내역별 소계에서 각 기금 유형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은 2016년 각 유형별 자산규모 중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그림 Ⅰ-7〉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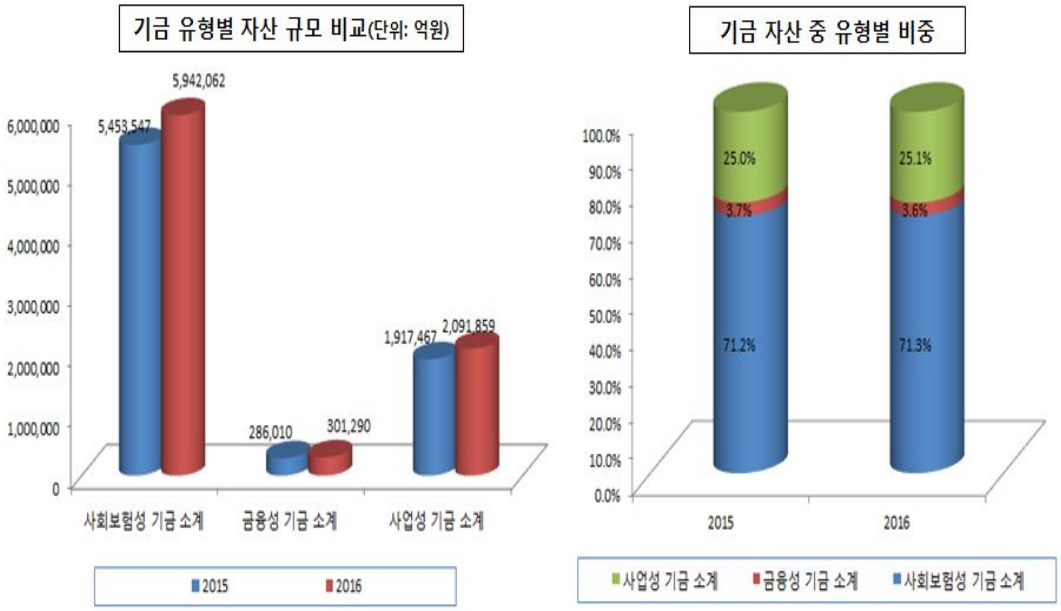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

7) 상장 공공기관 현황[147]

□ 공공기관 중에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60개)이 있으며, 그 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이 있음.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147)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5) 및 『상장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박한준・허경선(2014)』을 참고하여 작성

○ 2017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중 강원랜드(주),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되며,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Ⅰ-64>와 같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2017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148]
- 주무부처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나머지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 2016년 정부는『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2016.6월)을 통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149].

- 정부의『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2016.12월)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발전 5사를 2019년까지 우선 상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DN(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기관은 2020년까지 상장을 추진할 예정임.[150]

148) 기획재정부,『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2017.1.25.)』보도자료
149) 기획재정부,『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2016.6.14.)』보도자료
150) 기획재정부,『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본격 추진(2016.12.8.)』보도자료

〈표 Ⅰ-64〉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2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1,449	177,837,042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3 (한국가스공사법)	1999.12.15.	3,783	39,927,836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시장형)	198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1,737	5,133,805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준시장형)	1975 (상법 제317조)	2009.12.24.	2,395	786,596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준시장형)	1984 (상법 제317조)	2007.12.24.	5,718	1,092,469
강원랜드(주)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준시장형)	1998 (상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604	3,978,98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공공기관	2005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762	730,177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2,220	256,851,38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및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주: 임직원 총계와 총자산은 2016년 결산 기준

□ 상장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강원랜드(주)를 제외한 7개 상장 공공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지분율이 40% 이상을 차지함.

○ 강원랜드(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36.27%를 차지함.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64%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4개 기관은 정부 지분 없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외국인・기타주주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음.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각각 66.32%, 52.48%를 차지함.

〈표 Ⅰ-65〉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기관명	정부	공공기관		기타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32.9 6.5	외국인 기타	30.74 11.66
한국가스공사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자체 우리사주조합 외국인 일반 주주 등	7.93 4.43 11.81 29.21
한국지역난방공사	34.55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9.55 10.53	서울시 우리사주조합 일반	10.36 3.49 21.5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65.77 2.07	기타	32.16
한전KPS(주)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51.00 7.07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41.68 0.25
강원랜드(주)	-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자사주 지자체 기타	5.86 5.24 8.88 43.7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한국관광공사	51.00	기타주주	49.00
중소기업은행	50.90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8.7 2.3	기타주주	38.1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6)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 중 납입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납입자본금이 약 3조 2,897억 원이고, 납입자본금이 가장 적은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주)로 납입자본금이 약 76억 원임.

○ 납입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며 한국가스공사와 강원랜드(주)는 납입자본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함.

- 반면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0억 원 이하)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가 있음.

○ 상장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2015년과 2016년의 납입자본금 규모가 동일함.

- 중소기업은행은 보통주 3,576,857주를 2016년 3월 30일에 유상증자하여 납입자본금이 2015년 약 3조 2,718억원에서 2016년에 3조 2,897억원으로 증가함.

〈표 Ⅰ-66〉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단위: 백만원, 주)

기관명	납입자본금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	발행한 주식
한국전력공사	3,209,820	1,200,000,000	641,964,077
한국가스공사	461,565	200,000,000	92,313,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894	40,000,000	11,578,744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7,644	300,000,000	38,220,000
한전KPS(주)	9,000	300,000,000	45,000,000
강원랜드(주)	106,970	1,000,000,000	213,940,5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928	120,000,000	61,855,670
중소기업은행	3,289,756	2,000,000,000	657,951,13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6)를 참고하여 작성

□ 배당과 관련하여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상승한 기관은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임.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중소기업은행은 현금배당수익률이 2014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기술(주)은 현금배당수익률이 2014년부터 3년간 꾸준히 감소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현금배당수익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주당순손실이 발생함.

○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기관은 상이한 추세를 보임.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당순이익은 증가하였으나 현금배당수익률은 하향함.
- 반대로 중소기업은행은 주당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현금배당수익률은 상승함.

○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배당금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을 실현하지 못함[151].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부배당금은 2016년 145억원에서 2017년 15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행도 2015년 1,491억원에서 2016년 1,608억원으로 증가함.
-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에 정부배당금으로 4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에는 정부배당금을 실현하지 못함.

151)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17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2017.5.19.)』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67〉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4~2016년)

기관명	구분	'14	'15	'16
한국전력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686,873	13,289,127	7,048,581
	주당순이익(원)	4,290	20,701	10,98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20,982	1,990,089	1,271,089
	(연결)현금배당성향(%)	11.50	19.60	18.00
	현금배당수익률(%)	1.10	6.20	4.30
	주당현금배당금(원)	500	3,100	1,980
한국가스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47,223	319,190	△673,558
	주당순이익(원)	5,091	3,594	△7,74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1,909	14,898	-
	(연결)현금배당성향(%)	4.90	4.67	-
	현금배당수익률(%)	0.50	0.45	-
	주당현금배당금(원)	250	170	-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0,686	115,819	126,707
	주당순이익(원)	6,105	10,003	10,94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4,431	41,915	43,999
	(연결)현금배당성향(%)	34.60	36.20	34.70
	현금배당수익률(%)	3.50	5.90	5.30
	주당현금배당금(원)	2,110	3,620	3,80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54,759	31,047	17,796
	주당순이익(원)	1,439	816	46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1,875	7,609	4,185
	(연결)현금배당성향(%)	40.00	24.50	23.50
	현금배당수익률(%)	1.10	0.57	0.46
	주당현금배당금(원)	575	200	575

기관명	구분	'14	'15	'16
한전KPS(주)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8,296	169,935	88,283
	주당순이익(원)	3,740	3,776	1,96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75,150	76,050	30,600
	(연결)현금배당성향(%)	44.70	44.80	34.70
	현금배당수익률(%)	2.10	1.90	1.20
	주당현금배당금(원)	1,670	1,690	1,670
강원랜드(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41,629	441,629	454,534
	주당순이익(원)	1,772	2,178	2,24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72,328	198,684	200,712
	(연결)현금배당성향(%)	47.96	44.99	44.16
	현금배당수익률(%)	2.70	2.40	2.70
	주당현금배당금(원)	850	980	99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6,514	91,732	114,342
	주당순이익(원)	1,884	1,483	1,84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61,979	51,402	61,856
	(연결)현금배당성향(%)	53.20	56.00	54.10
	현금배당수익률(%)	3.00	3.30	4.70
	주당현금배당금(원)	1,002	831	1,000
중소기업은행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026,598	1,142,983	1,157,536
	주당순이익(원)	1,539	1,672	1,64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80,012	294,469	315,817
	(연결)현금배당성향(%)	27.27	25.76	27.28
	현금배당수익률(%)	2.80	3.40	3.60
	주당현금배당금(원)	430(430)	450(450)	480(48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6)를 참고하여 작성
주: ( ) 안은 우선주를 의미

〈그림 Ⅰ－8〉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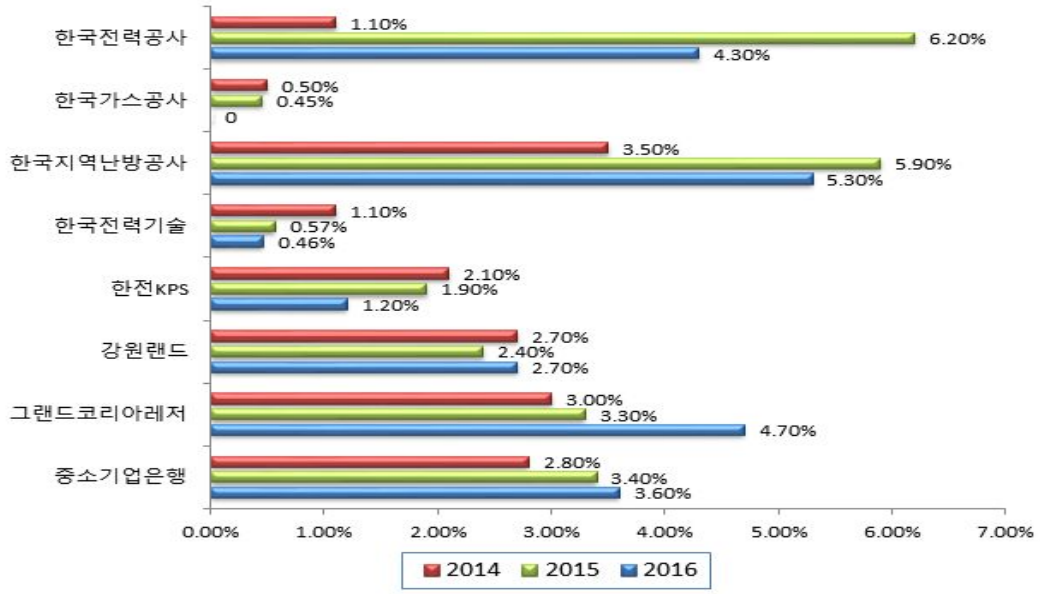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6)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9〉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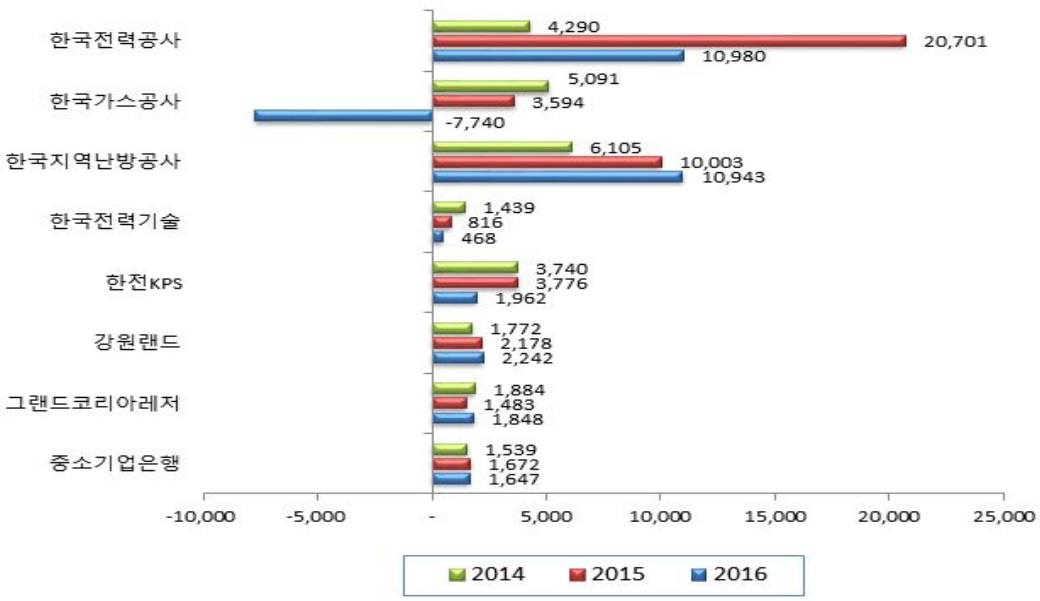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6)를 참고하여 작성

□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년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임.

-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전년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액도 30%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함.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강원랜드(주),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2013년부터 매출액이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다만, 4개 기관 중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강원랜드(주), 중소기업은행은 3년간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의 변화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강원랜드(주), 중소기업은행은 매출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총포괄손익의 경우 2015년 증가했다 2016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출액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총포괄손익은 꾸준히 증가함.

〈표 Ⅰ-6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4~2016년)

(단위: 백만원)

기관명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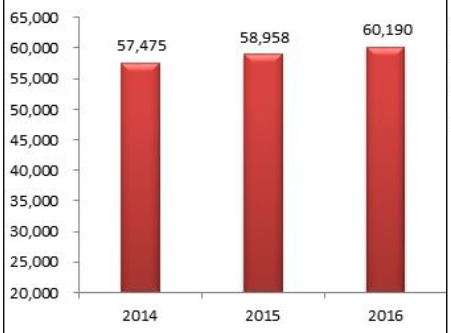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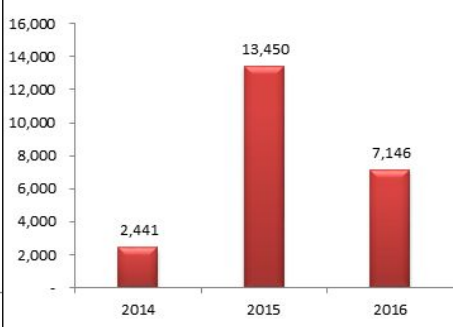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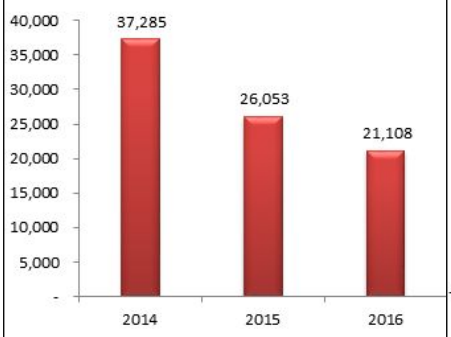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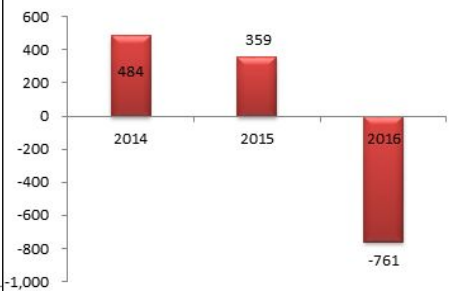
한국지역난방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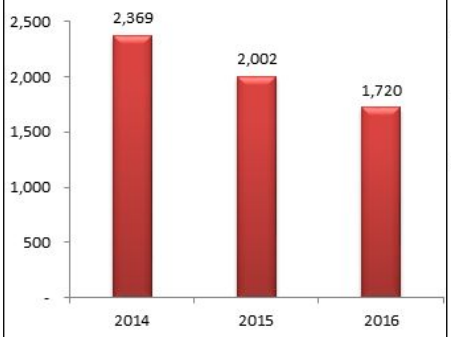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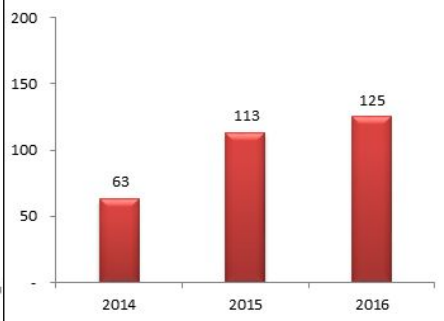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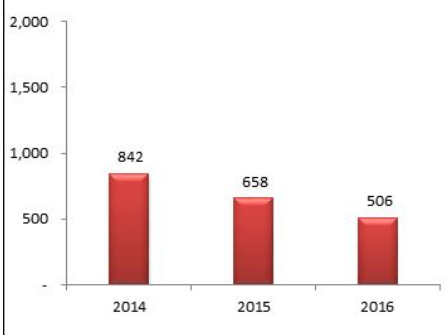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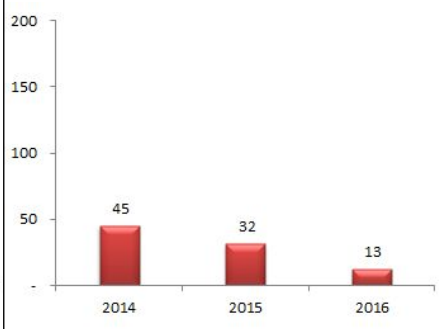

기관명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전KPS(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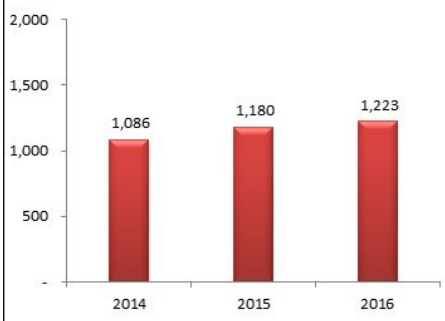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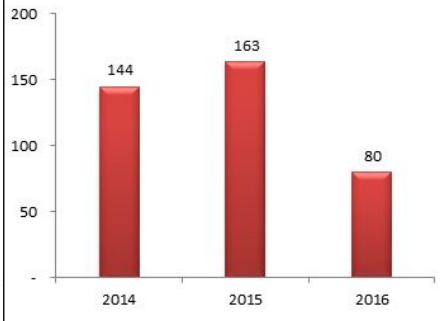
강원랜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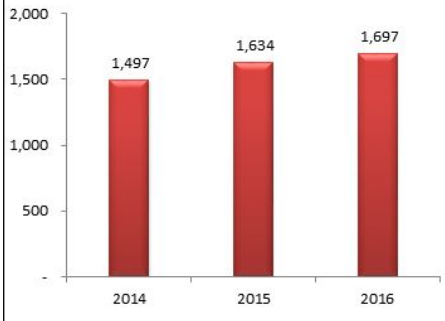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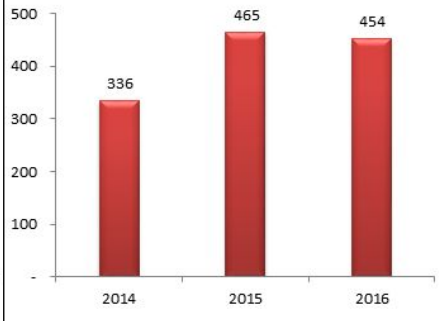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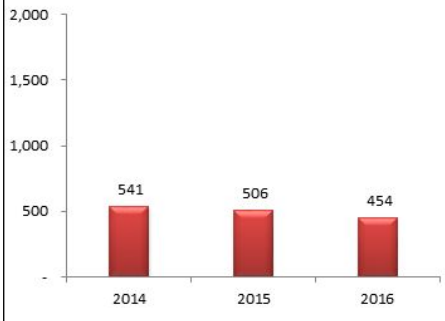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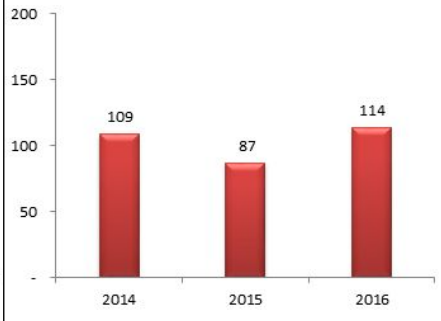
중소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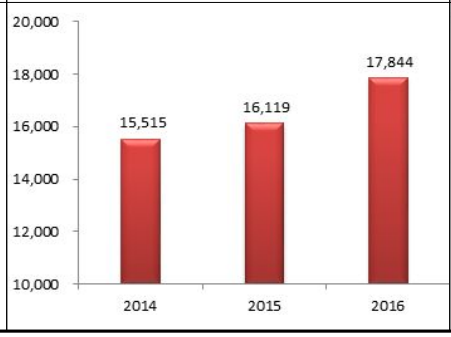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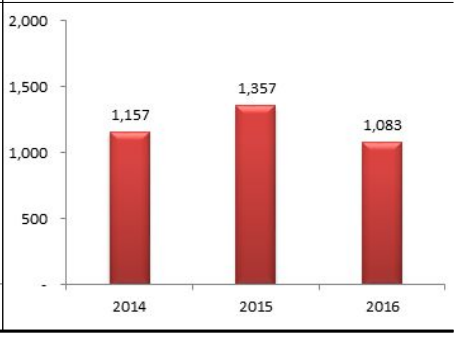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6)를 활용.

〈표 Ⅰ－69〉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4~2016년)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14	'15	'16	전년대비 증감율(%)	
					'15	'16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57,474,883	58,957,722	60,190,384	2.6	2.1
	영업이익	5,787,565	11,346,732	12,001,599	96.1	5.8
	당기순이익	2,798,967	13,416,373	7,148,327	379.3	△46.7
	지배지분순이익	2,686,873	13,289,127	7,048,581	394.6	△47.0
	총포괄손익	2,441,246	13,450,379	7,146,025	451.0	△46.9
한국가스공사	매출액	37,284,867	26,052,724	21,108,116	△30.1	△19.0
	영업이익	1,071,906	1,007,812	917,634	△6.0	△8.9
	당기순이익	447,223	319,190	△673,558	△28.6	△311.0
	지배지분순이익	447,222	319,190	△674,085	△28.6	△311.2
	총포괄손익	484,489	358,688	△760,641	△26.0	△312.1
한국지역난방공사	매출액	2,369,115	2,001,946	1,719,867	△15.5	△14.1
	영업이익	85,558	209,936	161,656	145.4	△23.0
	당기순이익	66,302	115,819	126,707	74.7	9.4
	총포괄손익	63,125	112,954	125,264	78.9	10.9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매출액	841,917	657,603	506,102	△21.9	△23.0
	영업이익	66,552	34,687	5,946	△47.9	△82.9
	당기순이익	54,759	31,047	17,796	△43.3	△42.7
	총포괄손익	45,274	31,530	12,743	△30.4	△59.6
한전KPS(주)	매출액	1,085,531	1,179,715	1,223,106	8.7	3.7
	영업이익	215,806	175,177	105,762	△18.8	△39.6
	당기순이익	168,296	169,935	88,283	1.0	△48.0
	지배지분순이익	168,296	169,935	88,283	1.0	△48.0
	총포괄손익	144,356	163,392	79,553	13.2	△51.3
강원랜드(주)	매출액	1,496,541	1,633,717	1,696,533	9.2	3.8
	영업이익	513,172	595,400	618,616	16.0	3.9
	당기순이익	359,349	441,629	454,534	22.9	2.9
	지배지분순이익	359,364	441,645	453,712	22.9	2.7
	총포괄손익	335,660	464,726	453,657	38.5	△2.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매출액	540,680	505,663	548,230	△6.5	8.4
	영업이익	147,762	118,378	151,183	△19.9	27.7
	당기순이익	116,513	91,732	114,343	△21.3	24.6
	총포괄손익	108,803	86,807	113,889	△20.2	31.2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15,514,841	16,119,479	17,844,349	3.9	10.7
	영업이익	1,388,331	1,499,652	1,532,591	8.0	2.2
	당기순이익	1,032,005	1,150,568	1,164,601	11.5	1.2
	지배지분순이익	1,026,598	1,142,983	1,157,536	11.3	1.3
	총포괄손익	1,156,622	1,357,039	1,083,342	17.3	△20.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6)를 활용

□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표 Ⅰ-70>과 같음.

〈표 Ⅰ-70〉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4~2016년)

(단위: %,%p)

기관명	지표		'14	'15	'16	증감률(%p)	
						'15	'16
한국 전력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3	7.1	1.5	1.8	△5.6
		유형자산증가율	4.8	4.1	3.1	△0.7	△1
		영업이익증가율	281	96.1	5.8	△184.9	△90.3
		순이익증가율	1,505.8	379.3	△46.7	△1126.5	△426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10.1	19.2	19.9	9.1	0.7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8.91	22.76	11.9	13.85	△10.86
		총자산순이익률	1.8	7.9	4.0	6.1	△3.9
		자기자본순이익률	5.2	22.1	10.2	16.9	△11.9
	안정성	유동비율	77.9	97	79.7	19.1	△17.3
		부채비율	198.60	157.95	143.40	△40.65	△14.55
		자기자본비율	33.5	38.8	41.1	5.3	2.3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246.11	569.92	684.68	323.81	114.76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18,748,069	34,268,709	27,125,750	-	-
		부가가치율	32.6	58.1	45.1	25.5	△13
		노동소득분배율	20.7	13.5	19.2	△7.2	5.7
		총자본투자효율	11.7	20.2	15.4	8.5	△4.8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00.94	86.78	82.4	△14.16	△4.38
		총자본회전율	0.4	0.3	0.3	△0.1	0
한국 가스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7.11	△9.38	△5.8	△16.49	3.58
		유형자산증가율	11.46	5.69	△1.56	△5.77	△7.25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2.04	△30.13	△18.98	△28.09	11.15
		순이익증가율	319.62	△28.63	△311.02	△348.25	△282.39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2.87	3.87	4.35	1	0.48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2	1.23	△3.19	0.03	△4.42
		총자본순이익률	0.2	0.1	△2.2	△0.1	△2.3
		지배지분순이익률	1.1	0.6	△10.2	△0.5	△10.8

기관명	지표		’14	’15	’16	증감률(%p)	
						’15	’16
한국 가스공사	안정성	유동비율	138	174.1	143.8	36.1	△30.3
		부채비율	403.20	357.10	380.00	△46.1	22.9
		자기자본비율	19.9	21.9	20.8	2	△1.1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93	101.2	94.5	8.2	△6.7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2,391,226	2,377,315	1,559,377	-	-
		부가가치율	6.5	9.3	7.7	2.8	△1.6
		노동소득분배율	11	12.3	21	1.3	8.7
		총자본투자효율	5.5	5.6	4	0.1	△1.6
		설비투자효율	14.5	13.5	8.7	△1	△4.8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383.42	259.05	224.88	△124.37	△34.17
		총자본회전율	0.82	0.6	0.52	△0.22	△0.08
한국 지역난방 공사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0.9	△15.5	△14.1	△4.6	1.4
		영업이익증가율	△59.9	145.2	△23	205.1	△168.2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8	5.79	7.37	2.99	1.58
	안정성	부채비율	190.34	181.35	184.40	△8.99	3.05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45.07	116.28	95.28	△28.79	△21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수익성	영업이익률	7.9	5.3	1.2	△2.6	△4.1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6.5	4.72	3.52	△1.78	△1.2
	안정성	부채비율	91.00	105.18	86.54	14.18	△18.64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206.79	157.78	119.93	△49.01	△37.85
한전 KPS(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0	11.7	5.7	1.7	△6
		자기자본증가율	12.2	12.6	0.5	0.4	△12.1
		매출액 증가율	△3.6	8.7	3.7	12.3	△5
		순이익 증가율	10.7	1	△48.0	△9.7	△49
	수익성	영업이익률	19.9	14.8	8.6	△5.1	△6.2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5.5	14.4	7.2	△1.1	△7.2
		총자산순이익률	19.1	17.3	8.3	△1.8	△9
		자기자본이익률	25.5	22.9	11.2	△2.6	△11.7

기관명	지표		'14	'15	'16	증감률(%p)	
						'15	'16
한전 KPS(주)	안정성	유동비율	254.8	281.9	211.4	27.1	△70.5
		부채비율	32.60	31.45	38.30	△1.15	6.85
		당좌비율	253.8	281	210.8	27.2	△70.2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55.52	150.04	154.87	△5.48	4.83
		총자산회전율	1.2	1.2	1.2	0	0
		매출채권회전율	9.1	10.4	9.5	1.3	△0.9
강원랜드(주)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9.9	9.2	3.8	△0.7	△5.4
		영업이익증가율	32.2	16	3.9	△16.2	△12.1
		당기순이익증가율	20.8	22.9	2.9	2.1	△20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24.01	27.03	26.79	3.02	△0.24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4	27	26.8	3	△0.2
		자기자본순이익률	13.8	15.5	14	1.7	△1.5
	안정성	유동비율	219.7	263.4	251.7	43.7	△11.7
		부채비율	24.76	23.12	22.30	△1.64	△0.82
		자기자본비율	80.2	81.2	81.7	1	0.5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55.32	54.5	52.16	△0.82	△2.34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1.55	18.14	20.86	△3.41	2.72
		영업이익률	27.3	23.4	27.6	△3.9	4.2
	안정성	부채비율	50.91	42.59	40.77	△8.32	△1.82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25.33	110.84	105.69	△14.49	△5.15
중소기업 은행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6.65	7.14	6.53	0.49	△0.61
		총자산순이익률	0.45	0.47	0.44	0.02	△0.03
		자기자본이익률	6.26	6.24	5.92	△0.02	△0.32
	안정성	부채비율	1,304.56	1,286.87	1,323.20	△17.69	36.33
		BIS비율	12.50	12.51	13.12	0.01	0.6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9.16	93.21	98.87	△5.95	5.6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7.5.1.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결산서(2016), 사업 보고서(2016), IR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주: 기업의 활동성 지표 중 자기자본회전율은 알리오 공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의 결산서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알리오시스템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회전율 = (순매출액/자본총계)*100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기관 결산서[152]를 통해 주요 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변동 원인 및 추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도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외 이익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증가율이 감소함.

- 판매량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이 감가상가비, 수선비 등 영업비용보다 크게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한전 서울 구사옥 매각이익 감소로 영업외 수익이 더 크게 감소함.

○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이후에 유가하락에 의한 단가하락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해외 자원개발 자산 손상인식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성장성 지표를 보면, 2014년까지는 유형자산 및 총자산이 증가추세였으나, 유가하락 등으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총자산과 유형자산이 모두 감소함.
- 안정성 지표의 경우, LNG 재고량 감소 및 단가하락에 의한 재고자산 감소등으로 2016년 유동비율이 다소 하락하였고,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부채비율은 다소 높아짐.
- 생산성 지표는 2016년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액 감소로 인해 2015년 대비 생산성 지표가 다소 하락함.

나. 인력현황[153]

1) 임직원 수 현황

□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154]는 29만 9천여 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 약 62만 9천여 명의 47.6%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16년도 행정공무원 정원 대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7.6%로 전년대비 약 1.6%p 증가함.

---

152) 한국전력공사『결산서(2016)』(2017.3월), 한국가스공사『결산서(2016)』(2017.3월) 참고

153)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보도자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전환(2016.2.18.)』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을 참조

154) 공공기관 임직원 수 정원은 상임임원 정원과 정규직 정원을 합산하여 산출함.

○ 2016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전년에 비해 11,643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5년 약 2.9%에 비해 다소 높아진 4.0%로 나타남.

〈표 Ⅰ-7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단위: 천명, %, %p)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공공기관(a)	263.8	272.5	280.0	288.0	299.6	11.6	4.0
· 국가행정공무원(b)	615	615	622	626	629	3	0.5
· 비중(a/b)	42.9	44.3	45.0	46.0	47.6	1.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 임직원 현황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조하여 작성

주: 1. 직제상 정원 기준
2. *는 %p단위임

〈그림 Ⅰ-1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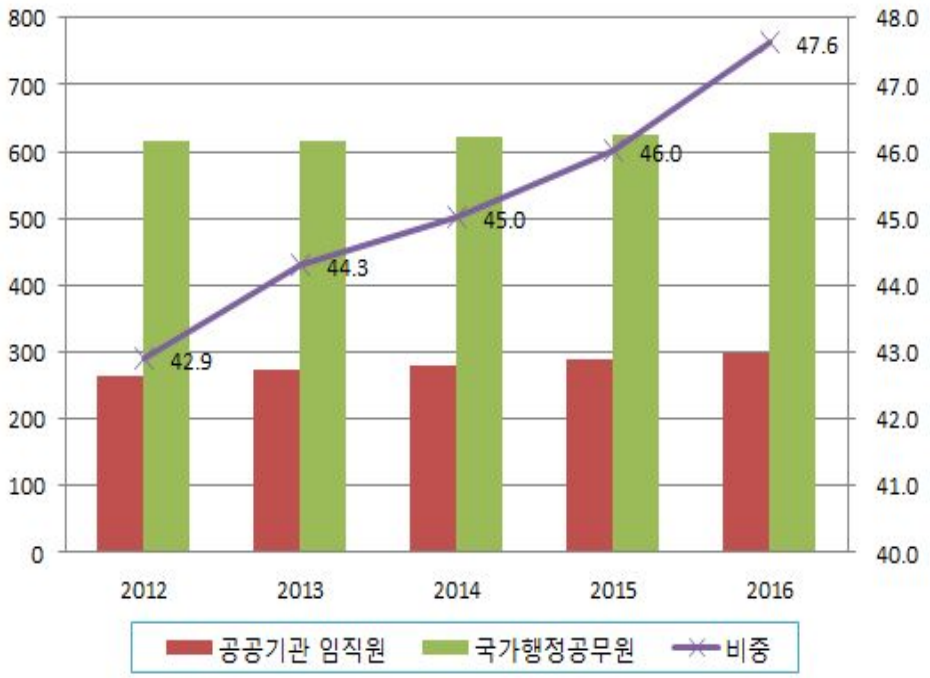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최근 5년간 대부분 유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함.

○ 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형은 2016년에 임직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2016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원은 전년대비 3,023명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4.5%)을 보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6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79명), 한국국토정보공사(140명) 등 기관의 인력이 크게 증원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의 정원은 전년대비 1,332명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증가율(2.1%)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의 정원은 최근 5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으며, 현원도 2015년까지는 매년 감소하다가 2016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7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63,794 (256,889)	272,539 (263,323)	279,950 (267,928)	287,966 (274,201)	299,609 (285,385)	11,643 (11,184)	4.0 (4.1)
• 공기업	108,287 (108,551)	111,110 (109,690)	113,679 (110,114)	115,695 (111,197)	119,570 (114,973)	3,875 (3,776)	3.3 (3.4)
・시장형	47,736 (47,477)	49,742 (48,961)	52,069 (50,165)	53,315 (51,736)	55,858 (54,076)	2,543 (2,340)	4.8 (4.5)
・준시장형	60,551 (61,074)	61,368 (60,729)	61,610 (59,950)	62,380 (59,461)	63,712 (60,897)	1,332 (1,436)	2.1 (2.4)
• 준정부기관	72,566 (70,964)	74,776 (72,589)	77,479 (75,022)	79,341 (76,638)	82,973 (80,118)	3,632 (3,480)	4.6 (4.5)
・위탁집행형	53,994 (53,109)	55,528 (53,995)	57,542 (55,812)	59,090 (57,140)	62,113 (59,993)	3,023 (2,853)	5.1 (5.0)
・기금관리형	18,572 (17,854)	19,248 (18,594)	19,937 (19,209)	20,251 (19,498)	20,860 (20,125)	609 (627)	3.0 (3.2)
• 기타공공기관	82,941 (77,375)	86,653 (81,044)	88,792 (82,792)	92,930 (86,367)	97,066 (90,293)	4,136 (3,926)	4.5 (4.5)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 임직원 현황 참조

주: 1. 괄호 안 수치는 현원 기준

2. 현원의 경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2016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79,851명(41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59,897명(23개 기관), 교육부 31,377명(24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역시 소관 기관들의 정원 규모가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3,449명 증원), 다음으로 보건복지부(1,619명 증원), 교육부(1,396명) 순임.

〈표 Ⅰ－73〉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수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376	2,457	2,529	2,632	2,828	196	7.4
교육부	24	25,479	27,054	28,285	29,981	31,377	1,396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7,140	17,900	18,713	19,368	20,193	825	4.3
외교부	3	427	458	461	479	490	11	2.3
통일부	2	69	69	70	72	73	1	1.4
법무부	4	904	954	1,009	1,034	1,066	32	3.1
국방부	3	280	288	292	328	336	8	2.4
행정안전부	3	807	873	925	952	1,115	163	17.1
문화체육관광부	33	4,961	5,141	5,219	5,406	5,647	241	4.5
농림축산식품부	10	7,202	7,269	7,311	7,343	7,410	67	0.9
산업통상자원부	41	68,732	71,387	74,267	76,402	79,851	3,449	4.5
보건복지부	25	27,023	27,616	28,760	29,322	30,941	1,619	5.5
환경부	8	3,677	3,995	4,085	4,187	4,476	289	6.9
고용노동부	12	11,026	11,301	11,602	11,802	12,333	531	4.5
여성가족부	5	301	388	389	537	562	25	4.7
국토교통부	23	58,442	59,107	58,276	58,645	59,897	1,252	2.1
해양수산부	19	2,858	2,997	3,101	3,415	3,538	123	3.6
중소벤처기업부	9	2,258	2,322	2,809	2,941	3,086	145	4.9
국무조정실	27	2,951	2,953	3,050	3,167	3,291	124	3.9
방송통신위원회	2	286	286	286	391	420	29	7.4
원자력안전위원회	3	532	545	558	610	673	63	10.3
금융위원회	7	14,759	15,672	15,962	16,596	17,033	437	2.6
공정거래위원회	2	327	352	368	386	410	24	6.2
국가보훈처	3	3,730	3,755	3,985	4,044	4,100	56	1.4
인사혁신처	1	510	519	524	524	543	19	3.6
식품의약품안전처	5	185	191	265	321	350	29	9.0
관세청	1	50	50	50	50	50	0	0
방위사업청	2	3,027	3,031	3,121	3,193	3,340	147	4.6
경찰청	1	1,797	1,819	1,853	1,861	1,911	50	2.7
소방청	1	156	165	177	192	204	12	6.3
문화재청	1	250	250	250	251	251	0	0
산림청	2	72	80	80	86	279	193	224.4
농촌진흥청	1	161	171	177	177	180	3	1.7
특허청	6	786	871	868	998	1,081	83	8.3
기상청	3	253	253	273	273	274	1	0.4
합 계	355	263,794	272,539	279,950	287,966	299,609	11,643	4.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2. 2017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2개 공공기관(2017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신규채용 21,016명(9.7%), 비정규직 5,282명 감소(△12.6%)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1,6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신규채용 규모는 21,016명으로 2015년 대비 1,855명(9.7%) 증가함.

○ 비정규직 수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노력 등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특히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별도 정원이 늘어나 2015년 대비 정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31개 기관(신규 출범 기관 제외)에서 전년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14개 기관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임직원 수가 감소함.

○ 전년대비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31개 기관으로 총 6,708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16년 정규 인력 증원 규모(11,643명)의 약 57.6%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대비 752명의 인력을 증원받아 2016년 말 임직원 수가 21,445명으로 증가함.
-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74명의 증원이 이루어짐.

○ 반면, 전년대비 인력이 감소한 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총 210명이 감소함.

-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전년대비 74명이 감소하여 임직원 정원이 6,026명으로 나타남.
- 또한 코레일관광개발(주)은 전년대비 38명이 감소하여 2016년 임직원 수 정원이 984명임.

〈표 Ⅰ－74〉 2016년 전년대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752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30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74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24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6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2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28	한전KDN(주)	준시장형 공기업	120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460	대한적십자사	기타공공기관	119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252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9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14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2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213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7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205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10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설기관[2)]	179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04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7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4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4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2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6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101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53	국방과학연구소	기타공공기관	101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42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00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6년 인력증원 규모는 2015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6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임.

〈표 Ⅰ－75〉 2016년 전년대비 인력이 감원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4	한국문화정보원	기타공공기관	6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38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3	국립광주과학관	기타공공기관	3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27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타공공기관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부설기관[2)]	8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6	코레일유통(주)	기타공공기관	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6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임직원수』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6년 인력감원 규모는 2015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6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임.

2) 신규채용 현황

□ 2016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5년도 대비 1,855명 증가한 21,016명임.

○ 연도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4.9%에서 2014년 1.5%로 3.4%p하락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가,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8.0%,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21.5%(전년대비 835명 증가)로 가장 높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3.3%(전년대비 66명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 수준임.

〈표 Ⅰ－76〉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6,662	17,483	17,744	19,161	21,016	1,855	9.7
공기업	4,792	4,800	4,793	5,201	5,633	431	8.3
· 시장형	2,713	3,126	2,912	3,202	3,567	366	11.4
· 준시장형	2,079	1,674	1,881	2,000	2,065	66	3.3
준정부기관	3,955	4,036	5,073	4,903	5,878	975	19.9
· 위탁집행형	2,909	2,785	3,800	3,892	4,728	835	21.5
· 기금관리형	1,047	1,252	1,274	1,011	1,151	140	13.8
기타공공기관	7,915	8,647	7,877	9,056	9,506	449	5.0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신규 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주무부처별로 2016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4,856명으로 신규채용을 가장 많이 했으며 다음으로 교육부(4,532명), 보건복지부(2,707명)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862명), 국토교통부(774명), 보건복지부(718명) 순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이 크게 발생한 부처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년대비 인력 증원 규모가 큰 부처라는 점임.

〈표 Ⅰ－77〉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수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06	122	145	209	285	77	36.7
교육부	24	3,089	3,586	3,408	3,670	4,532	863	2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346	1,281	1,328	1,381	1,580	200	14.4
외교부	3	68	45	34	30	26	△4	△13.3
통일부	2	29	21	6	16	12	△4	△25.0
법무부	4	92	63	87	68	71	3	4.4
국방부	3	10	25	26	39	32	△7	△17.9
행정안전부	3	13	60	42	70	37	△33	△47.0
문화체육관광부	33	346	403	297	353	390	38	10.6
농림축산식품부	10	214	260	402	398	310	△88	△22.1
산업통상자원부	41	3,748	4,397	4,079	5,139	4,856	△283	△5.5
보건복지부	25	1,530	1,583	2,201	1,989	2,707	718	36.1
환경부	8	309	240	367	300	301	2	0.5
고용노동부	12	666	742	818	734	845	111	15.2
여성가족부	5	25	71	66	104	71	△33	△31.6
국토교통부	23	2,102	1,668	1,993	1,571	2,344	774	49.2
해양수산부	19	234	259	242	491	302	△189	△38.5
중소벤처기업부	9	93	158	156	217	242	25	11.4
국무조정실	27	350	250	334	328	297	△31	△9.5
방송통신위원회	2	32	10	5	55	54	△2	△2.7
원자력안전위원회	3	26	43	39	84	84	0	0.0
금융위원회	7	1114	1334	673	910	584	△326.3	△35.8
공정거래위원회	2	69	56	43	46	45	△1	△2.7
국가보훈처	3	301	271	476	367	314	△53	△14.3
인사혁신처	1	26	30	34	28	37	9	32.1
식품의약품안전처	5	65	37	46	82	53	△29	△35.4
관세청	1	2	2	5	10	3	△7	△70.0
방위사업청	2	123	224	205	177	150	△27	△15.3
경찰청	1	183	89	66	44	116	72	163.6
소방청	1	17	14	12	31	25	△6	△19.4
문화재청	1	15	20	28	13	7	△6	△46.2
산림청	2	28	20	7	14	127	113	803.6
농촌진흥청	1	23	13	15	12	20	8	66.7
특허청	6	88	40	37	140	132	△8	△5.7
기상청	3	81	47	25	44	26	△18	△40.9
합 계	355	16,663	17,484	17,747	19,165	21,017	1,852	9.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2. 2017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2개 공공기관(2017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 기관 단위로 2016년 신규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100명 이상 채용한 기관이 51개이며 상위 10개 기관의 총 신규채용 규모는 7,017명으로 전체 신규채용 21,016명의 약 33.4%를 차지함.

○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복지 분야 7개 기관, 에너지 분야 2개 기관, SOC 분야 1개 기관 포함되어 있음.

〈표 Ⅰ-78〉 2016년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한국전력공사	시장형공기업	1412.5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04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73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58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865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65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공기업	820.5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48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30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4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신규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의 신규채용이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전력공사는 신규변전소 운전 등으로 전년대비 신규채용 규모가 394명 증가한 1,413명을 채용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사업량 증가 등으로 2015년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360명 증가한 총 873명 채용함.

○ 경상대학교병원은 창원 분원 개원 등으로 865명을 채용하였으며 이는 2015년 신규채용 규모보다 690명 증가한 것으로 전체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신규채용 증가율(394.3%%)을 보임.

○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철도 신규 노선 확대 등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285명 증가한 604명을 채용함.

〈표 Ⅰ－79〉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6년 기준)

(단위: 명, %)

기관명	유형	'15 신규채용(A)	'16 신규채용(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75	865	690	394.3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019	1,413	394	38.6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13	873	361	70.3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319	604	285	89.3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	183	175	2,187.5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20	465	145	45.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설기관[1)]	120	265	145	120.8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6	153	138	873.0
국립암센터	기타공공기관	73	209	136	186.3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	140	130	1,300.0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87	214	127	146.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임.

□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열린 채용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영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과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임.

○ 2016년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10,981명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은 1,143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함.

○ 반면 장애인 채용은 전년대비 6명이 감소한 251명으로 전년대비 2.2% 하락함.

〈표 Ⅰ－80〉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단위: 명,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여성	6,864	7,387	7,259	7,699	8,792	1,093	14.2
· 장애인	272	295	265	256	251	△6	△2.2
· 비수도권 지역인재	7,748	8,625	8,849	9,778	10,981	1,203	12.3
· 이전지역 지역인재	415	525	762	1,020	1,143	123	12.1
· 고졸인력	2,024	2,059	1,759	1,763	1,942	179	10.1
· 청년	12,585	13,787	14,788	15,875	17,522	1,648	10.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고졸자 채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므로 위의 실적에 불포함

2. 증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그림 Ⅰ－11〉 최근 5년간 열린 채용 규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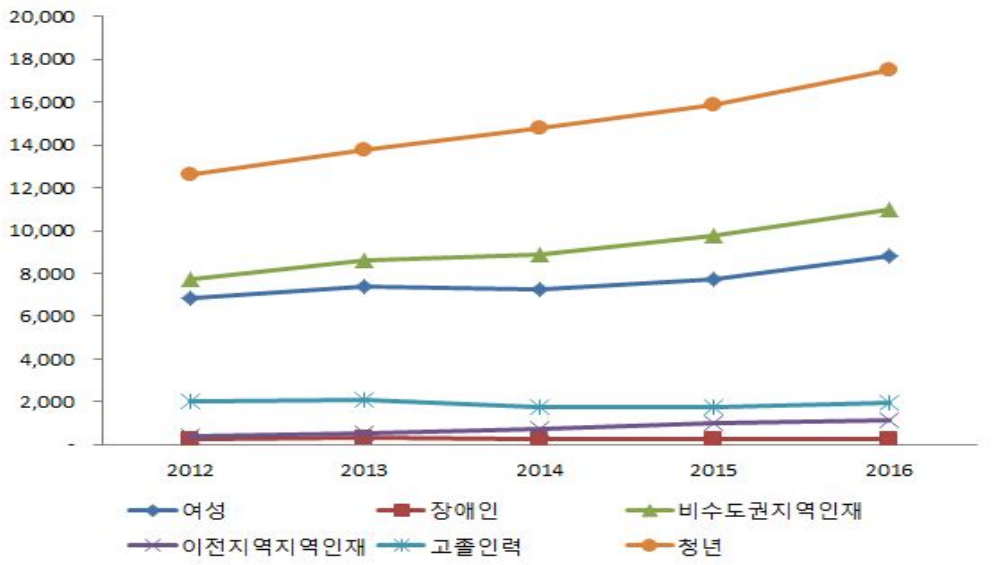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신규채용』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3)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특히 2016년 공공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282명 감소한 36,499명으로 역대 가장 큰 폭(12.6%)으로 감소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4,469명(12.6%)이 감소했고, 준정부기관은 1,382명(40.2%)이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정규직 수가 매년 감소(총 2,141명)해왔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569명(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8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기간제)

(단위: 명,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45,318	44,107	43,597	41,781	36,499	△5,282	△12.6
· 공기업	10,928	10,363	11,292	11,103	6,635	△4,469	△40.2
· 준정부기관	8,689	8,678	7,967	7,118	5,736	△1,382	△19.4
· 기타공공기관	25,701	25,066	24,339	23,560	24,129	569	2.4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에서 발췌

□ 2016년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28,910명으로 전년대비 1,639명(6.0%)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채용은 2,254명으로 전년대비 214명(△8.7%) 감소함.

○ 2016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의 증가율은 준정부기관(8.0%), 공기업(6.6%), 기타공공기관(4.7%) 순으로 높음.

○ 한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91.6%)한 반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각 △69%, △21.7%)함.

□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영향을 받은 결과임.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동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8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6,090	15,094	25,226	27,272	28,910	1,639	6.0
공기업	-	684	2,978	3,495	3,724	229	6.6
· 시장형	-	81	124	122	161	39	32.0
· 준시장형	-	603	2,854	3,373	3,563	190	5.6
준정부기관	988	4,462	8,370	8,823	9,529	706	8.0
· 위탁집행형	912	4,146	6,546	6,904	7,289	385	5.6
· 기금관리형	76	316	1,824	1,919	2,240	321	16.7
기타공공기관	5,102	9,948	13,878	14,954	15,657	704	4.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현원 기준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표 Ⅰ-8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524	1,055	1,699	2,468	2,254	△214	△8.7
공기업	56	62	117	351	109	△243	△69
· 시장형	2	2	8	-	11	11	-
· 준시장형	54	60	109	351	98	△254	△72.2
준정부기관	151	124	571	431	826	395	91.6
· 위탁집행형	65	94	364	370	483	113	30.5
· 기금관리형	86	30	207	61	343	282	461.8
기타공공기관	317	869	1,012	1,685	1,319	△366	△21.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신규 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전년대비 증감률 수치 산출시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관심 사안으로, 정부는 2016년 2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를 개최하고『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155].

○ 동 대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1단계(2013~20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2016~20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3년 간(2013년~2015년) 15,845명(누계)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환계획 13,298명(누계)을 상회(목표 대비 119% 달성)하는 실적임.

○ 또한 향후 2016년에는 1,532명, 2017년에는 43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 밝힘.

다. 재무현황[156]

1) 총평

□ 2013년 말 발표한『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부터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부채비율이 4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모습을 보임.

○ 공공기관 부채는 2015년 전년대비 2.9% 감소하는 것에 이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하는 등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규모 측면에서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산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총 499.4조원으로 2015년의 504.8조원 대비 5.4조원이 감소함(전년대비 1.1% 감소).

- 부채 규모의 감소는 공기업(전년대비 2.4조원, 0.7% 감소)과 준정부기관(전년대비 2.8조원, 2.2% 감소)의 부채가 감소한데 기인함.

---

155)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2016.2.18.)』보도자료

156)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자산은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한 798.7조원을 기록함.

- 자산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산증가율의 폭이 2013년 이후 하락해오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함.

○ 자본의 경우, 2012년 이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저유가·저금리로 인한 매출원가·이자 등의 절감을 통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자본출자로 인해 2016년 공공기관 자본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299.4조원을 기록함.

○ 재무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16년 자산과 자본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채의 증가율은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둔화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2016년 자산증가율은 전년대비 1.8%p 상승한 2.2%이며 2016년 부채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1.8%p 하락한 -1.1%로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예년에 비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84〉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2	'13	전년비 증감 (증가율)	'14	전년비 증감 (증가율)	'15	전년비 증감 (증가율)	'16	전년비 증감 (증가율)
◇ 부채	496.1	520.4	24.3 (4.9)	519.9	△0.5 (△0.1)	504.8	△15.1 (△2.9)	499.4	△5.4 (△1.1)
· 공기업	353.2	373.7	20.5 (5.8)	377.1	3.4 (0.9)	365.0	△12.1 (△3.2)	362.6	△2.4 (△0.7)
· 준정부기관	131.2	135.1	3.9 (3.0)	130.4	△4.7 (△3.5)	125.1	△5.3 (△4.1)	122.3	△2.8 (△2.2)
· 기타공공기관	11.7	11.6	△0.1 (△0.9)	12.4	0.8 (6.9)	14.7	2.3 (18.5)	14.5	△0.2 (△1.4)
◇ 자본	225.6	240.2	14.6 (6.5)	258.6	18.4 (7.7)	276.5	17.9 (6.9)	299.4	22.9 (8.3)
· 공기업	170.3	174.6	4.3 (2.5)	182.1	7.5 (4.3)	188.2	6.1 (3.3)	197.7	9.5 (5.0)
· 준정부기관	39.2	47.8	8.6 (21.9)	57.2	9.4 (19.7)	68.2	11 (19.2)	80.1	11.9 (17.4)
· 기타공공기관	16.1	17.9	1.8 (11.2)	19.2	1.3 (7.3)	20.1	0.9 (4.7)	21.5	1.4 (7.0)
◇ 자산	721.7	760.7	39 (5.4)	778.5	17.8 (2.3)	781.3	2.8 (0.4)	798.7	17.4 (2.2)
· 공기업	523.5	548.3	24.8 (4.7)	559.2	10.9 (2.0)	553.2	△6.0 (△1.1)	560.3	7.1 (1.3)
· 준정부기관	170.4	182.9	12.5 (7.3)	187.6	4.7 (2.6)	193.3	5.7 (3.0)	202.4	9.1 (4.7)
· 기타공공기관	27.8	29.5	1.7 (6.1)	31.6	2.1 (7.1)	34.8	3.2 (10.1)	36.0	1.2 (3.4)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활용하여 재구성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2~2016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그림 Ⅰ－12〉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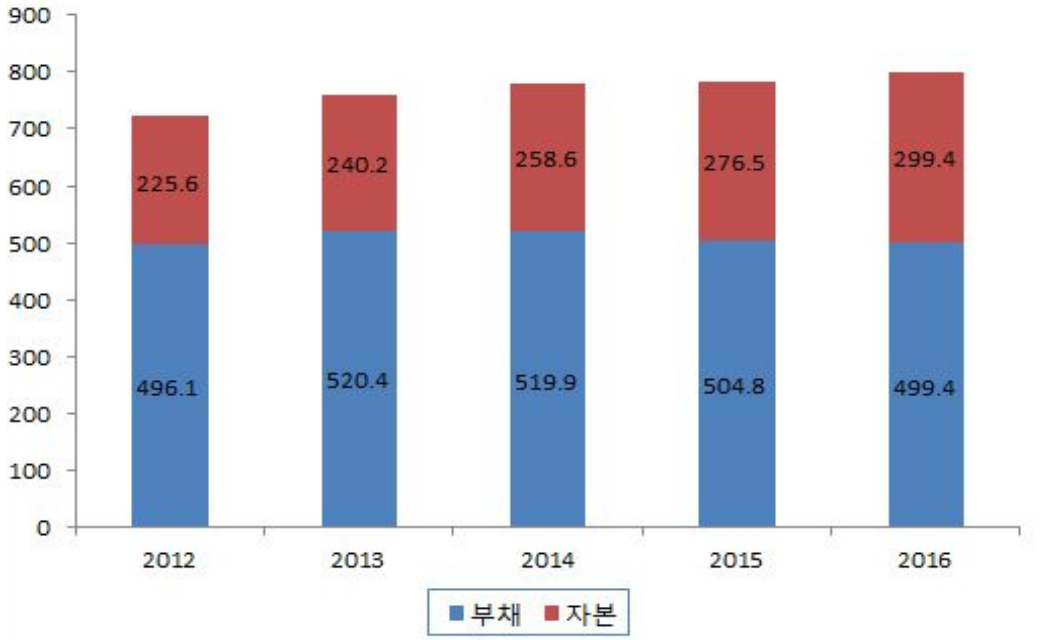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13〉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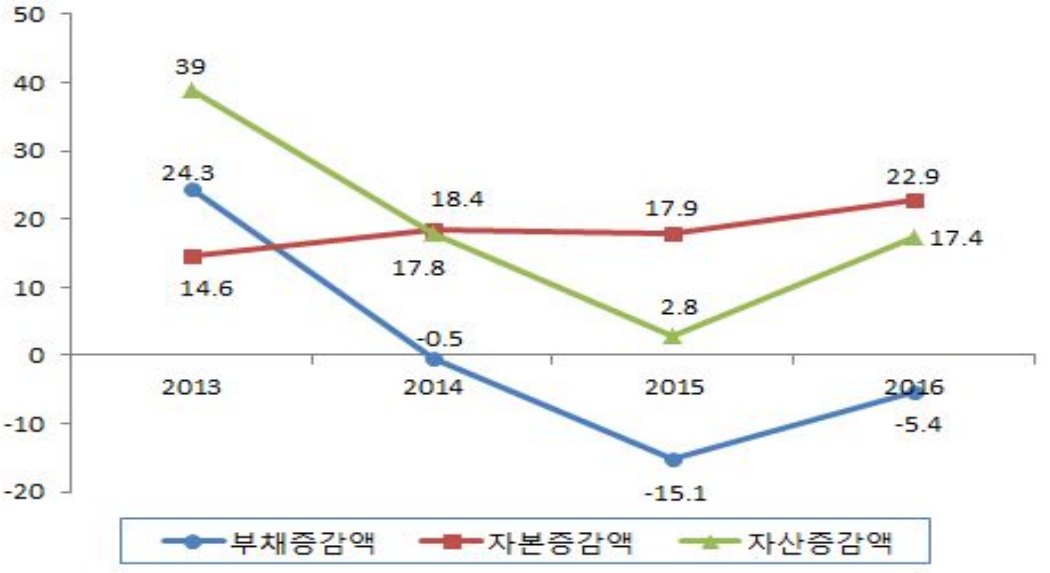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부채 현황

□ 2016년은 2014년의 부채 감축 성과 이후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 회계연도임.

○ 공운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로 증가해온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부채 감축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16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5.4조원 감소한 499.4조원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중도 2013년 36%, 2014년 35%, 2015년 32%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2%p 하락한 30%로 2010년 이후[157] 최저 수준임[158].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39개 공공기관[159]의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5.4조원 감소(전년대비 1.1% 감소)한 474.9조원임.

- 이는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6년 부채 전망치(491.0조원[160]) 보다 16.1조원을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임.

○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기관(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모기업인 한전에 포함)의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8조원 감소한 410.3조원을 기록함.

---

157) 2010년 32%, 2011년 35%, 2012년 36%

158)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159)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60)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

〈표 Ⅰ－85〉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12	'13	전년비 증감	'14	전년비 증감	'15	전년비 증감	'16	전년비 증감
◇ 부채	496.1 (220)	520.4 (217)	24.3 (3)	519.9 (201)	△0.5 (△16)	504.8 (183)	△15.1 (△19)	499.4 (167)	△5.4 (△16)
· 공기업	353.2 (207)	373.7 (214)	20.5 (7)	377.1 (207)	3.4 (△7)	365.0 (194)	△12.1 (△13)	362.6 (183)	△2.4 (△11)
· 시장형	155.6 (183)	168.5 (194)	12.9 (11)	175.9 (196)	7.4 (2)	171.4 (174)	△4.5 (△22)	168.3 (165)	△3.1 (△9)
· 준시장형	197.6 (232)	205.2 (234)	7.6 (2)	201.2 (218)	△4 (△16)	193.6 (215)	△7.6 (△3)	194.3 (203)	0.7 (△12)
· 준정부기관	131.2 (335)	135.1 (283)	3.9 (△52)	130.4 (228)	△4.7 (△55)	125.1 (184)	△5.2 (△44)	122.3 (153)	△2.9 (△31)
· 기금관리형	86.9 (329)	87.9 (309)	1.0 (△20)	79.3 (251)	△8.6 (△58)	71.3 (193)	△8 (△58)	68.8 (153)	△2.5 (△40)
· 위탁집행형	44.3 (348)	47.2 (244)	2.9 (△104)	51.1 (199)	3.9 (△45)	53.8 (172)	2.7 (△27)	53.5 (152)	△0.3 (△20)
· 기타공공기관	11.7 (72)	11.6 (65)	△0.1 (△7)	12.4 (65)	0.8 (-)	14.7 (73)	2.3 (8)	14.5 (67)	△0.2 (△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474.0 (235)	498.8 (233)	24.8 (△2)	497.2 (216)	△1.6 (△17)	480.3 (194)	△16.9 (△21)	474.9 (177)	△5.4 (△17)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12개)	410.2 (332)	435.7 (339)	25.5 (7)	437.2 (322)	1.4 (△17)	418.3 (288)	18.8 (△34)	410.3 (259)	8.0 (△29)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1. ( )는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2~2016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4.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1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그림 Ⅰ-14〉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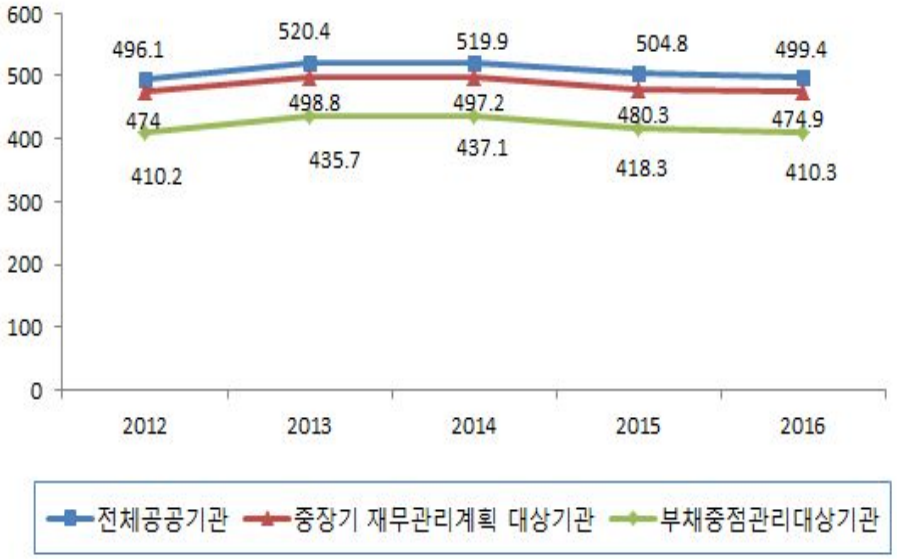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15〉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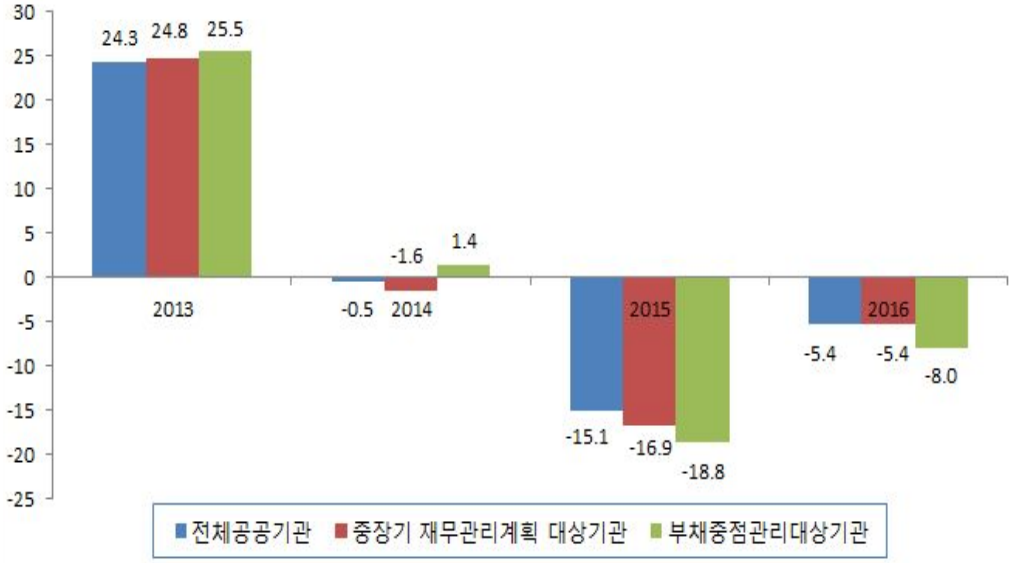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161]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에는 2015년 183%보다 16%p 하락한 167% 수준임.

○ 중장기 재무관리관리계획 대상기관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2015년에 200%를 하회한 194%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전년대비 17%p 하락한 177%를 기록함.

-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2016년 전망치인 184%보다 7.0%p 낮은 수치임[162].

○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전년도 보다 하락폭(34%p 하락)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의 288%보다 29%p 하락한 259%를 기록함.

〈그림 Ⅰ－16〉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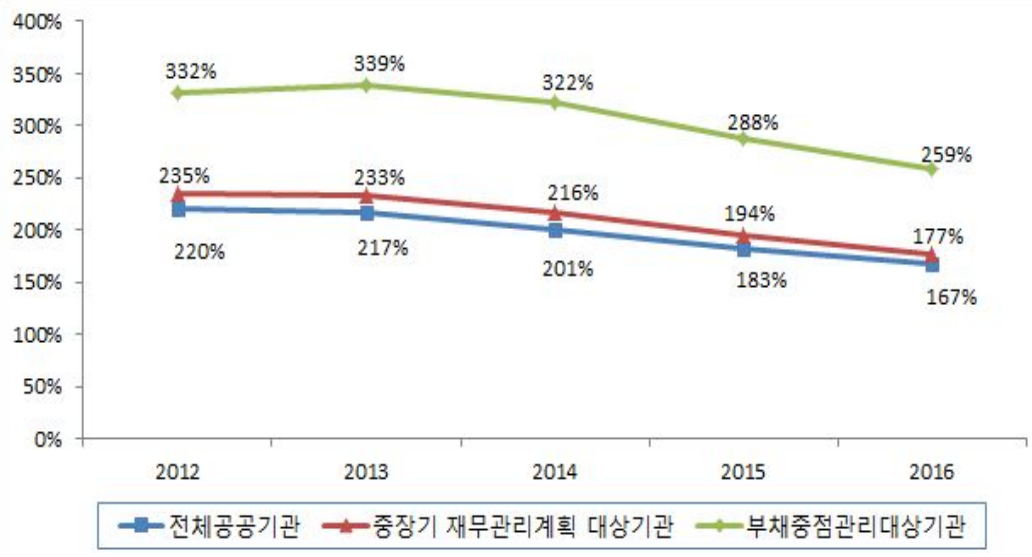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61)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비중(부채/자본)임

162)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

〈그림 Ⅰ－17〉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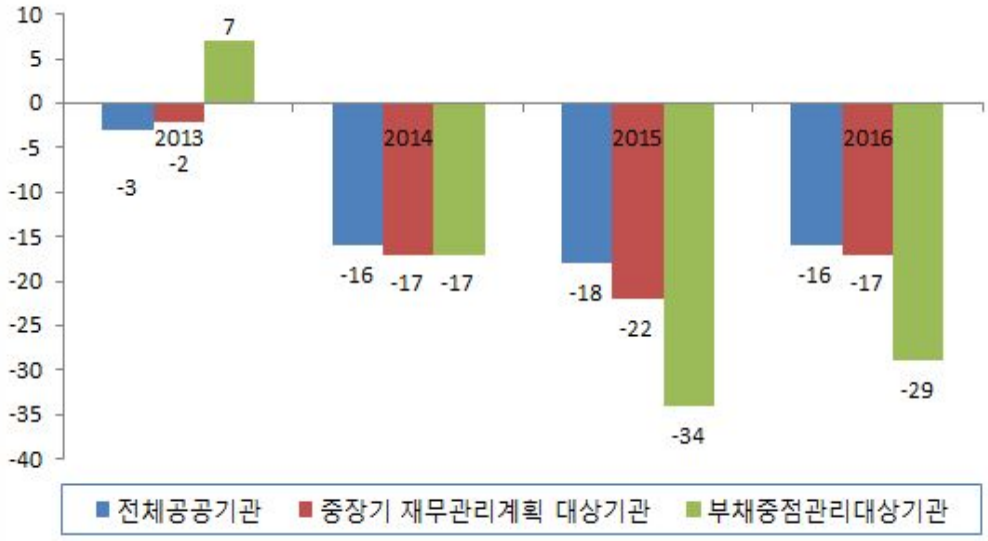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채를 감축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채 감축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 감축액(5.4조원)의 96.3%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별 2016년 부채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약 2.4조원, 준정부기관은 약 2.8조원, 기타공공기관은 약 0.2조원 수준임.
-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2.5조원 감축됨에 따라 예년보다 큰 부채감축 실적을 냈는데 이는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자금에 따른 영향임.
-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에 속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매각과 부실채권 회수 등으로 2016년 부채규모가 3.8조원 감축되었음[163].

○ 부채증가율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 부채증가율도 2015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공기업의 경우, 2016년 부채증가율 하락폭이 전년대비 2.5%p 감소함에 따라 부채증가율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163)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 준정부기관도 2016년 부채증가율 하락폭이 둔화된 가운데 2015년에는 4.1%의 감소율에서 2016년 2.2%의 감소율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부채증가율은 전년대비 19.9%p 감소한 -1.4%로 큰 폭으로 하락함.

〈그림 Ⅰ-1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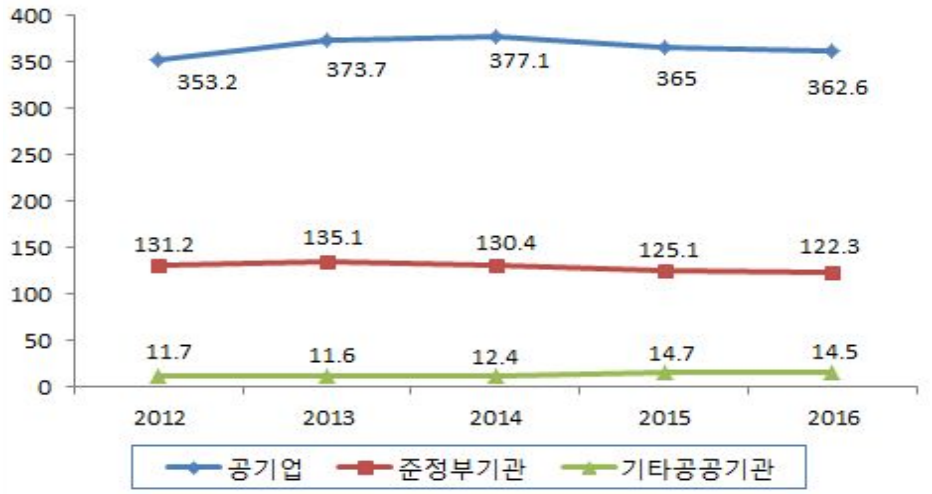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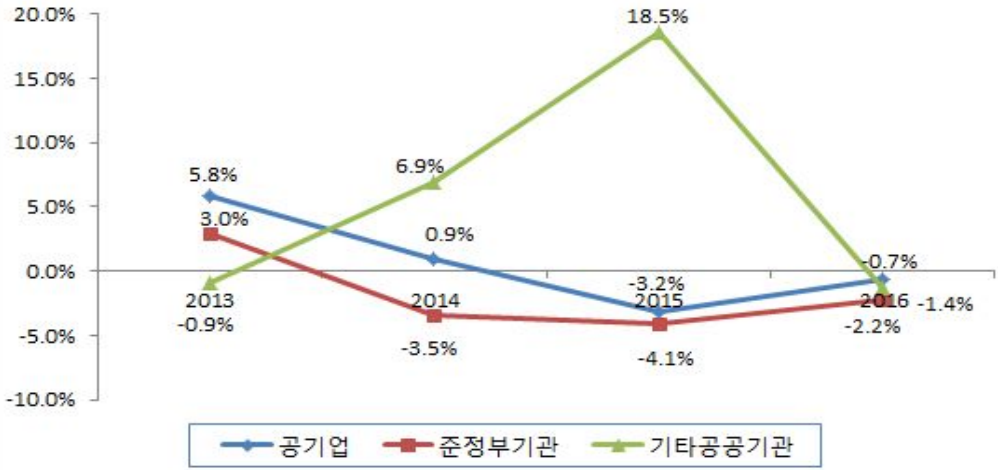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2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013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나가다 2016년에 하락하여 개선된 모습을 보임.

○ 공기업 중 15개 기관이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한국전력공사 자회사 6개 기관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조정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29%p 감소한 410.3%를 기록함.

-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376%→342%, 34%p 감소), 한국전력공사(158%→143%, 15%p 감소)등이 있음.

○ 준정부기관 역시 지속적인 부채비율 하락세를 2016년에도 이어갔는데 2016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31%p 감소한 153%를 기록함.

-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된 준정부기관으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98%→109%, 189%p 감소)이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6년에 부채비율이 다시 하락하여 전년대비 6%p 감소한 67%를 기록함.

〈그림 Ⅰ－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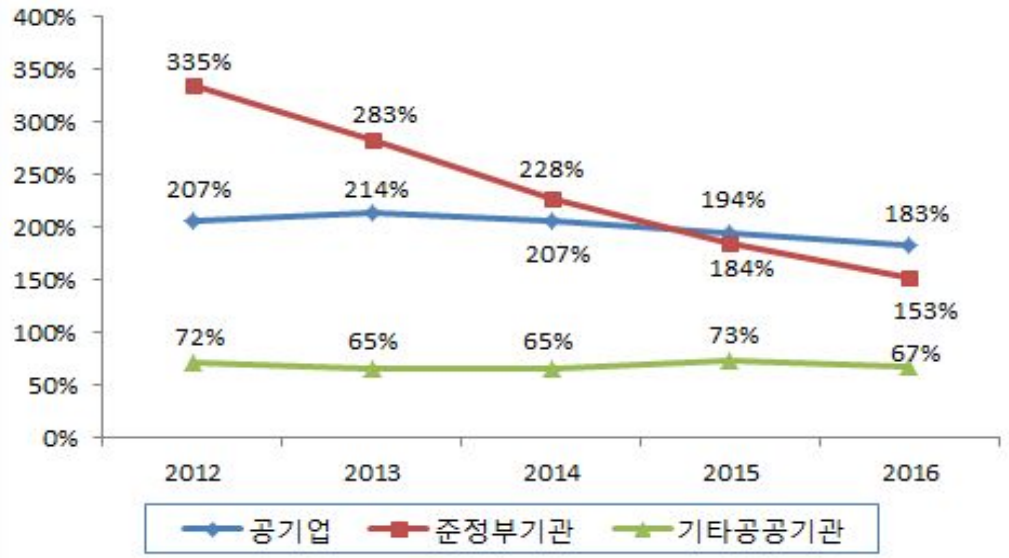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2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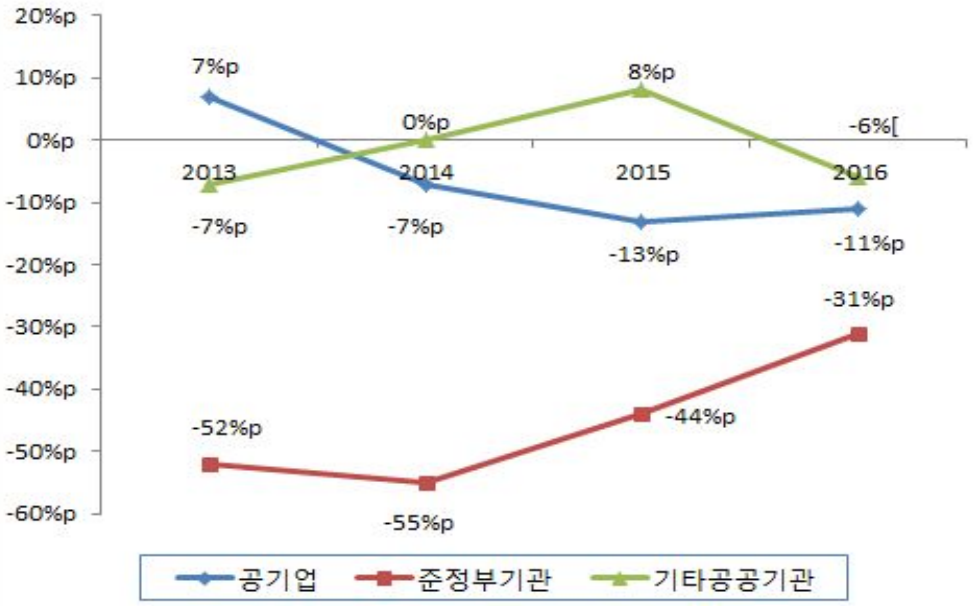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214.6조원으로 부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약 171.9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와 34.4%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대비 약 1.4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전년대비 약 3.8조원 감소함.

〈표 Ⅰ－86〉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332	1,380	1,480	1,298	1,324	26	2.0
교육부	23	118,362	134,410	157,377	176,948	175,764	△1,184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34,476	34,246	35,581	38,026	37,105	△921	△2.4
외교부	3	1,036	943	865	1,710	1,215	△495	△28.9
통일부	2	47	40	34	31	30	△1	△3.2
법무부	4	317	357	409	466	484	18	3.9
국방부	3	264	264	275	254	309	55	21.7
행정안전부	3	135	147	195	232	318	86	37.1
문화체육관광부	33	18,603	19,841	20,763	21,696	23,590	1,894	8.7
농림축산식품부	10	79,438	81,116	83,840	90,411	92,601	2,190	2.4
산업통상자원부	41	1,585,174	1,719,267	1,799,346	1,751,728	1,719,036	△32,692	△1.9
보건복지부	25	84,664	84,803	86,843	88,951	89,943	992	1.1
환경부	8	24,321	21,709	22,914	16,261	16,010	△251	△1.5
고용노동부	12	8,601	7,891	7,029	7,483	7,444	△39	△0.5
여성가족부	5	80	69	69	50	69	19	38.0
국토교통부	23	2,128,837	2,222,678	2,190,475	2,132,490	2,146,180	13,690	0.6
해양수산부	19	31,581	33,153	34,586	34,451	34,224	△227	△0.7
중소벤처기업부	9	161,214	168,759	168,844	163,645	162,900	△745	△0.5
국무조정실	27	4,423	4,601	4,503	5,171	4,890	△281	△5.4
방송통신위원회	2	4,564	4,211	3,855	3,886	3,587	△299	△7.7
원자력안전위원회	3	360	370	468	570	494	△76	△13.3
금융위원회	7	595,936	584,699	497,642	429,558	391,966	△37,592	△8.8
공정거래위원회	2	831	1,084	55	111	86	△25	△22.5
국가보훈처	3	1,200	1,424	1,477	1,193	1,185	△8	△0.7
인사혁신처	1	67,162	68,601	71,820	71,546	73,309	1,763	2.5
식품의약품안전처	5	28	32	35	57	75	18	31.6
관세청	1	4	5	3	2	4	2	100.0
방위사업청	2	6,134	6,490	6,481	7,036	7,301	265	3.8
경찰청	1	365	432	572	1,284	267	△1,017	△79.2
소방청	1	65	67	77	132	147	15	11.4
문화재청	1	127	137	135	138	116	△22	△15.9
산림청	2	5	2	3	3	160	157	5233.3
농촌진흥청	1	40	55	57	66	56	△10	△15.2
특허청	6	943	999	955	926	872	△54	△5.8
기상청	3	17	46	65	56	64	8	14.3
합 계	355	4,960,687	5,204,331	5,199,125	5,047,865	4,993,123	△54,742	△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율에 오차 발생가능

3.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과 2017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2개 공공기관(2017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2015년 부채 상위 10개 기관과 유사함.

○ 2015년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외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체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 10번째 큰 기관으로 신규 편입됨.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9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인 동시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해당함.

〈표 Ⅰ-87〉 2016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원, %, %p)

순위	기관명	2015년	2016년(A)	증감액	증감율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 (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 (B-A)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4.2 (376)	133.3 (342)	△0.9 (△34)	△0.3 (-)	135 (358)	1.7 (16)
2	한국전력공사	107.3 (158)	104.8 (143)	△2.5 (△15)	△2.4 (-)	52.6 (94)	△52.1 (△49)
3	한국가스공사	32.3 (321)	30.5 (325)	△1.8 (4)	△5.5 (-)	32 (302)	1.5 (△23)
4	예금보험공사	33.3	29.5	△3.8	△11.3	30.2	0.7
5	한국도로공사	27.0 (88)	27.5 (86)	0.5 (△2)	2.1 (-)	28.4 (88)	0.9 (2)
6	한국철도시설공단	20.0	19.8	△0.2	△1.3	20.7	0.9
7	한국석유공사	19.0 (453)	18.6 (529)	△0.4 (76)	△2.4 (-)	19.2 (614)	0.6 (85)
8	중소기업진흥공단	14.3 (892)	14.3 (918)	(△0.08) (27)	△0.1 -	14.9 -	0.6 -
9	한국철도공사	13.5 (283)	13.7 (288)	0.2 (5)	2.2 (-)	13.9 (217)	0.2 (△71)
10	한국수자원공사	13.3 (211)	13.6 (205)	0.3 (△6)	2.8 (-)	14.1 (213)	0.5 (8)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 )는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율 계산하는데 일부 오차 발생가능

□ 공공기관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주요 특징[16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체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원가 절감(전년대비 11.6% 감소)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함(전년대비 128% 증가)에 따라 부채감축 실적을 이루어 내며 2016년 부채가 133조원을 기록함.

- 이는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의 2016년 전망치(135조원)보다 2조원을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임.
- 또한 부채비율 역시 전년대비 34%p 감소한 342%를 기록함.

○ 한국전력공사(연결 재무제표 기준)는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자금 등[165]의 영향으로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하락함.

- 이에 2016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전년대비 약 2.5조원 감축되었으며,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5%p 하락함.

○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매입채무 감소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부채 감축 실적을 거두었음.

-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15년 32.3조원에서 2016년 30.5조원으로 전년대비 1.8조원 감축됨.
- 부채비율의 경우, 부채규모의 감축과 동시에 당기순이익 감소에 의한 자본(전년대비 0.7조원 감소)의 감소에 의해 2015년 321%에서 2016년 325%로 전년대비 4%p 상승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부채 감축 실적이 3년 연속 가장 큰 기관임.

- 우리은행 지분매각과 부실채권 회수 등으로 전년대비 3.8조원을 감축한 결과 2016년 부채가 29.5조원으로 감소함[166].

○ 한국도로공사는 신규 고속도로(상주-영덕 등)의 건설로 인해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0.6조원정도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p 감소한 86% 수준을 기록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전년대비 0.3조원 감축되어 19.8조원을 기록함.

---

164)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와 각 기관별 2016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165)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166)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0.5조원 감축되었으나,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자산감액 등으로 인해 자본 감소가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2015년 453%에서 2016년 529%로 크게 증가함(전년대비 76%p 증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채는 전년대비 77억원 감축된 14.3조원으로, 이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전망치(14.9조원)를 0.6조원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임.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전년대비 0.3조원, 0.4조원 정도의 부채 감축으로 2016년 부채규모가 각각 13.7조원과 13.6조원임.

- 부채비율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전년대비 5%p 증가한 288%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년대비 7%p 하락한 205%을 기록함.

3) 자산 현황

□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2015년 781.3조원에서 2.2% 증가(17.4조원)한 798.7조원 수준임.

□ 공공기관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전년대비 7.1조원 증가)과 준정부기관(전년대비 9.1조원 증가), 기타공공기관(전년대비 1.2조원)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전체의 자산 규모는 2015년 553.2조원에서 2016년 560.3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7.1조원이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 중 준정부기관이 자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93.3조원에서 2016년 202.4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9.1조원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2조원 증가한 36조원임.

〈표 Ⅰ-88〉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2	'13	'14	'15	'16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계	721.7	760.7	778.5	781.3	798.7	17.4	2.2
공기업	523.5	548.3	559.2	553.2	560.3	7.1	1.3
· 시장형	240.7	255.3	265.8	269.7	270.4	0.7	0.3
· 준시장형	282.8	293.0	293.4	283.5	289.9	6.4	2.3
준정부기관	170.4	182.9	187.6	193.3	202.4	9.1	4.7
· 기금관리형	113.3	116.3	110.8	108.3	113.7	5.4	5.0
· 위탁집행형	57.1	66.6	76.8	85.0	88.7	3.7	4.4
기타공공기관	27.8	29.5	31.6	34.8	36	1.2	3.4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가능

〈그림 Ⅰ-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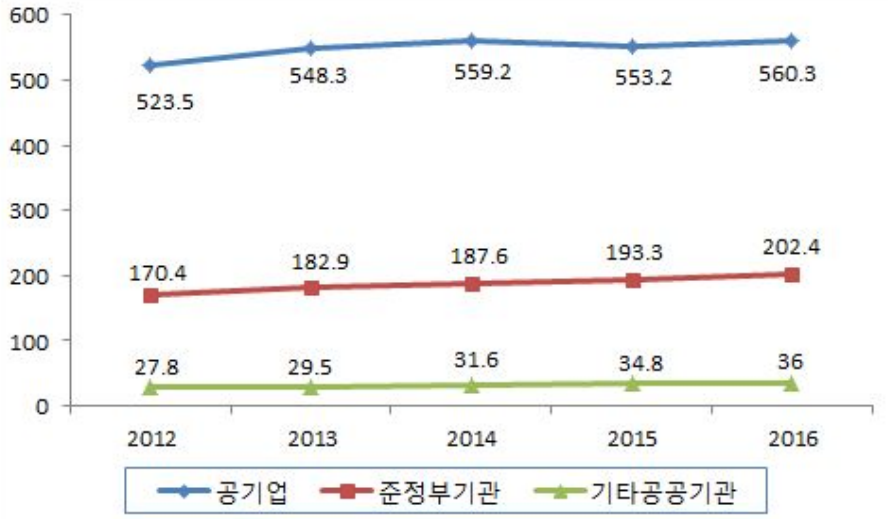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산증가율이 전년도 보다 상승함.

○ 공기업은 자산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2015년에 처음으로 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1.3%의 증가율을 나타냄.

- 공기업의 2016년 자산 증가율은 1.3%(전년대비 2.4%p 상승)로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증가함.
- 특히, 2016년 공기업의 총자산 증가 규모인 7조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전년대비 1.5조원 증가)와 한국전력공사(전년대비 2.6조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년대비 2.4조원 증가)의 자산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은 꾸준히 자산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준정부기관의 2016년 자산증가율은 9.1%로 전년대비 3.4%p 상승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자산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6년에는 전년대비 6.7%p 하락한 3.4% 자산증가율을 기록함.

〈그림 Ⅰ－23〉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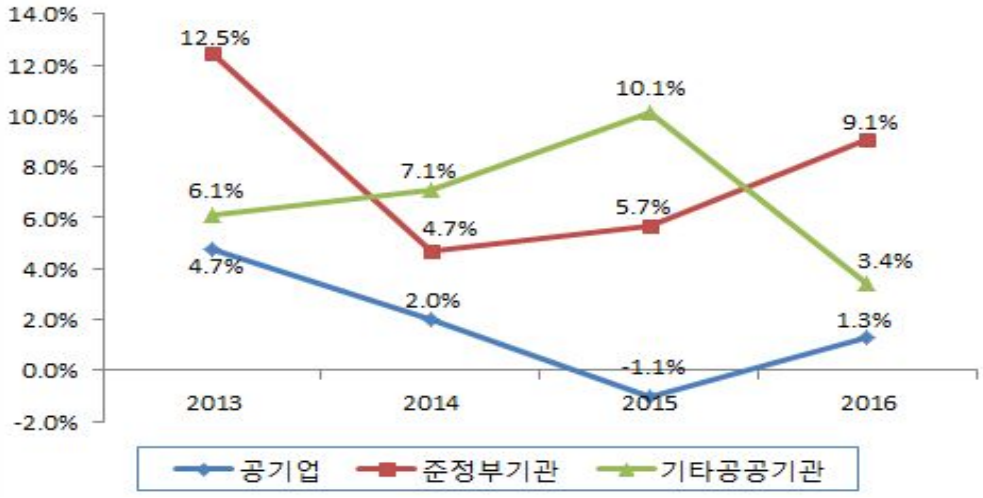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약 312.7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266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2.5%를 차지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대비 약 7.9조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대비 약 0.1조원 감소하였음.

〈표 Ⅰ－89〉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5,807	6,035	6,507	6,205	6,367	162	2.6
교육부	23	280,213	312,892	342,936	367,558	377,808	10,251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	98,225	100,222	107,205	115,039	116,976	1,937	1.7
외교부	3	3,043	2856	2631	3,306	2,931	△375	△11.3
통일부	2	123	116	123	135	112	△23	△17.0
법무부	4	1642	1814	2020	2083	2141	58	2.8
국방부	3	535	539	555	556	595	39	7.0
행정안전부	3	336	357	433	494	746	252	51.0
문화체육관광부	33	71,348	73,369	75,999	76,765	79,465	2,700	3.5
농림축산식품부	10	122,189	124,863	127,998	136,076	140,448	△135,936	△99.9
산업통상자원부	41	2,371,766	2,519,513	2,628,938	2,661,227	2,660,065	△1,162	△0.04
보건복지부	25	161,273	225,827	288,634	343,374	378,135	34,761	10.1
환경부	8	28,447	26,055	26,672	19,421	19,268	△153	△0.8
고용노동부	12	18,239	17,270	17,642	18,197	18,467	270	1.5
여성가족부	5	144	146	199	187	197	10	5.3
국토교통부	23	2,980,933	3,106,308	3,123,353	3,048,440	3,127,259	78,819	2.6
해양수산부	19	113,416	116,491	119,847	121,702	123,325	1,623	1.3
중소벤처기업부	9	205,196	212,084	189,782	186,555	187,367	812	0.4
국무조정실	27	7,228	7,925	8,749	9,703	9,751	48	0.5
방송통신위원회	2	8,086	7,660	7,273	7,342	7,006	△336	△4.6
원자력안전위원회	3	823	931	1066	1182	1069	△113	△9.6
금융위원회	7	560,046	565,291	497,310	472,968	492,397	19,429	4.1
공정거래위원회	2	810	1,086	911	909	831	△78	△8.6
국가보훈처	3	3,652	4,021	4,148	4,090	4,137	47	1.1
인사혁신처	1	154,744	152,271	157,092	159,089	176,520	17,431	11.0
식품의약품안전처	5	41	39	45	74	94	20	27.0
관세청	1	13	17	18	19	24	5	26.3
방위사업청	2	13,425	15,053	16,861	18,720	21,226	2,506	13.4
경찰청	1	2593	2670	2748	3,535	3365	△170	△4.8
소방청	1	663	725	818	967	1113	146	15.1
문화재청	1	187	163	164	170	150	△20	△11.8
산림청	2	13	14	15	28	1546	1,518	5421.4
농촌진흥청	1	146	184	196	215	236	21	9.8
특허청	6	1235	1346	2170	2166	2153	△13	△0.6
기상청	3	88	109	121	113	118	5	4.4
합 계	355	7,216,668	7,606,262	7,783,759	7,811,561	7,985,432	173,871	2.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 및 기관별 공시자료(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율에 오차 발생가능

3.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과 2017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2개 공공기관(2017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과 동일함.

○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기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모습을 보임.

- 자산 증가가 발생한 7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이상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이상 준정부기관)임.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6년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해당하는 장기금융자산 3.8조원이 발생함에 따라 자산이 크게 증가함.

- 한국전력공사(연결 재무제표 기준)[167] 신고리 3, 4호기의 건설로 전년대비 약 2.6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하남미사, 고양삼송 등)의 건설로 인해 전년대비 약 2.4조원의 자산이 증가함[168].

○ 반면, 자산 감소가 일어난 기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자산 감소가 일어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자산의 자산손상으로 전년대비 약 2.5조원 감소함[169].

- 한국석유공사도 국제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자산의 자산손상으로 전년대비 약 1.1조원의 자산 감소가 발생함[170].

---

167) 한국전력공사(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88개 자회사로 구성
168)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보도자료
169)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보도자료
170)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보도자료

〈표 Ⅰ－90〉 2016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5년	2016년	증감액	증감율
1	한국전력공사	1,752,574	1,778,370	25,797	1.5
2	한국토지주택공사	1,698,895	1,723,217	24,323	1.4
3	한국도로공사	576,057	595,826	19,769	3.4
4	한국가스공사	423,853	399,278	△24,575	△5.8
5	국민건강보험공단	317,427	351,555	34,128	10.8
6	예금보험공사	209,882	222,451	12,569	6.0
7	한국석유공사	232,052	220,672	△11,380	△4.9
8	한국수자원공사	195,506	202,994	7,488	3.8
9	한국철도공사	181,987	185,129	3,142	1.7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80,730	177,910	△2,820	△1.6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라. 손익현황

□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5.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늘리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추세임.

○ 2016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6조원 증가한 16.1조원(전년대비 28.8% 증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2016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함.

○ 공기업은 2014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89.1% 증가한 8.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저유가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연결기준 12조원)이 전체 공기업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함.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당기순손실을 실현하였으나 2016년 순손실 규모가 전년대비 약 5.7조원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실현해 왔으며 2016년에는 6.9조원(전년대비 0.9조원 감소)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약 0.5조원과 0.2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한 3.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흑자를 이어나갔으나, 전년대비 약 1.8조원 감소한 3.9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3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0.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표 Ⅰ-91〉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2	'13	전년비 증감	'14	전년비 증감	'15	전년비 증감	'16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합 계	△1.8	5.3	7.1	11.4	6.1	12.5	1.1	16.1	3.6 (28.8)
· 공기업	△3.4	△2.4	1.0	4.0	6.4	4.6	0.6	8.6	4.1 (89.1)
· 시장형	△2.8	0.1	2.9	2.3	2.2	8.4	6.1	5.8	△2.6 (△31.0)
· 준시장형	△0.6	△2.5	△1.9	1.7	4.2	△3.8	△5.5	2.8	6.6 (△173.7)
· 준정부기관	1.4	7.8	6.4	7.3	△0.5	7.9	0.6	6.9	△0.9 (△11.4)
· 기금관리형	△2.9	0.9	3.8	0.7	△0.2	2.2	1.5	3.0	0.8 (36.4)
· 위탁집행형	4.3	6.9	2.6	6.6	△0.3	5.7	△0.9	3.9	△1.8 (△31.6)
· 기타공공기관	0.3	△0.1	△0.4	0.1	0.2	0.1	0.0	0.6	0.5 (500.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2.4	4.9	7.3	10.7	5.8	11.8	1.1	15.0	3.2 (27.1)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12개)	△8.1	△3.2	4.9	2.7	5.9	4.7	2.0	8.7	4.0 (85.1)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 )는 부채비율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2~2016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4. 공무원연금, 신보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율 오차 발생가능

〈그림 Ⅰ－2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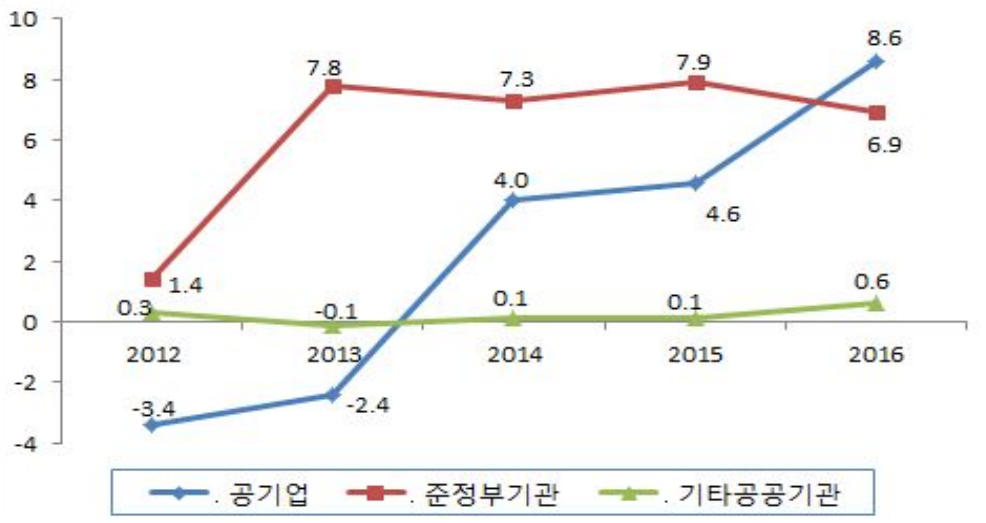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6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171]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규모가 증가함[172].

○ 한국전력공사(연결 재무제표 기준)는 2013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삼성동 사옥 매각관련 처분이익의 영향[173]으로 2016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약 46.7%(6.3조원) 감소함.

- 삼성동 사옥 매각관련 처분이익의 영향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2016년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큰 변화가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흑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6년에도 3.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다만,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실현한 순이익 규모가 약 1.8조원 감소함에 따라 순이익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171)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172) 각 기관별 2016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173) 2015년도 배당기관 총 당기순이익 14.3조원으로 한전 부지매각이익 제외 시 7.7조원 수준으로 한전 부지매각이익이 6.6조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 수익의 증가, 영업 관련 이자비용 감소,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한 2.4조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출원가와 기타비용(기타충당부채의 전입)을 절감하고 금융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금융자산처분이익 등)이 증가하여 2016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28.2% 증가한 2.2조원 규모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타대손충당금의 환입과 공사부담금수익과 같은 기타수익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5조 원가량 증가하여 흑자전환한 기관임.

□ 2016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기관[174] 중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4개 기관은 2016년에 적자전환된 기관임[175].

○ 전체 공공기관 중 2016년 순손실 발생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2015년에 이어 적자를 내면서 2016년 약 1.1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광권의 기간만료 및 탐사철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무형자산손상차손의 영향으로 2016년 순손실이 1.1조원 발생하였으나, 전년대비 순손실 증가규모(△3.4조원, △75.1%)는 큰 폭으로 감소함.

○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6년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금융[176]부문 매출액과 금융수익[177]이 각각 전년대비 약 371억원, 68억원 증가함에 따라 순손실 증가규모(△1.1조원, △52.2%)가 두드러지게 감소함.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6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의 증가와 이자비용 및 외화환산손실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6,7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

174)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175) 각 기관별 2016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176) 광업지원 융자와 국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177) 이자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표 Ⅰ－92〉 2016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 위		기관명	2015년	2016년	증감액	증감율
순이익	1	한국전력공사	134,164	71,483	△62,680	△46.7
	2	국민건강보험공단	52,424	33,644	△18,781	△35.8
	3	예금보험공사	21,983	24,377	2,393	10.9
	4	한국토지주택공사	9,801	22,370	12,569	128.2
	5	인천국제공항공사	7,714	9,650	1,936	25.1
	6	한국주택금융공사	△114	5,309	5,423	흑자전환
	7	주택도시보증공사	3,523	4,736	1,214	34.5
	8	(주)강원랜드	4,416	4,545	129	2.9
	9	한국마사회	2,439	2,300	△139	△5.7
	10	한국공항공사	1,874	1,902	28	1.5
순손실	1	한국석유공사	△45,003	△11,188	33,814	△75.1
	2	한국광물자원공사	△20,636	△9,874	10,762	△52.2
	3	한국가스공사	3,192	△6,736	△9,927	적자전환
	4	한국철도공사	864	△2,265	△3,129	적자전환
	5	한국수자원공사	△57,956	△1,170	56,787	△98.0
	6	대한석탄공사	△626	△824	△197	31.5
	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678	△455	3,223	△87.6
	8	한국정보화진흥원	740	△326	△1,065	적자전환
	9	경상대학교병원	34	△269	△303	적자전환
	10	서울대학교병원	△694	△252	442	△63.7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기순이익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2015년 1.5조원, 2016년 1.9조원)포함

□ 2017년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정부배당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으로 하여금 확정한 2017년 배당수입은 2016년 대비 약 3,349억원(전년대비 27.4%) 증가한 1조 5,562억원임[178].

○ 36개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기관, 이월결손 보전 기관, 국회 결산 승인기관 등 1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에 대한 2017년 배당금이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 중 21개 기관의 배당금 1조 5,541억원을 수납 완료함.

178) 기획재정부, 『2017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 확정(2017.5.19.)』, 보도자료

- 2016년 당기순손실 발생을 사유로 정부 배당에서 제외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임.
- 이외에 서울신문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은 이월결손 보전의 사유로 정부배당에서 제외됨.
- 한국방송공사(20억원)와 한국교육방송공사(0.6억원)는 국회 결산 승인(하반기 예정)을 거쳐 국고에 수납될 예정임.

○ 2017년 정부 배당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배당성향 증가와 일부 개별기업의 당기순이익 개선에 기인함.

- 2017년 평균 배당성향은 31.89%로 전년(30.25%)대비 1.64%p 증가함.
- 2016년 배당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10.2조원으로 전년대비 14.3조원[179] 보다 4.1조원 감소하였으나, 2015년 배당기관 총 당기순이익 중 한전 부지매각이익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출자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31개[180] 기관으로 이들 기관 중 2017년에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0개[181] 기관임.

- 공운법상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정부배당 실적은 총 1조 5,528억원으로 2017년 발생한 전체 정부배당수입의 99.8%를 차지함.
- 2017년에 공공기관이 발생시킨 정부배당 실적은 2016년(22개 기관, 1조 2,181억 원) 대비 약 3,347억 원이 증가한 수준임.

○ 2017년 정부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에 7,888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7,674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됨[182].

---

179) 한국전력공사 부지매각이익 제외 시 7.7조원

180)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舊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 21개 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상 준정부기관 5개 기관), 88관광개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이상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181)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88관광개발(주)

182)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정금액이 포함됨

〈표 Ⅰ－93〉 36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16년 배당			'17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1	한국전력공사	3,622	-	3,622	2,313	-	2,313
2	한국토지주택공사	689	574	1,263	1,952	1,812	3,764
3	중소기업은행	1,491	-	1,491	1,608	-	1,608
4	한국주택금융공사	113	11	124	532	52	584
5	한국농어촌공사	141	-	141	386	-	386
6	한국공항공사	339	316	655	341	319	660
7	부산항만공사	427	-	427	339	-	339
8	한국자산관리공사	158	-	158	205	-	205
9	울산항만공사	108	0.06	108.06	94	0.05	94.05
10	한국감정원	25	-	25	27	-	27
11	인천항만공사	32	14	46	23	10	33
12	한국조폐공사	19	-	19	23	-	23
13	한국방송공사	14	-	14	20	-	20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	12	13	-	13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0	-	40	10	-	10
16	한국도로공사	2	322	324	2	314	316
17	한국교육방송공사	5	4	9	0.3	0.3	0.6
18	한국수출입은행	40	-	40	-	-	-
19	한국가스공사	35	6	41	-	-	-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	11	-	-	-
21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2	한국산업은행	-	-	-	-	-	-
23	한국관광공사	-	-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	-	-
25	서울신문사	-	-	-	-	-	-
26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27	한국철도공사	-	-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	2,706	2,706	-	3,473	3,473
30	주택도시보증공사	-	633	633	-	1,352	1,352
31	한국투자공사	-	150	150	-	176	176
32	한국지역난방공사	-	145	145	-	152	152
33	대한송유관공사	-	9	9	-	13	13
34	88관광개발(주)	-	-	-	-	0.1	0.1
35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6	대한석탄공사	-	-	-	-	-	-
합 계*		7,323 (20개)	4,890.06 (13개)	12,213.06 (25개)	7,888.3 (17개)	7,673.45 (13개)	15,561.75 (23개)

자료: 기획재정부『2017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 확정(2017.5.19.)』보도자료

주: 1. KBS, EBS는 방송법 등에 따라 국회의 결산승인을 거쳐 수납 예정

2. 합계는 KBS, EBS 제외 금액임

〈표 Ⅰ－94〉 최근 5년간 소관 회계별 정부배당수입 실적

(단위: 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	2017년	
					실적 (B)	증감 (%)
• 일반회계	4,930	3,291	5,065	7,323	7,888	565 (7.7)
• 특별・기금	2,491	2,888	3,704	4,890	7,674	2,784 (56.9)
• 합계	7,421	6,179	8,769	12,213	15,562	3,349 (27.4)

자료: 기획재정부『2017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 확정(2017.5.19.)』 보도자료
주: 1. 2017년 일반회계 배당실시기관은 17개 기관(공동 출자기관 7개 포함)
2. 2017년 특별회계・기금 배당실시기관은 13개 기관(공동 출자기관 7개 포함)

마. 보수수준[183]

1)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16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약 6,607만원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약 7,905만원), 준정부기관(약 6,533만원), 기타공공기관(약 6,436만원) 순임[184].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7,905만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보다 높음.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298만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372만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1,468만 원 정도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6,436만원)는 3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170만 원 정도 낮으며 준정부기관과 차이는 100만원 미만임.

183)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참고

184)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6. 직원 평균보수 및 신입사원 초임 현황'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금,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함.

〈표 Ⅰ－95〉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62,372	63,102	63,592	64,932	66,073	1,141	1.8
공기업	72,565	72,987	72,224	75,359	79,050	3,691	4.9
·시장형	76,402	76,447	75,551	77,418	82,195	4,777	6.2
·준시장형	70,007	70,681	70,006	73,987	76,953	2,966	4.0
준정부기관	61,128	62,708	62,615	64,597	65,332	734	1.1
·위탁집행형	59,300	61,026	60,979	62,791	63,295	504	0.8
·기금관리형	69,011	70,174	70,180	73,179	75,135	1,956	2.7
기타공공기관	61,129	61,617	62,592	63,420	64,368	949	1.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에서 발췌

□ 2016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1.8%(약 114만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모두 전년대비 0.8~6.2%(50~478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대부분 유형에서 직원 평균보수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유형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맞추어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편성 및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전년보다 감축되었기 때문임[185].
- 또한 2014년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가 D~E등급으로 나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과다 기관 중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성과급 지급 제한받아 직원 평균보수 중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함[186].

185)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80에서 발췌

186)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2013.12월)』에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의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계량과 비계량을 포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

○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공기업 유형의 증가율이 4.9%로 준정부기관(1.1%)과 기타공공기관(1.4%)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Ⅰ-25〉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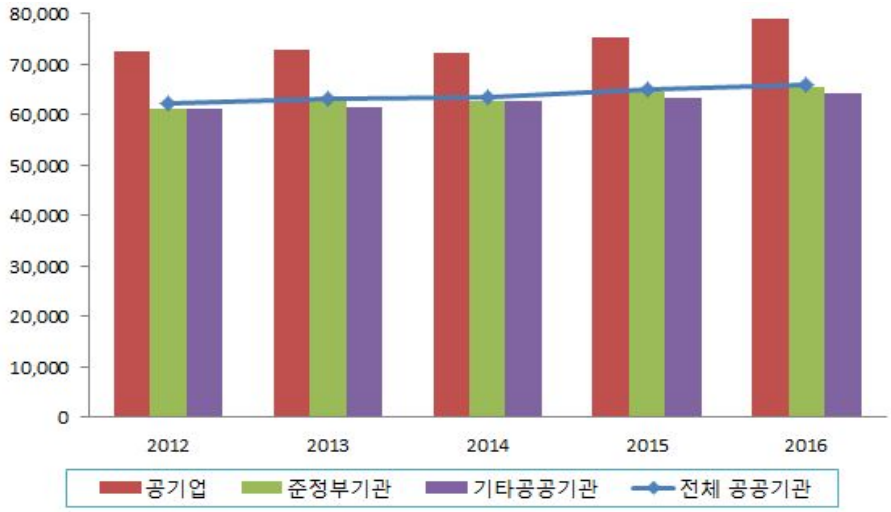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26〉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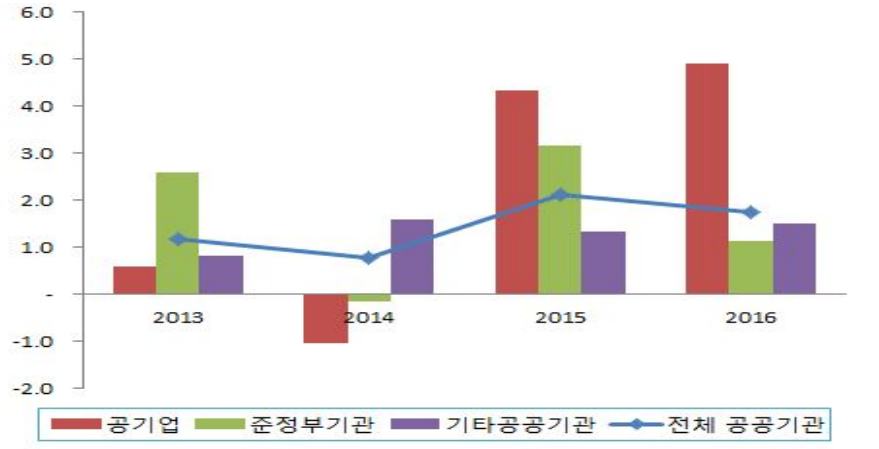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평가등급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률 0%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함.(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4.6.18.)』 보도자료)

□ 2015년에 비해 2016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이 하락한 것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6.12월, 이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상한선)이 2015년보다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임[187].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명문화함[188].

- 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8% 인상이었으나 2016년에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2015년도보다 0.8%p 하향한 3.0%로 설정함[189].

○ 다만, 기획재정부는 소비 촉진 및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에 대해 +1.5%p~△1.0%p 수준에서 차등 인상률(<표 Ⅰ-93>)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차등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개별기관의 2014년도 정규직 평균임금 수준에 연동하여[190] 최소 2.0%에서 최대 4.5%까지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됨.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시책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을 제한하여 과도한 인건비 집행 및 방만경영적 요소를 차단하고자 노력함.

-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은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191]』(2015.9.21)에 따르도록[192] 명문화함.

- 경영실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187) 매년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시달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음.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015년 12월 18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시달된 바 있음.

188)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정원외 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모수가 되는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액은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 금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189)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5.12.21.)』 보도자료

190)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은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으로 함. 다만, 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2.8~5.3%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191) '15년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의 1/2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15.11.1~12.31일 기간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인상률의 3/4을 상한으로 적용

192)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5.12.21.)』 보도자료 p.9

- 방만경영 차단을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을 재차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

〈표 Ⅰ－96〉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4.5% 이내 인상	2014년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이하인 기관
4.0% 이내 인상	2014년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이하인 기관
2.0% 이내 인상	2014년 평균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5.12.21)』을 참고하여 작성
주: 1.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은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임. 다만, 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2.8~5.3%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2. 산업별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 4월 발표한『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활용
3.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예산편성지침상 명시된 기본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3.8%를 적용

□ 2016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대로 2016년도 총인건비를 집행하여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5년도 집행액에서 감액한 후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토록 함.[193]

-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설정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3.0%)을 비교해보면, 공기업을 제외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1.1%와 1.5%로 인상률 상한선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193)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6.1.19.), p.7

○ 공기업은 2016년 정규직인 직원의 평균보수 증가율이 4.9%로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정규직 1인당 직원 평균보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증가율(4.9%)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산출 시 제외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 인상 수준이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더불어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산출 대상에는 정규직인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되는 반면, 알리오시스템의 '정규직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에 해당하는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것으로 양자의 산출범위가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음.

2) 상임임원 연봉 수준

□ 2016년 기관장(상임),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수준을 살펴보면[194], <표 Ⅰ-97>과 같음.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약 1억 6,462만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2억 118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3,656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7,460만원으로 공기업보다는 다소 낮으나(△2,658만원)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998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1억 5,430만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1,032만원)임.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 약 4,688만원 낮은 수준이고 준정부기관보다 약 2,03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임.

194)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임원 연봉 현황'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출함.

〈표 Ⅰ－97〉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관장	전체 평균	159,980	160,851	151,129	159,701	164,621	4,920	3.1
	· 공기업	234,377	221,858	164,114	185,987	201,180	15,193	8.2
	· 준정부기관	155,776	161,137	155,607	167,594	174,596	7,002	4.2
	· 기타공공기관	148,008	149,831	146,887	151,786	154,300	2,514	1.7
상임이사	전체 평균	139,531	142,466	126,835	135,858	139,749	3,892	2.9
	· 공기업	156,143	154,566	126,975	139,883	150,821	10,937	7.8
	· 준정부기관	135,422	142,226	128,685	139,393	145,991	6,598	4.7
	· 기타공공기관	132,422	134,427	124,664	129,583	127,042	△2,540	△2.0
상임감사	전체 평균	135,445	140,221	134,728	144,867	151,436	6,568	4.5
	· 공기업	132,536	138,777	128,062	141,018	154,364	13,346	9.5
	· 준정부기관	137,412	144,886	140,533	152,136	157,787	5,651	3.7
	· 기타공공기관	136,103	137,444	135,090	141,795	143,852	2,058	1.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에서 발췌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을 최근 5년간 평균연봉 추이로 살펴보면 <그림 Ⅰ-25>, <그림 Ⅰ-26>, <그림 Ⅰ-27>과 같음.

○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모두 공통적으로 전년대비 2014년도에 평균 연봉이 하락했다가 그 다음 해인 2015년도에 상승한 것이 특징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하고[195],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개정된 보수지침에 따라 상임임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할 것을 명문화한 바 있음[196].

195) 상임임원 연봉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80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제4조 제5항 및 제6항).
②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상한을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0분의 200에서 100분의 120으로 하향하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함(제6조 제1항).
③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상한(직전년도 기본연봉액)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신설함(제6조의2, 제9조의2, 재12조의2).

196)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5), p80에서 발췌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러한 조치들이 2014년에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2014년 상임임원 평균연봉이 과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 또한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와 마찬가지로 2014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2013년도 경영평가결과 C등급 이상) 기관수가 감소하고 부채 상위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제한됨(당초 성과급 지급률의 50% 수준으로 하향조정)에 따라 상임임원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 상임임원 평균연봉 역시 2014년에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모든 유형과 전체 공공기관이 2014년에 하락하고 2015년부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2014년에도 가장 큰 폭(26%, △5,774만원)으로 하락했다 2014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13년(2억 2,186만원)보다 약 2,068만원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2014년 이후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이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의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은 2014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고 있음

○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경우, 모든 유형과 전체 공공기관이 2014년에 하락했다 2015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2014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에는 하락 전인 2013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함.
- 준정부기관은 2014년 이후 상임이사의 평균연봉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도 연봉수준(1억 4,599만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2014년 이전에는 공기업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이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전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유형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세 유형 모두 2013년 상승, 2014년 하락, 2015년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와는 다르게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최근 5년간 준정부기관이 가장 높은 수준임.

-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간 격차도 작은 편이고 기타공공기관이 더 높았던 해(2012년, 2014년, 2015년)도 존재함.
-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2013년 상승폭에 비해 2014년 하락폭이 컸던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상임감사 평균연봉 수준이 2014년도가 가장 낮았던 반면, 준정부기관은 2013년 상승폭에 비해 2014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2012년 상임감사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낮음.

〈그림 Ⅰ－27〉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기관장)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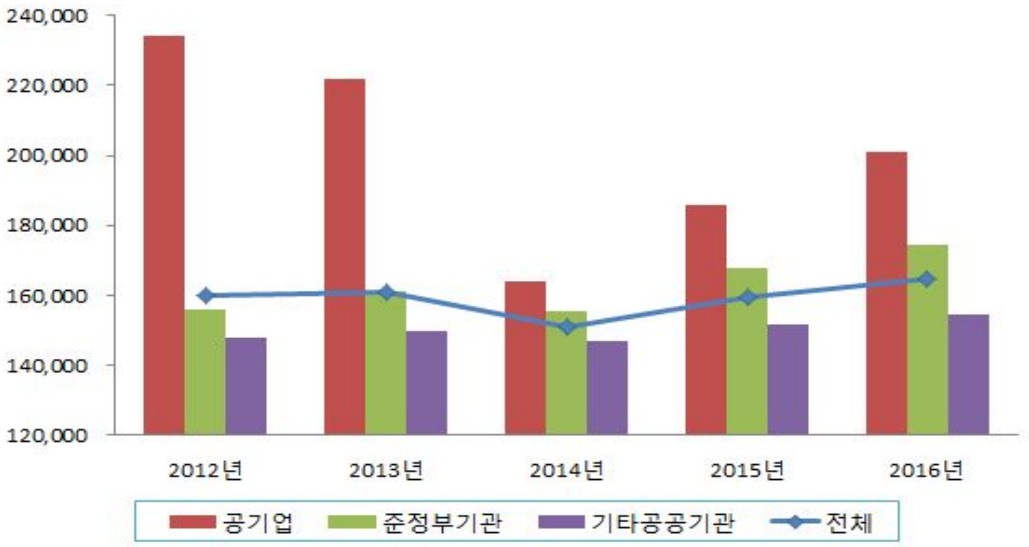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2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상임이사)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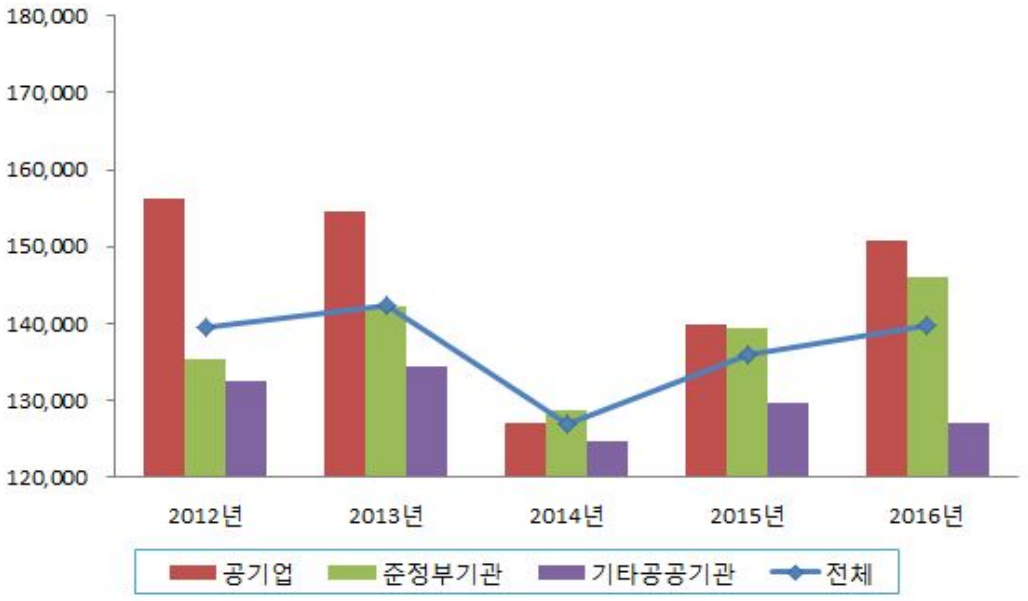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29〉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상임감사)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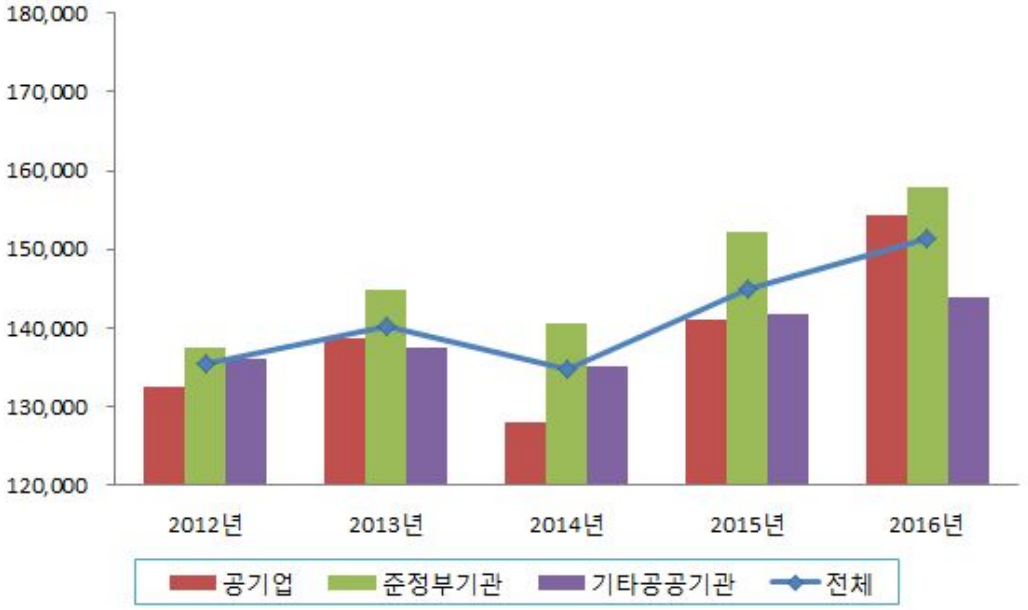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Ⅰ-28>, <그림 Ⅰ-29>, <그림 Ⅰ-30>과 같음.

○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2015년인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증가율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대비 2014년 평균연봉이 감소율이 컸던 순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남.

○ 2012~2016년 사이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회계연도는 2014년도임.

- 2013년 대비 2014년에 공기업(△7.7~△26%), 준정부기관(△3.0~△9.5%), 기타공공기관(△1.7~△7.3%) 평균연봉이 모두 하락했었음.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4년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함.

○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2015년에 비해 둔화됨.

〈그림 Ⅰ－30〉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기관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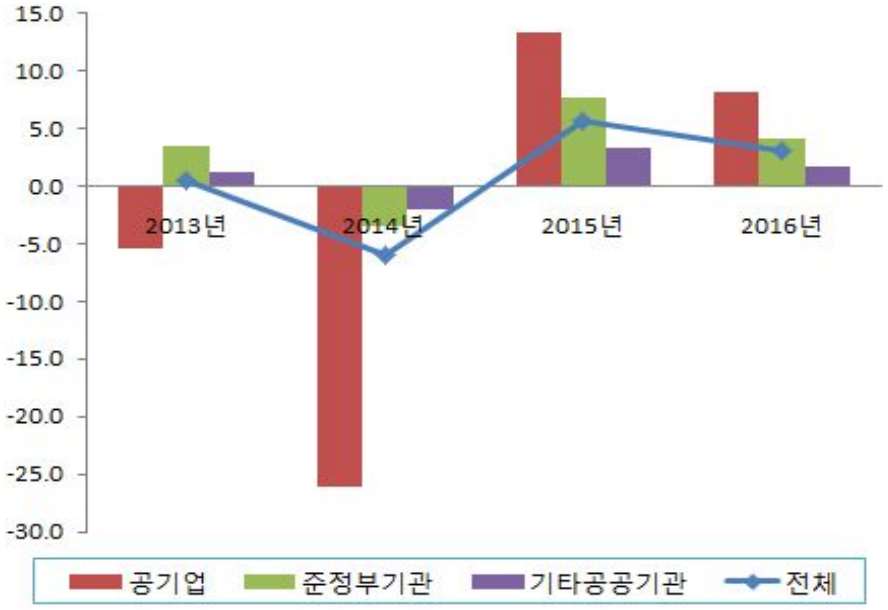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31〉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상임이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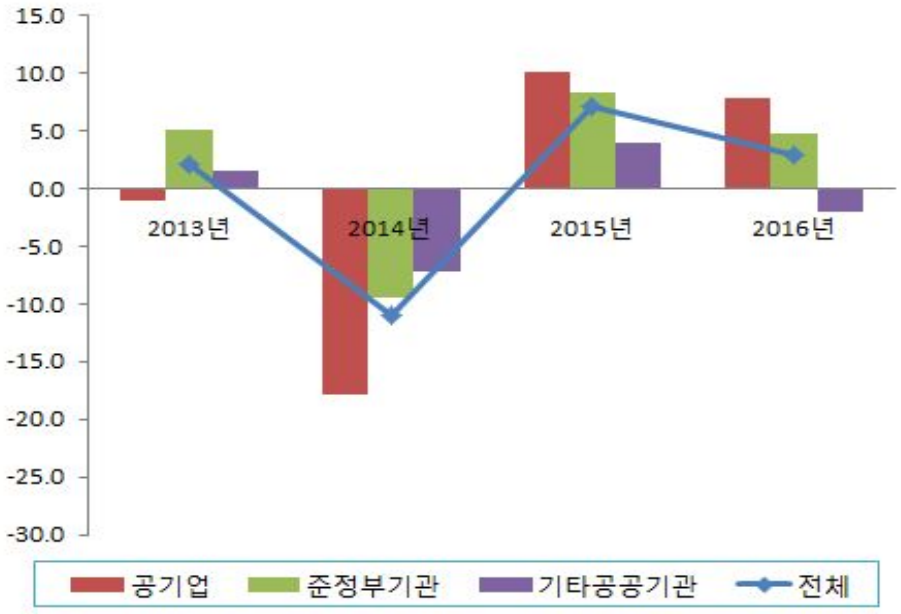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32〉 최근 4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감율(상임감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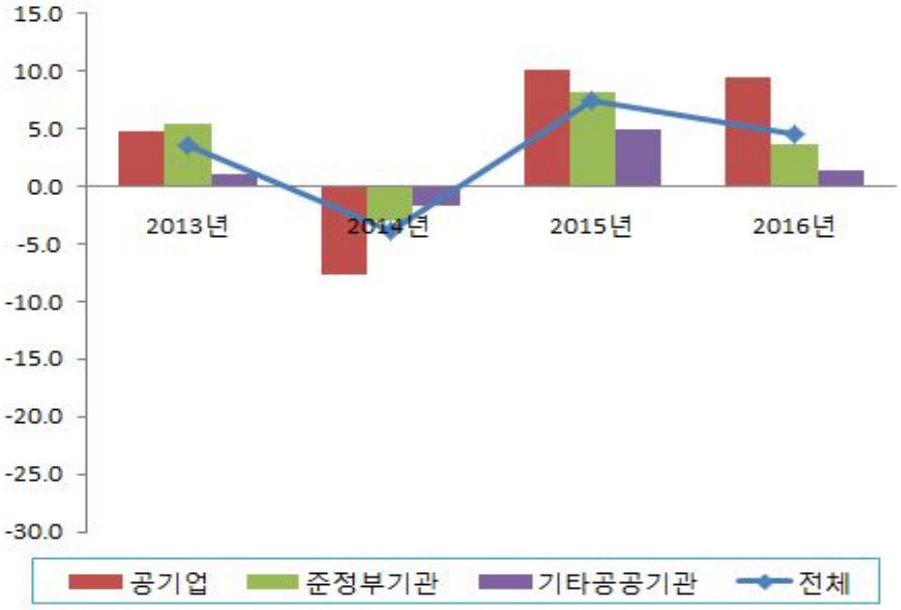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3) 복리후생비 수준

□ 2016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026억 원임[197].

○ 공공기관 인력 증가(현원 11,175명, 4.1%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3억 원(2.2%)이 증가함.[198]

○ 공공기관 유형별로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3,613억 원, 준정부기관이 1,819억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593억 원 수준임.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중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5.0%, 기타공공기관이 32.3%, 준정부기관이 22.7%를 차지함.

○ 임직원 현원 규모 순(공기업 114,973명, 기타공공기관 90,293명, 준정부기관 80,118명)대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규모도 연동하여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Ⅰ－98〉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9,665	9,429	7,475	7,853	8,026	173	2.2
공기업	5,044	4,730	3,130	3,598	3,613	15	0.4
·시장형	2,489	2,436	1,410	1,867	1,925	58	3.1
·준시장형	2,554	2,293	1,721	1,731	1,688	△43	△2.5
준정부기관	1,925	1,906	1,777	1,779	1,819	40	2.2
·위탁집행형	1,365	1,332	1,262	1,262	1,290	28	2.2
·기금관리형	560	575	514	517	530	13	2.5
기타공공기관	2,696	2,793	2,568	2,476	2,593	117	4.7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에서 발췌

197) 알리오시스템은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해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 재해보상, 재해부조, 기타 항목 등 13개의 개별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유·무상 지원형태로 지급된 복리후생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여기서는 알리오시스템에 기관별로 공시되어 있는 임직원 대상 13개 복리후생항목별 무상지급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정보를 활용함

198)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p.4

□ 최근 5년간 무상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 Ⅰ-31>)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유사한 추이를 보임.

○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이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대폭 감소(1,403억 원, 14.8%)함.

○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3년 소폭 감소, 2014년 대폭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소폭 증가의 형태로 변화해 옴.

- 이러한 유사점이 발견되는 이유는 복리후생비 총액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유형에 비해 복리후생비 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서 공공기관 전체 규모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두 유형보다 크기 때문임.

○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공기업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은 최근 5년 중 2014년에 지급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가 가장 작은 수준이고, 이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6년 말 기준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는 2012년 지급액보다 크게 적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3개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2.2% 증가했으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2012년보다는 낮음.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규모는 2013년 가장 높았다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여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Ⅰ－33〉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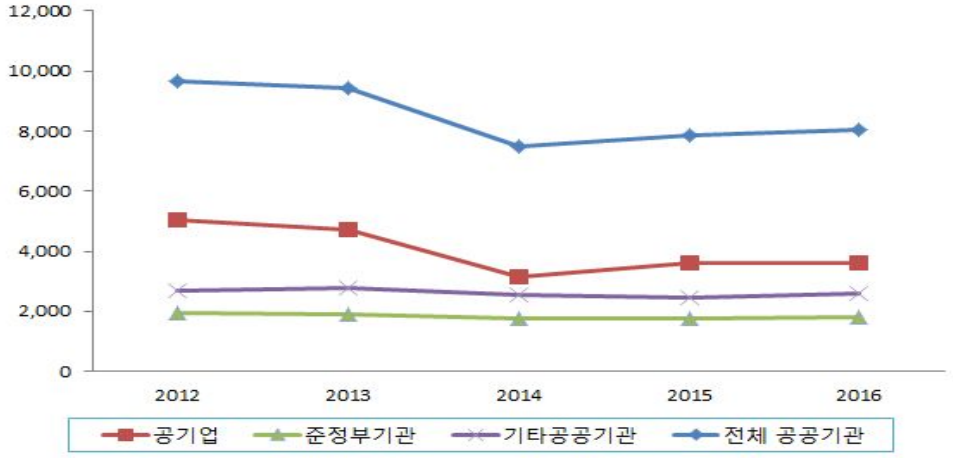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증감율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증감율 변화 추이는 전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형별로도 유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Ⅰ-32>).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로 2013년 대비 2014년 복리후생비 총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공기업으로 2013년 대비 2014년 감소율이 33.8%임.

○ 공기업 유형은 2014년의 높은 감소율에 따른 반등효과로 2015년에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15.0%)을 보임.

○ 2016년에는 모든 유형이 증가세이며 특히 기타공공기관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그림 Ⅰ－34〉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율 추이(무상지원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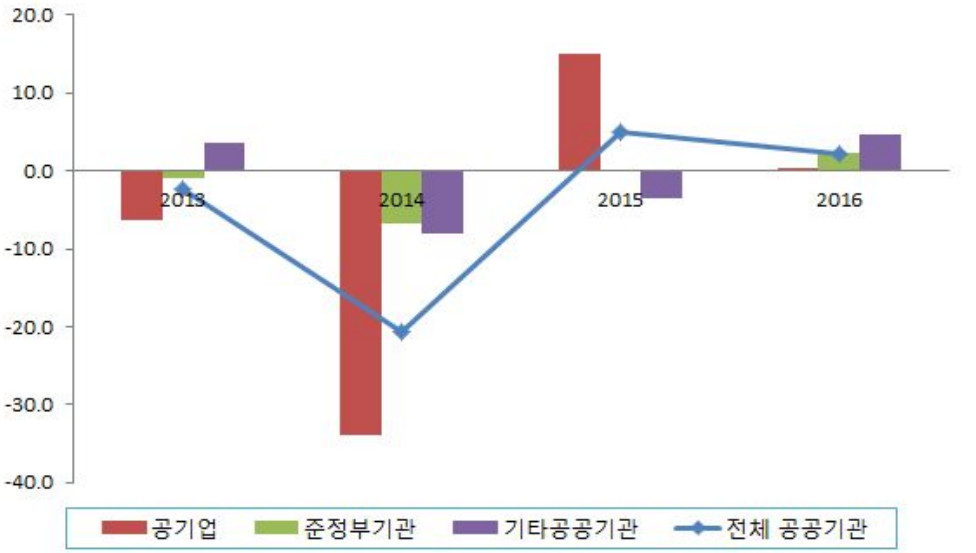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선택적복지, 학자금, 보육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주택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Ⅰ-99>와 같음.

○ 학자금과 경조사비, 주택자금 항목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특히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선택적 복지, 문화여가비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보육비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99〉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3(A)	'15(B)	'16(C)	'13년 대비		'15년 대비	
				증감 (C-A)	증가율	증감 (C-B)	증가율
선택적 복지	3,227	2,938	2,962	△265	△8.2	24	0.8
학자금	1,370	1,080	1,059	△311	△22.7	△21	△1.9
보육비	297	302	417	120	40.4	115	38.3
문화여가비	367	306	308	△59	△16.1	2	0.8
경조사비	347	297	269	△78	△22.5	△28	△9.4
주택자금	43	43	26	△17	△39.5	△17	△39.5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에서 발췌

〈그림 Ⅰ-35〉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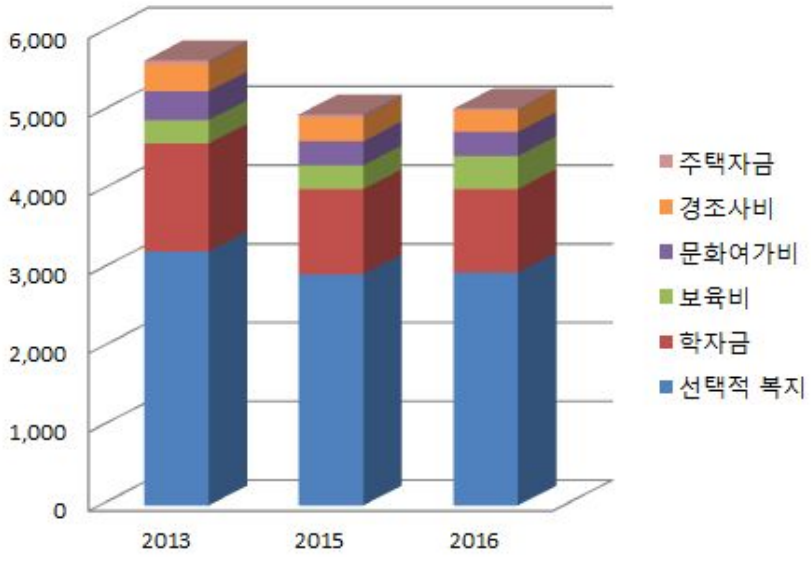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36〉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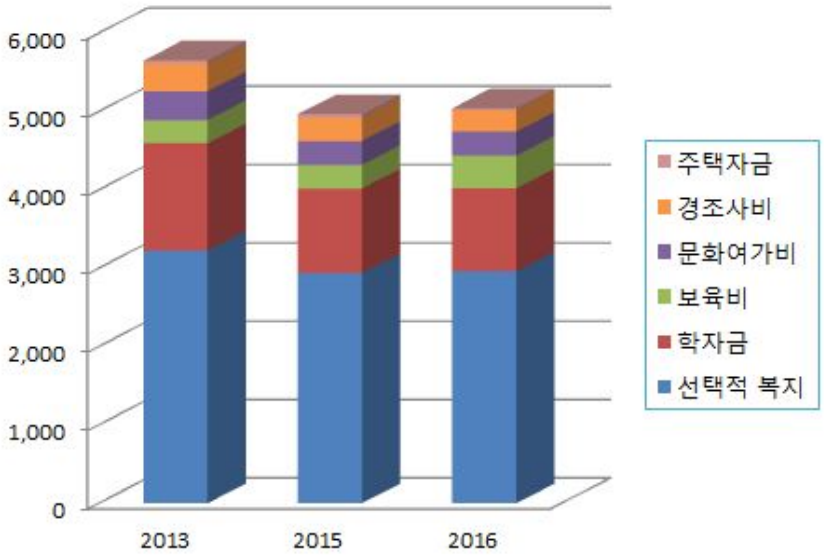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경영실적 호전과 2015년 예산편성지침상 직원 1인당 기금누적액 상한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을 폐지토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14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고 조속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경영실적평가에 관련 평가내용을 강화하고 알리오시스템에 '복리후생 8대 항목'이라는 공시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16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3,033억 원 중 공기업 출연금은 약 2,470억 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며 최저 수준이었던 2014년 400억 원 대비 517.5% 증가(약 2,070억 원)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118억 원)는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1.3%정도(약 27억 원)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체의 14.7% 수준인 445억 원 수준이며 전년대비 2.8% 정도(약 13억 원) 감소함.

〈표 Ⅰ－100〉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178	1,848	821	2,227	3,033	806	36.2
공기업	1,069	803	400	1,636	2,470	834	51.0
· 시장형	371	400	148	1,247	2,214	967	77.5
· 준시장형	698	403	252	389	255	△134	△34.4
준정부기관	190	163	111	133	118	△15	△11.3
· 위탁집행형	100	93	58	60	73	13	21.7
· 기금관리형	89	70	54	72	45	△27	△37.5
기타공공기관	919	881	310	458	445	△13	△2.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에서 발췌

〈그림 Ⅰ－37〉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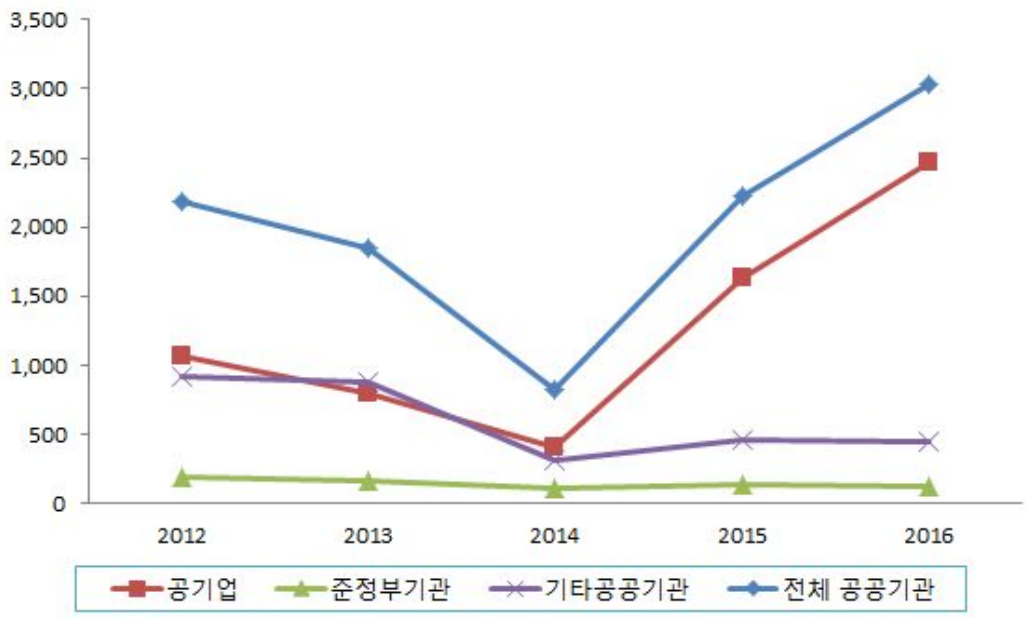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7.5.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바. 외부 평가결과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199]

(1) 기관 및 기관장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15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함.

○ 경영실적평가는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도에 최초 실시되어 33년째 시행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00]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경영평가단은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를 수행하며 2017년부터 각 평가별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체적인 경영평가단 운영과 개별 평가결과 간 연계성 확보 및 주요 쟁점사항 공유 등을 위해 단장, 총괄간사, 부문간사 등으로 구성된 총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7.6.16.)』 및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 보도자료,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수정)』(2016.12월),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집』(2017.3월)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감사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집』(2017.7월)을 참고하여 작성.

200)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평가를 통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확정하여 주무부처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에 주무부처별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함.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경상경비 예산 증액(1%p이내)이 반영될 수 있음.
-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1%p)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2016.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7년 6월 16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

○ 2017년 실시한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6년도 경영평가편람(수정)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평가 119개 기관, 기관장평가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201].

○ 2017년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는 109명 외에 기관장 평가위원회 5명과 감사 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함.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임기를 제한(3년 이상 연임 또는 최근 6년 중 4년 중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특정위원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제도를 보완함.
-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평가단 운영 규모를 크게 축소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증가시키고자 함.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 중 '기관 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관평가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를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201) 2017년 2월 舊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통합하여 신설출범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아님.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는 통합이전 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Ⅰ, 공기업Ⅱ),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 기금관리, 강소형기관)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 2016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최초로 기관 평가를 수검한 기관은 5개 기관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위탁집행형 유형으로 평가 받음.
- 2016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은 강소형 유형에 포함되어 평가받음.
-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아시아문화원은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기관으로 강소형 유형으로 평가 받음.

○ 기관평가의 평가지표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등 2개로 나누어 20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202],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비계량지표의 비중을 35%에서 40%로 높여 경영평가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함.

- 경영관리 범주의 비계량 지표에서는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지표를 '경영전략 수립 및 사회적 책임'과 '기관의 경영혁신' 지표로 분리하여 평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203]에 따라 성과연봉제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함.
- 주요사업 범주의 개별 지표에 관해서는 사전에 2등급으로 평가하던 난이도 보정계수 적용을 폐지하고, 종전 주요사업 전체에 대해 적용하던 비계량 평가를 주요 사업 범주별로 세분화 하여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식(A^{+}~E^{0})으로 전환함.

○ 2016년도 기관평가는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분리하여 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하였고, 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 뿐 아니라 범주별 평가결과도 산출한 점이 종전과 크게 다름.

- 2015년도 기관 평가까지는 강소형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통합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도 기관 평가부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그리고 강소형 유형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상대평가하고 최종 평가등급을 산정함.
- 산출된 종합점수와 범주별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구분하여 산출함.

---

202)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는 <부록9>를 참고

20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2017.6.16.)」 보도자료.

□ 공운법 제15조, 제48조에 따라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제도를 실시함.

○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운법 제31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과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서를 상호 체결함.

- 경영성과협약에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와 1년 단위의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 기관장은 상호 체결한 경영성과협약에 대해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기관장 평가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 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29명임.

- 29명의 기관장 중 공기업 기관장은 4명,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25명임.

○ 2016년도 기관장 평가는 2015년도 평가의 틀을 유지하여 평가범주를 '공통과제'와 '성과과제'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여 설계하여 기관장 본인의 노력및 성과(60~70%)와 기관평가(30~4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공통과제 범주는 평가대상인 기관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로써 리더십 지표와 책임경영 지표가 이에 해당함.
- 성과과제 범주는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지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 그리고 2개의 중장기 전략과제 지표로 구성되고, 이 중 중장기 전략과제 지표는 기관별 '기관장 경영성과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기관장별 맞춤형 고유지표에 해당함. 전략과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기관 평가의 해당 지표 평가결과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부채 중점관리 기관과 2014년도 중간평가대상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지속적 방만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성과과제 범주 내 지표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함.

○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관 평가결과와 달리 3등급의 절대평가체계(우수/보통/미흡)로 설계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는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

〈표 Ⅰ－101〉 2016년도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대상 기관

유 형		평가대상기관
공기업(30개)	공기업Ⅰ(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20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89개)	기금관리형(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1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57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16.12월) 및『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기관장 평가대상기관(29개 기관)은 이탤릭체 및 밑줄로 표시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 출범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2)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3점) 및 조기이행가점(1점)을 2016년도 평가시 제외함.

- 해당 지표의 평가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조치함.

○ 2015년도 평가시 신설한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지표는 신설 첫 해와는 다르게 기관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경영혁신 지표에서 점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예고된 지표에 대한 기관의 사전 대응력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함.

□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이 A등급(우수)은 16개 기관, B등급(양호)은 48개 기관, C등급(보통)은 30개 기관, D등급(미흡)은 13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4개 기관임.

○ 2015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종합 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등 4개 기관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3개 기관과, 그리고 강소형 유형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04],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등 9개 기관임.

- 공기업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와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은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기관 평가에서도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함.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2014년도부터 3년 연속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임.

- 이외 9개 기관은 2015년도보다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임. 이 중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등 4개

204) 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관은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이며,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도보다 평가등급이 4단계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

○ 종합등급 E등급인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개 기관이 해당함.

- 한국무역보험공사(B등급→E등급)와 국립생태원(C등급→E등급) 등 2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함.
- 대한석탄공사는 평가등급이 1단계(D등급→E등급) 하락함.
- 아시아문화원은 2016년 최초 지정되어 처음 기관평가를 수검한 기관으로 E등급으로 평가됨.

〈표 Ⅰ－102〉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공기업		2015	30	0	8	10	6	4	2
		2016	30	0	4	15	5	5	1
준정부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2015	31	0	6	20	4	1	0
		2016	32	0	3	16	9	3	1
	·강소형	2015	55	0	6	23	20	4	2
		2016	57	0	9	17	24	5	2
전 체		2015	116 (100%)	0	20 (17.2%)	53 (45.7%)	30 (25.9%)	9 (7.8%)	4 (3.4%)
		2016	119 (100%)	0	16 (13.4%)	48 (40.4%)	38 (31.9%)	13 (10.9%)	4 (3.4%)
		5년 평균 ('11~15년도)	114 (100%)	0.2 (0.2%)	14 (12.4%)	47 (41.0%)	35 (31.1%)	12 (10.3%)	6 (5.0%)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및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103〉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 현황

등급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32개)	강소형기관(57개)
S	-	-	-
A (16개)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9)
B (4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7)
C (38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5)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9)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D (13개)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5)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E (4개)	대한석탄공사 (1)	한국무역보험공사 (1)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2)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1. 준정부기관(32개)은 평가유형 중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의미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통합)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향된 모습을 보임.

○ 2015년도 기관 평가결과에 비해 2016년도 평가결과에서는 종합등급이 A등급과 B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감소하고 C등급과 D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2015년 평가에서는 62.9%였으나, 2015년 평가에서는 53.8%로 9.1%p 감소함.
- 종합등급이 C등급 또는 D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2015년도 평가결과 상 33.7%였으나, 2016년도 평가결과에서는 42.8%로 9.1%p 증가함.

○ 지난 5년간(2011~2015년도) 평균적인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종합등급이 E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과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종합등급이 E등급인 기관의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에 비해 1.7%p 하락(5.0% →3.4%)함.
-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비중이 감소한 등급은 S등급, B등급, E등급이나 대체로 감소폭은 크지 않음.

○ 최하위 등급인 E등급 기관의 비중은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기관이고, 비중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Ⅰ-38〉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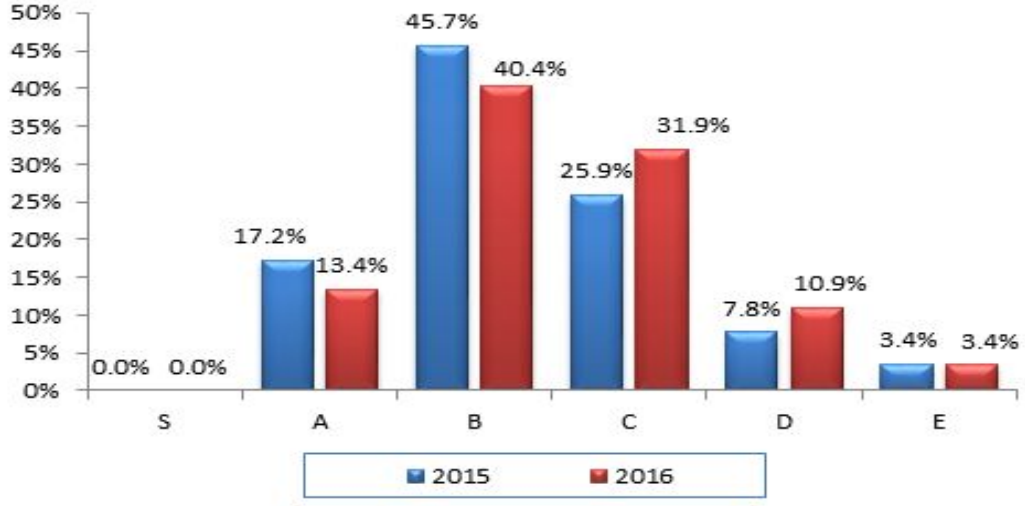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및『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39〉 최근 5년 평균 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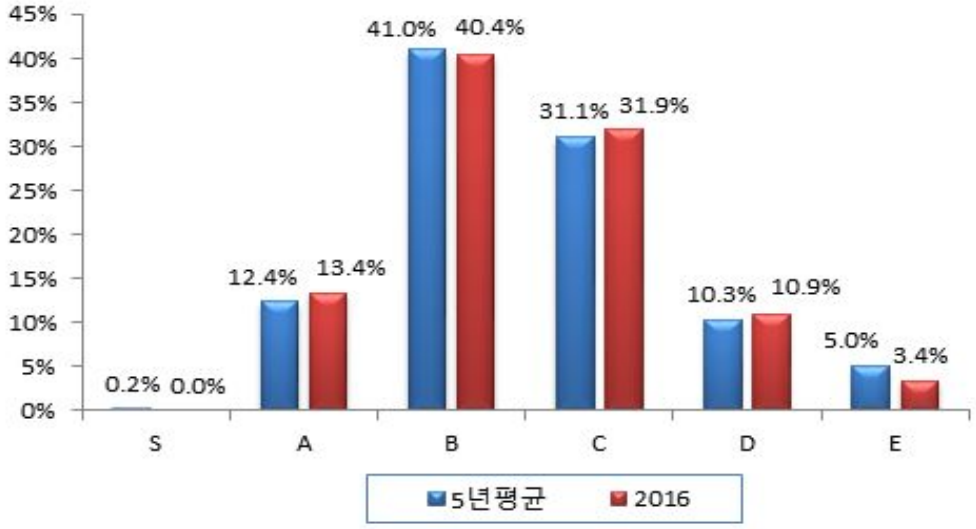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및『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평가유형별 기관 평가결과의 종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는 B등급 분포가, 강소형은 C등급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공기업,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강소형의 분포가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의 경우, 종합등급이 B등급인 기관의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C등급과 D등급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두 등급은 규모가 동일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동일하나, C등급, D등급 순으로 비중이 높아 공기업과 차이를 보임.
- 강소형은 C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고, D등급 이하의 비중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모든 유형에서 E등급 기관의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강소형 중 E등급을 받은 기관이 2개이고, 공기업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1개 기관이나 전체 기관 수가 강소형 유형이 많아 결과적으로 비중은 비슷한 수준임.

○ 전년대비 종합등급의 변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전년대비 A등급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강소형은 A등급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은 2015년도 평가보다 B등급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C등급은 전년도보다 비중이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2016년도의 C등급과 D등급의 비중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A등급과 B등급의 비중이 각각 감소하였고 C등급 이하 평가등급의 비중이 2015년도 16.1%에서 2016년도 40.6.%로 24.5%p 증가함.
- 강소형 유형은 A등급과 C등급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B등급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

〈그림 Ⅰ-40〉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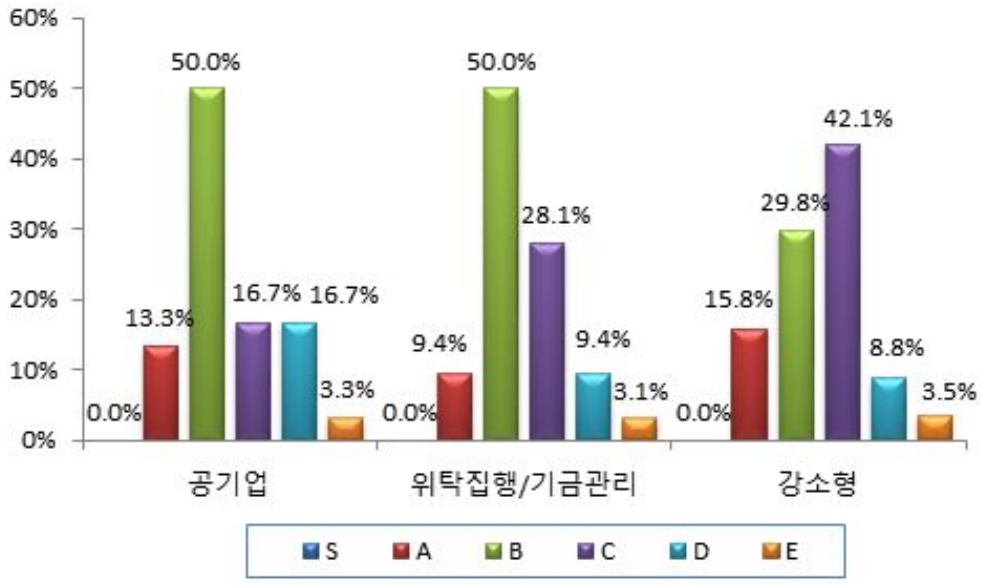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41〉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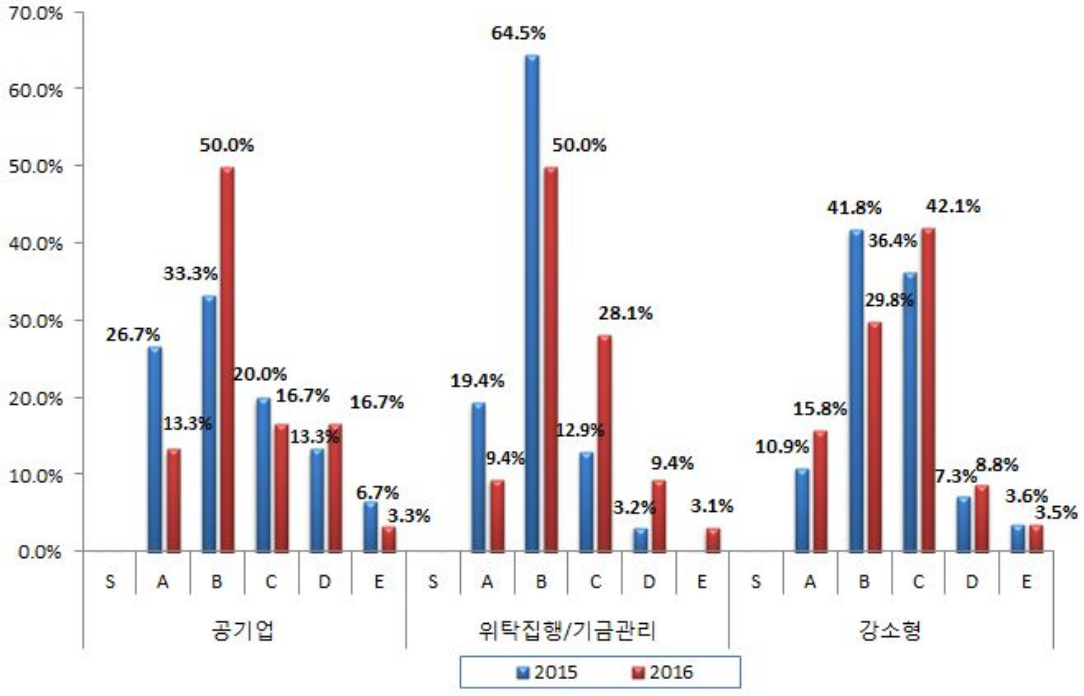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및『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2015년도 및 2016년도 기관 평가를 모두 수검한 1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평가등급 변동을 살펴본 결과,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25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21.9%를 차지함.

○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은 25개이며 이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4단계 상승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3단계 상승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19개 기관의 평가등급이 1단계 상승하였으며, 4개 기관의 등급이 2단계, 1개 기관이 3단계 상승함.
- 3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중 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개선된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주)(2014년 C등급→2016년 A등급)과 한국석유관리원(2014년 C등급→2016년 A등급)임.

○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관은 총 39개 기관으로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3단계가 하락하여 E등급을 부여받음.

- 전년대비 종합등급이 1단계 하락한 기관이 31개 기관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종합등급이 2단계 하락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국립생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며 특히 국립생태원은 2015년도 C등급에서 2016년도 E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함.
- 평가등급이 하락한 21개 기관 중 3년 연속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임.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4년도에 A등급이었으나, 지난 3년간 평가등급이 하락하여 2016년도에 C등급에 해당함.

〈표 Ⅰ－104〉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114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가등급 상승	25 (21.9%)	19	4	1	1
평가등급 유지	50 (43.9%)	-	-	-	-
평가등급 하락	39 (34.2%)	31	6	2	1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및『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6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지정된 아시아문화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 2016.7.에 통합 신설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 Ⅰ－105〉 전년대비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25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급 유지 (50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급 하락 (39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및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2016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지정된 아시아문화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 2016.7.에 통합 신설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2016년도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Ⅰ-106>과 <표 Ⅰ-107>과 같이 나타남.

〈표 Ⅰ－106〉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종합등급기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기획재정부	1	0	1	0	0	0	0
교육부	3	0	0	2	1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0	2	3	4	0	0
외교부	1	0	0	0	1	0	0
행정안전부	1	0	0	0	0	1	0
문화체육관광부	8	0	1	2	2	2	1
농림축산식품부	5	0	0	3	2	0	0
산업통상자원부	27	0	3	10	9	3	2
보건복지부	7	0	2	3	2	0	0
환경부	4	0	0	1	1	1	1
고용노동부	6	0	2	2	2	0	0
여성가족부	2	0	0	0	1	1	0
국토교통부	14	0	2	11	1	0	0
해양수산부	9	0	0	3	3	3	0
중소벤처기업부	4	0	0	1	2	1	0
방송통신위원회	2	0	0	0	1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0	1	0	0
금융위원회	4	0	0	1	3	0	0
공정거래위원회	1	0	1	0	0	0	0
국가보훈처	2	0	0	1	1	0	0
인사혁신처	1	0	0	1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0	1	0	0
경찰청	1	0	1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0
산림청	1	0	1	0	0	0	0
농촌진흥청	1	0	0	1	0	0	0
특허청	1	0	0	0	0	1	0
기상청	1	0	0	0	1	0	0
합 계	119	0	16	48	38	13	4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표 Ⅰ-107〉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1개)	(A등급)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3개)	(B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C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개)	(A등급)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B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C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교부 (1개)	(C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D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8개)	(A등급) 한국관광공사 (B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C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E등급) 아시아문화원
농림축산식품부 (6개)	(A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C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27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관리원 (B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C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D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E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건복지부 (7개)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환경부 (4개)	(B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C등급) 한국환경공단 (D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등급) 국립생태원
고용노동부 (5개)	(B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C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무부처	기관명
여성가족부 (2개)	(B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4개)	(A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B등급)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C등급)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9개)	(B등급)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C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D등급)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4개)	(A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B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D등급) 기술보증기금
방송통신위원회 (2개)	(C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C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4개)	(B등급) 예금보험공사 (C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A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B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등급) 독립기념관
인사혁신처 (1개)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C등급)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1개)	(A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C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1개)	(A등급)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B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1개)	(D등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1개)	(C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3.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적용된 범주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이상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와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 강소형)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A등급에 해당됨.

○ 공기업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등 3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E등급으로 평가 받음.
- 공기업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의 등급 차이가 2단계 이상 차이 나는 기관은 없음.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205]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기관임.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E등급으로 평가받음.
- 교통안전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범주간 등급 차이가 2단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등급은 B등급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B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 받음.

○ 강소형 기관 중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9개[206] 기관이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1개[207] 기관은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음.

- 아시아문화원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E등급으로 평가받음.

---

205)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한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됨

206)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에 해당됨

2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됨.

- 한국전력거래소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기관으로, 경영관리 범주는 A등급이나, 주요사업 범주가 E등급으로 평가받아 종합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 받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주요사업 범주는 B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가 D등급으로 받아 종합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됨.
- 국립생태원 역시 주요사업 범주는 C등급에 해당하나, 경영관리 범주가 E등급으로 종합등급은 E등급으로 나타남.

○ 범주별 평가등급이 동일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10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9개 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강소형 19개 기관으로 나타남.

- 공기업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두 범주 모두 A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기관이 B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 C등급, 대한석탄공사가 D등급으로 범주별 등급이 동일하게 나타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B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범주별 등급이 같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C등급,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D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E등급으로 두 범주에서 동일한 등급을 받음.
- 강소형 유형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두 범주 모두 A등급을 받았고, B등급은 7개 기관[208], C등급은 9개 기관[209], E등급은 아시아문화원 1개 기관이 범주별 등급이 동일하게 나타남.

208) 7개 기관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당됨.

209) 9개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해당됨.

〈표 Ⅰ-108〉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공기업) 현황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6)
B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5)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9)
C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10)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2)
D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5)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2)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2)
E	대한석탄공사 (1)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1)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에서 발췌

〈표 Ⅰ－109〉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위탁집행·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현황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3)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7)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6)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6)
C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9)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9)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7)
D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교통안전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4)
E	한국무역보험공사 (1)	한국무역보험공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2)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강소형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준정부기관의 평가 결과임

〈표 Ⅰ-110〉 2016년도 기관 평가결과(강소형 준정부기관) 현황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9)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1)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8)
C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D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
E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2)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	아시아문화원 한국전력거래소 (2)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성과급 차등 지급, 부진기관 인사조치,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예산상 조치를 시행함.

○ 종합등급과 범주별 등급을 기준으로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4개 기관에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2017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따라 부채중점관리기관(18개)은 '재무예산의 관리 및 성과' 평가결과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상기관 모두 해당 평가에서 C등급(보통) 이상의 결과를 받아 지급 제한은 실시되지 않음.

○ 기관평가에서 종합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됨.

-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3명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2016년 12월 기준)이고,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장인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함.[210]

210) E등급이나 재임기간 요건을 미달하여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임

- D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기관장 재임기간 요건에 미달되는 4개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고[211] 9개 기관이 경고 조치를 받음[212].

○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함.

〈표 Ⅰ-111〉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250%이내				
	종 합	125	100	75	50	-
	경영관리	62.5	50	37.5	25	-
	주요사업	62.5	50	37.5	25	-
투자기관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300%이내				
	종 합	150	120	90	60	-
	경영관리	75	60	45	30	-
	주요사업	75	60	45	30	-
기관장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120%이내				
	종 합	60	48	36	24	-
	경영관리	30	24	18	12	-
	주요사업	30	24	18	12	-
상임임원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100%이내				
	종 합	50	40	30	20	-
	경영관리	25	20	15	10	-
	주요사업	25	20	15	10	-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확정(2016.12.8.)』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11) D등급이나 재임요건에 미달하여 경고조치가 제외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이 해당됨

212)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임.

〈표 Ⅰ－112〉 201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기준월봉의 100%이내				
	종 합	50	40	30	20	-
	경영관리	25	20	15	10	-
	주요사업	25	20	15	10	-
기관장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60%이내				
	종 합	30	24	18	12	-
	경영관리	15	12	9	6	-
	주요사업	15	12	9	6	-
상임임원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60%이내				
	종 합	30	24	18	12	-
	경영관리	15	12	9	6	-
	주요사업	15	12	9	6	-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확정(2016.12.08.)』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3)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29명의 기관장에 대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4명(82.8%)이 '보통' 등급(60점~80점)으로 평가됨.

○ '우수' 등급(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공기업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장만 사장이며 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채운 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박기동 사장 등 3명임.

○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석우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의 김세훈 위원장 등 2명임.

〈표 Ⅰ－113〉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분포

(단위: 명)

구 분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준	기관장수	우수 (80점이상)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미흡 (60점미만)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1년 6개월 이상 재임	29	3	24	2
		(100%)	(10.3%)	(82.8%)	(6.9%)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에서 발췌

〈표 Ⅰ－114〉 2016년도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급	공기업(4명)	준정부기관(10명)	강소형기관(15명)
우수 (3명)	해양환경관리공단(장만) (1)	중소기업진흥공단(임채운) 한국가스안전공사(박기동) (2)	-
보통 (24명)	울산항만공사(강종열) 주택도시보증공사(김선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곽성문) (8)	공무원연금공단(최재식) 교통안전공단(오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김재홍) 예금보험공사(곽범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영순) 한국산업인력공단(박영범) 한국주택금융공사(김재천) (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박철수) 독립기념관(윤주경) 선박안전기술공단(목익수) 우체국금융개발원(김홍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윤종록)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김진만) 한국광해관리공단(김익환) 한국디자인진흥원(정용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박명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황진택) 한국인터넷진흥원(백기승) 한국전력거래소(유상희) 한국정보화진흥원(서병조) (13)
미흡 (2명)	-	-	시청자미디어재단(이석우) 영화진흥위원회(김세훈) (2)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7.6.16.)』 보도자료에서 발췌
주: 준정부기관(10명)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의미

2)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13]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舊 정부투자기관(현, 공기업이 대부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舊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현, 기타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체감도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214].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 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16년에는 조사의 형평성 및 고객만족경영 노력의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기관을 확대(48개 기관 증가)함.

---

213)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 공시자료, 『2016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2016.7.1.)』 및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2017.3.29.)』 보도자료를 참고

214) 공공기관의 직접 수혜 고객이 아닌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사업 및 다양한 활동의 성과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016년 통합조사 대상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며 이 중 인지율 20%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88개 기관이 조사대상임(참고: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기본 계획(안)(2016.7.1.)』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함.

- 출연연구기관(56개),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5개)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의 대상이 됨.
- 당해연도 신규지정 공공기관(12개)도 예산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게 됨.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18개)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주고객이 특정기업(한국수력원자력)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준정부기관), 주고객이 외국인인 세종학당재단과 그랜드코리아레저(기타공공기관) 등이 해당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2015년부터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 상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공공기관 그룹분류는 아래의 <표 Ⅰ-115>과 같으며 공공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D등급)하고 있음.

〈표 Ⅰ－115〉 기획재정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그룹분류(2016년 기준)

유형	그룹	그룹 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	① 시장경쟁	고객이 시장에서 타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② 국민생활증진	고객(국민)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③ 산업진흥	고객(기업)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④ 안전·평가관리	고객의 행위·시설 등을 평가/검사하는 경우
	⑤ 시설기반서비스	시설(혹은 그 산출물)을 관리·공급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	① 시장경쟁	고객이 시장에서 타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② 국민생활증진	고객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③ 산업진흥	고객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④ 안전/평가관리	고객의 행위·시설 등을 평가/검사하는 경우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2017.3.29.)』보도자료에서 발췌

□ 고객만족도 조사는 PCSI 2.0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2015년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적용되었으며 2016년에도 적용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Ⅰ-116>과 같음.

○ PCSI 지수는 서비스품질과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여건품질에 대해 조사함.

〈표 Ⅰ-11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 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6.7.1.)』에서 발췌

□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음의 <표 Ⅰ-117>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며 전 기관에 공통 설문문항을 적용해 왔으며 2016년에도 동일한 설문문항이 적용됨.

〈표 Ⅰ－117〉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차원	요소	설문 항목
서비스 상품품질	본원적 문제해결	OO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의 이용 목적에 부합했다
	서비스 효익성	OO기관이 수행한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서비스 완결성	OO기관은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서비스 전달품질	인적상호작용	OO기관의 서비스 이용과정이 원활했다
	커뮤니케이션	OO기관 직원과 나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고객케어	OO기관 직원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했다
서비스 환경품질 (개인)	물리적 공간·환경	OO기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제도/절차 /시스템환경	OO기관은 고객입장을 고려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
	인적자원 역량환경	OO기관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은 우수하다
관계 여건품질 (법인)	협력	OO기관과 우리(기관)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조한다
	상호호혜	OO기관과 우리(기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Win-Win관계 형성)
	관계동등성	OO기관은 우리(기관)를 업무상 대등한 관계로 대우한다
사회적 책임	정책타당성	OO기관은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OO기관은 국가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리성	OO기관의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불일치	기대 대비	OO님께서 '사전에 기대하셨던 것'과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이상점 대비	OO님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다른 기관 대비	OO님께서 경험하셨던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와 비교할 때,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셨습니까?
만족	인지적 만족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바라던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감정적 만족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기관성과	신뢰	OO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기관의 사업/활동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회성과	국민행복	OO기관의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7.29.)』에서 발췌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215],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2점을 반영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 대상인 경우에만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 부처주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객만족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평가(고객만족도)지표로 반영하고 있음.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반영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부처가 주관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권장안을 따르고 있지만[216] 실제 부처별로 평가에 반영하는 가중치는 총 100점 중에 1점~9.1점 수준으로 다양함.

(2)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7년 공공기관 중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11개, 기타공공기관이 183개 등 총 294개 기관[217]임.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23개 기관이며 24개 공기업, 84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115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주무부처 주관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71개 기관으로 3개 준정부기관, 68개 기타공공기관임.

---

215)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 '31.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할 때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216)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권장안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민평가 지표 형태로 가중치 5점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217) 부설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제외한 숫자임

-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2016년 신규지정된 기관으로 2015년 조사는 수검하지 않음.

○ 2017년 1월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총 38개 기관임.

- 2017년 공공기관 중 2016년도 고객만족도조사 미수검기관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8개 기관과 당초 계획상 통합조사 대상이었으나 예산 미확보 혹은 주요사업 특성으로 한시적 조사 유예된 5개 기관, 2017년 신규 지정된 13개 기관, 2017년 수시 지정된 2개 기관임.

〈표 Ⅰ－118〉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구 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 제외	조사 유예	신규 지정	수시 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 조사
공기업	시장형	14	6	6	0	0	0	8	8	0
	준시장형	21	5	5	0	0	0	16	16	0
	소 계	35	11	11	0	0	0	24	24	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1	1	0	0	0	15	15	0
	위탁집행형	73	1	0	1	0	0	72	69	3
	소 계	89	2	0	1	0	0	87	84	3
기타공공기관		208	25	6	4	13	2	183	115	68
전 체		332	38 (100%)	18 (27.9%)	5 (35.4%)	13 (26.2%)	2 (10.2%)	294 (100%)	223 (18.1%)	71 (68.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 (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표 Ⅰ－119〉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기관(2017.1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223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정동극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구분	기관명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23개)	재단법인 국악방송,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항로표지기술협회
주무부처 주관 조사 (71개)	(준정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타공공기관) 재)한식재단, 88관광개발(주), IOM이민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 미수검 기관 (38개)	(공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구분	기관명
조사 미수검 기관 (38개)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국립부산과학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세종학당재단,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투자공사, 한약진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항공안전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6.7.1.))』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17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 29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보면[218] 다음의 <표 Ⅰ-120>과 같음.

〈표 Ⅰ－120〉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82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술의전당,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구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218) 공공기관 부설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구분	기관명
양호 (105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정동극장, ㈜한국건설관리공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산업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관광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보통 (77개)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재단, ㈜워터웨이플러스,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구분	기관명
보통 (77개)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전직교육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병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창업진흥원,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미흡 (30개)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시아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강원랜드, IOM이민정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식품안전정보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
2.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28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2017년 신규 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별 기관 분포 현황은 다음의 <표 Ⅰ-121>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35.7%)이 가장 높음.

○ '우수' 및 '양호' 수준인 기관(187개)의 비중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294개 기관 중 30개 기관으로 10.2%를 차지함[219] .

- 30개 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시아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이며, 나머지 26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임.

219)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강원랜드, IOM이민정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식품안전정보원, 아시아문화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고객만족도조사를 수검하는 24개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23개 공기업(95.8%)이 '우수' 혹은 '양호'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수준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석유공사는 2015년 최하위 등급인 '미흡' 수준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한단계 상승했으며, '양호' 등급인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임.

○ 89개 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87개 기관으로 이 중 52개의 준정부기관(59.8%)이 '우수' 및 '양호'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5개 기관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7개 기관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함.
- 31개(35.6%) 기관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전체의 4.6%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대상과 주무부처 주관 조사대상이 혼재되어 있는데, 208개 기타공공기관 중 183개 기관이 고객만족도조사를 수검했으며, 대부분의 기관(121개, 66%)이 '양호'와 '보통' 수준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기타공공기관은 36개로 19.7%,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26개로 13.9%를 차지함.

〈표 Ⅰ-121〉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구 분			고객만족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조사대상[1]	조사주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분석대상[2]	상승(▲)	유지(-)	하락(▼)
공기업	시장형	14	8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6	1	1	0	8	2	5	1
	준시장형	21	16		15	1	0	0	16	1	14	1
	소 계	35	24		21	2	1	0	24	3	19	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6	15		4	8	2	1	14	6	7	1
	위탁집행형	73	72		21	19	29	3	68	17	42	9
	소 계	89	87		25	27	31	4	83	23	49	10
기타공공기관		208	115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27	35	31	22	69	12	49	8
			68	주무부처 자체조사[4]	9	41	14	4	101	12	71	18
전 체		332	294 (100%)	-	82 (27.9%)	105 (35.4%)	77 (26.2%)	30 (10.2%)	276 (100%)	50 (18.1%)	188 (68.1%)	38 (13.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 (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그림 Ⅰ-42〉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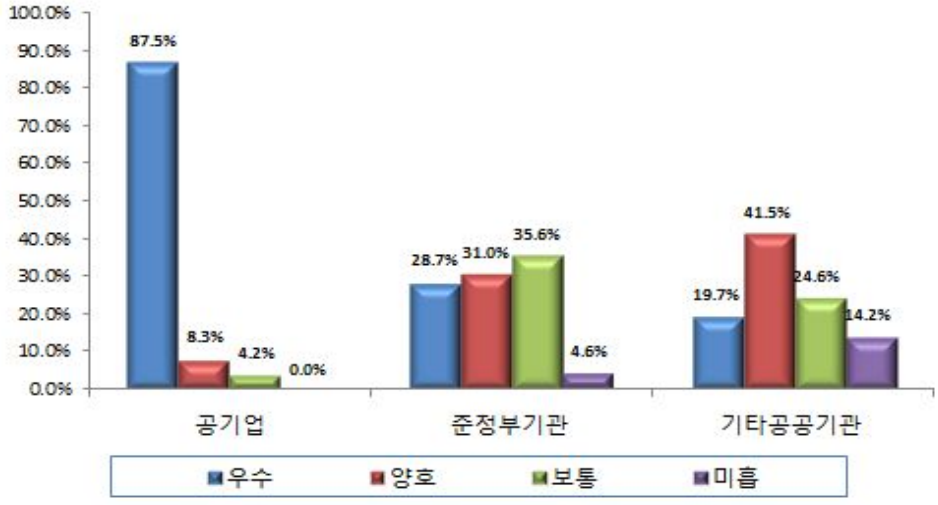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2015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16년도 수준을 비교해보면[220],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8.1%(188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다음의 <표 Ⅰ-122>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2015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50개 기관(18.1%)으로 3개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및 24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고객만족도 개선기관 중 2015년 '미흡' 수준에서 2016년에는 '보통' 수준으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16개, '양호' 수준으로 상승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총 17개 기관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남[221].

○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이 2015년에 비해 다소 저조한 기관은 38개 기관(13.8%)으로 2개 공기업, 10개 준정부기관 및 26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고객만족도 수준 하락기관 중 13개 기관[222]은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이 최하위인 '미흡' 수준임.
- 2015년 수준에 비해 고객만족도 등급이 3단계 하락한 기관은 2개 기관[223]으로 2015년 '우수' 수준에서 '미흡' 등급으로 하락했으며, 2단계 하락한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2015년 '우수' 수준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한 기관이 5개이고[224], '양호'에서 '미흡' 수준으로 하락한 기관이 3개 기관임[225].

---

220) 분석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276개 기관으로 함

221) '미흡'에서 '양호' 수준으로 상승한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며 '미흡'에서 '보통' 수준으로 상승한 기관은 ㈜워터웨이플러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장학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임

222) (재)한국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강원랜드, IOM이민정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

223) IOM이민정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5) (재)중소기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표 Ⅰ－122〉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266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50 (18.1%)	45	5	-
등급 유지	188 (68.1%)	-	-	-
등급 하락	38 (13.8%)	28	8	2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표 Ⅰ－123〉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50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급 유지 (188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88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정동극장,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재단,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산업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구분	기관명
등급 하락 (38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강원랜드, ㈜한국건설관리공사, IOM이민정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대구과학관, 국방과학연구소, 노사발전재단, 대한적십자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수준과 더불어 그룹내 상대등급을 모두 발표하고 있으며,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Ⅰ-116>과 같음.

○ 그룹내 상대평가결과는 S-A-B-C-D 등 5단계 등급으로 발표됨.

○ 대부분의 그룹에서는 A와 B 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등급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시설기반서비스 유형으로 6개(31.6%) 기관이 S등급에 해당하며 A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안전·평가관리 유형으로 12개(54.5%) 기관이 A등급에 해당함.

○ 전체 유형에서 D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준정부 시장경쟁 그룹은 C등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C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그룹은 공기업·준정부 국민생활증진 그룹으로 3개(12.5%)이 C등급에 해당됨.

〈표 Ⅰ－124〉 2016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공기업·준정부기관 (108개)	시장경쟁 (5개)	(S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A등급)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B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생활 증진 (24개)	(S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B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등급)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산업진흥 (38개)	(S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A등급)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C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안전·평가 관리 (22개)	(S등급) 도로교통공단, 한국석유관리원 (A등급) 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B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C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공기업·준정부기관 (108개)	시설기반 서비스 (19개)	(S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A등급) 국립생태원,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B등급) 독립기념관, 한국전력공사 (C등급) 한국석유공사
기타공공기관 (115개)	시장경쟁 (28개)	(S등급)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코레일유통(주) (A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예술의전당,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B등급) (재)정동극장,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잡월드 (C등급) ㈜강원랜드
	국민생활 증진 (40개)	(A등급)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해양조사협회 (B등급) (재)APEC기후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C등급)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업진흥 (26개)	(S등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A등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기타공공기관 (115개)	산업진흥 (26개)	(B등급)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C등급)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안전·평가 관리 (21개)	(S등급) 코레일네트웍스(주) (A등급)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쟁기념사업회,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항로표지기술협회 (B등급)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C등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모두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2017년 공공기관 지정결과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은『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통합조사가 아닌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를 수검함에 따라 분석대상기관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그룹별 상대등급의 전년대비 개선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기관의 비중이 높은 그룹은 기타공공기관의 국민생활증진 그룹으로 6개 기관(40.0%)의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상승했으며 산업진흥 그룹과 시설기반서비스 그룹의 개선기관 비중도 각 31.6%와 36.8%로 나타남.

○ 시장경쟁 그룹은 4개 기관(80.0%)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공공기관의 시장경쟁 그룹과 산업진흥 그룹도 각 20개 기관(74.1%)과 10개 기관(71.4%)이 전년등급을 유지하여 상대등급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년대비 상대등급이 다소 저조한 그룹은 시설기반서비스 그룹으로 해당 그룹 소속 5개 기관(26.3%)의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Ⅰ-125〉 2016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1]	S	A	B	C	D	분석 대상[2]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준정부기관	시장경쟁	5	1	2	2	0	0	5	0	4	1
	국민생활증진	24	2	10	9	3	0	22	5	13	4
	산업진흥	38	5	13	17	3	0	38	12	20	6
	안전·평가관리	22	2	12	7	1	0	21	5	13	3
	시설기반서비스	19	6	10	2	1	0	19	7	7	5
	소 계	108	16	47	37	8	0	105	29	57	19
기타공공기관	시장경쟁	28	4	10	13	1	0	27	3	20	4
	국민생활증진	40	0	15	21	4	0	15	6	8	1
	산업진흥	26	3	6	14	3	0	14	2	10	2
	안전·평가관리	21	1	9	9	2	0	13	4	6	3
	소 계	115	7	40	57	10	0	69	15	44	10
전 체		223 (100%)	23 (100%)	87 (100%)	94 (100%)	18 (100%)	0 (100%)	174 (100%)	70 (100%)	85 (100%)	18 (1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모두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표 Ⅰ-126〉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173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44 (25.3)	44	-	-
등급 유지	101 (58.0)	-	-	-
등급 하락	29 (16.7)	28	1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표 Ⅰ－127〉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44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수출입은행
등급 유지 (101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상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술의전당,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01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급 하락 (29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예금보험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정동극장, ㈜강원랜드,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6년 및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7년 신규지정기관,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그림 Ⅰ-43〉 전년대비 2016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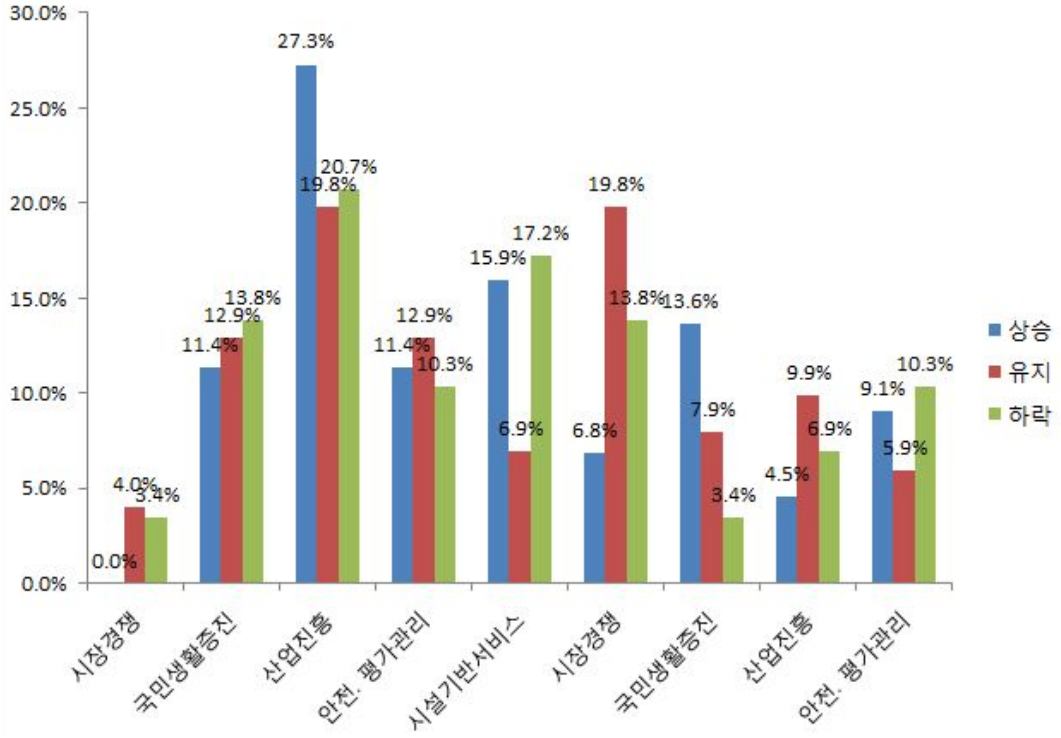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고객만족도 조사결과』항목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226]

(1)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22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하며,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함.

-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책 고객은 방문조사를 병행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청렴도 모형을 도입한 2002년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8년에 '내부청렴도'를 도입한 이래 2012년에 제도를 전면 개편함[228].

○ 2012년도부터는 측정모형을 전면 개편하여 기관의 정책업무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229]하고 있으며 전문가·업무관계자(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금융공직유관단체), 지역주민(광역), 학부모(교육청)를 평가자에 포함시킴.

---

2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0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내용 중 공공기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활용

227)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6), p.265에서 발췌

228)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2016), p.265에서 발췌

229)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평가자의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Ⅰ유형(2,300명이상)과 Ⅱ유형(1,000명 이상~2,300명 미만)에 한하여 적용

○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합청렴도 산출 시 감점요소로 반영함.

○ 기존의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항목은 간소화하여 비중을 축소한 대신, 새로운 부패유형과 간접부패경험도 측정 가능하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부패지수 평가를 강화함[230].

○ 호의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측정명부 조작·오기·대리응답 등 명부관련 저해행위에 대해서 감점을 신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조사를 실시함[231].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측정 대상이 됨.

- 공운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측정기관 대상 중 공직유관단체 유형으로 분류됨[232].

○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성격의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의 대상이 됨.

- 공공의료기관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10개 국립대병원(대학병원 유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치과병원(치과병원 유형), 개별법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유형),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기타병원 유형)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법인형태의 기관(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가 포함됨.
- 이 중 법인형태의 기관 6개 중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

230) 외부청렴도 3개 항목, 내부청렴도 3개 항목, 정책고객평가 7개 관련항목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투명성·책임성 지수 항목은 8개→4개로 축소하여 부패위험지수로 통합하고 비중을 축소함

231)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6.6월)』,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2016.7월)』 및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국·공립대학](2016.7월)』을 참고하여 작성

232) 공공기관 측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산출 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함.

□ 2016년도 청렴도 조사는 2012년에 개편된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보다 보완·개선하여 청렴도를 측정함[233].

○ 금년 시행된「청탁금지법」취지를 반영하여 외부·내부·정책고객평가에 부정청탁 관련 설문을 추가함.

- 기관의 청탁현황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현황을 참고문항으로 시험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을 부패인식지수에 추가함.

○ 또한, 내부결속력이 높은 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의 가중치를 축소함.

- 종합청렴도 산출시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가중치를 25.0%에서 22.4%로 축소함.

○『청탁금지법』시행(2016.9.28.)에 따른 부패사건 반영 범위를 확대하였음.

- 과거에는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행위 등을 위주로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부패사건 점수화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 전년도에 신뢰도 저해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모바일 조사를 우선 시행하는 등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명부 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없는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와 현지점검을 강화함.

233) 국민권익위원회,『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2.7)』보도자료

〈그림 Ⅰ－44〉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16.12.7.)』보도자료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2.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
3.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가중치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각각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점수와 등급(5등급 체계)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으나 측정점수는 기관별 업무성격과 측정대상업무가 상이하므로 이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매년 조사대상에 변동이 있어 전체, 유형별 평균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해 자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017년 공공기관(332개) 중 2016년도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34개 공기업, 84개 준정부기관 및 53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171개 기관임[234].

○ 171개 기관 중 150개 기관은 앞서 살펴본 <그림 Ⅰ-42>의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이외 21개 기관은 별도 측정모형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함.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등 17개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235].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별도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함[236].

○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161개 기관임.

- 2017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

---

234)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2017.1.25.)』. 보도자료에 따름
235)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
236)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보도자료

- 준정부기관 중 국립생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 6개 기관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237] 이중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2016년이 신규 지정된 당해 연도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청렴도 측정결과는 점수와 유형내 등급으로 발표되며 2016년도 청렴도조사를 수검한 171개 기관의 청렴도 점수와 등급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는 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구분되어 조사를 수검하게 됨. 여기서 공직유관단체는 다시 연구원과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5개 유형[238]으로 분류되어 유형 내 상대등급을 부여함.
- 2015년도에는 6개 기관이[239]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도 별도 발표함.

237) 국립생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에 최초 지정된 이래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바 없음.

238)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1,000명 미만), Ⅳ유형(150명 이상~300명 미만), Ⅴ유형(15명 미만)

23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표 Ⅰ－128〉 2016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단체)	Ⅰ (19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Ⅱ (26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Ⅲ (35개)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Ⅳ (27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V (21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원 (22개)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립대학병원 (10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치과대학병원 (3개)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원 (1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기타병원 (3개)	(준정부기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소폭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하락함.

- 올해 공공기관 외부청렴도의 평균 점수는 8.04점으로 전년에 비해 0.02점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7.82으로 전년 대비 0.18점 하락,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7.20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함.
- 내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내부직원의 청렴 수준 향상과 과거 관행적으로 여겼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반영됨.

○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8.1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7.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그러나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2015년 8.24점에서 2016년 8,17점으로 - 0.07점 하락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2016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점수 측면에서 살펴보면[240]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201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된 171개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04점으로 2015년 8.18점에서 0.1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1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118개 기관[241]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15점으로 전년대비 0.14점 하락함.
- 공기업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종합청렴도 수준이 준정부기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53개 기타공공기관의 2016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2015년보다 0.05점 하락한 7.80점으로 경영평가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242].

---

240)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

241)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16년도 청렴도 조사를 미수검한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제외한 기관수임.

24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경영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반영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 3가지 조사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최상위·최하위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1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8.19점이며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9.00점)이고 최하점을 받은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7.22점)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17개 병원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은 7.36점이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이 8.55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반면 전남대학교병원은 6.39점으로 최하점을 받음.
-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4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5.70점임. 4개 기관 중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6.00점)이고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5.31점)임.

○ 2015년에는 전년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이 많았던 반면, 금년에는 2015년 대비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66개 기관(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27개, 기타공공기관 24개)이 2015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함. 상승폭이 가장 큰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2015년 7.99점에서 2016년 8.62점으로 전년대비 0.63점이 상승함.
- 103개 기관(공기업 19개, 준정부기관 56개, 기타공공기관 28개)은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함. 103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7.39점)으로 종합청렴도 점수가 전년대비 1.18점 하락함.
- 1개 기관(한국과학기술원)은 종합청렴도 점수가 2015년과 동일함.

〈표 Ⅰ－129〉 전년대비 2016년도 종합청렴도 점수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점수 상승 (66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점수 유지 (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점수 하락 (103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구분	기관명
점수 하락 (103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중소기업은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점수 결과를 공개한 17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등급 측면(1~5등급)에서 살펴보면[243], 다음과 같음.

○ 종합청렴도가 3등급인 기관이 59개로 2016년도 조사 수검기관(171개) 중 34.5%를 차지함.

-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등급 기관이 10% 미만인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5등급 기관이 13.2%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년도에 비해서(14.0%) 최하위 등급 기관의 비중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최하위 청렴도 수준의 기관이 비중이 높게 나옴.
- 모든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중간 수준인 3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기관수가 가장 많음.

○ 최상위 등급(1등급)인 기관은 10개 기관으로 공기업은 4개, 준정부기관이 4개, 기타공공기관이 2개가 포함됨.

243)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함.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 공기업 중 최상위 등급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이며, 이 중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4년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1등급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3년부터 종합청렴도 점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종합청렴도 등급은 3년 연속 1등급 기관임.

○ 반면 최하위 등급(5등급)인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2개의 공기업, 6개의 준정부기관과 7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공항공사는 2015년에 2등급 등급을 받았으나 2016년에 5등급을 받아 등급하락이 크게 나타남.
- 종합청렴도가 5등급인 준정부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6개 기관으로 이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은 3년 연속 5등급을 받음.
-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임.

○ 2015년도 종합청렴도 등급과 비교할 때, 2016년도 전년대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이 더 많음.

- 특히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2015년도에 비해 등급이 3단계가 하락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청렴도 관리가 요구됨.
- 종합청렴도 등급이 2단계 하락한 기관은 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 준정부기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기타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이 해당됨.
- 전년대비 등급이 2단계 상승한 기관은 8개로 한국가스공사, 한전KDN(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이상 공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상 준정부기관), 한국수출입은행(이상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됨.

- 2015년도에 5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KDN(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4개 기관은 2016년에 등급이 2단계 상승하여 3등급을 받음.

〈표 Ⅰ-130〉 전년대비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44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급 유지 (72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구분	기관명
등급 하락 (48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등급 결과를 공개한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표 Ⅰ-131〉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	평균 (점)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	시장형	(14)	14	8.2	2	3	5	2	2	14	6	4	4
	준시장형	(21)	20	8.2	2	4	6	8	0	20	5	7	8
	소 계	(35)	34	8.2	4	7	11	10	2	34	11	11	1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6)	16	8.3	1	6	6	2	1	16	3	10	3
	위탁집행	(73)	68	8.1	3	18	21	21	5	66	17	31	18
	소 계	(89)	84	8.1	4	24	27	23	6	82	20	41	21
기타공공기관		(208)	53	7.8	2	10	21	13	7	48	13	20	15
전 체		(332)	171	8.1	10	41	59	46	15	164	44	72	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조사 대상인 171개 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전체 수를 의미하며,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Ⅰ-45〉 공공기관 유형별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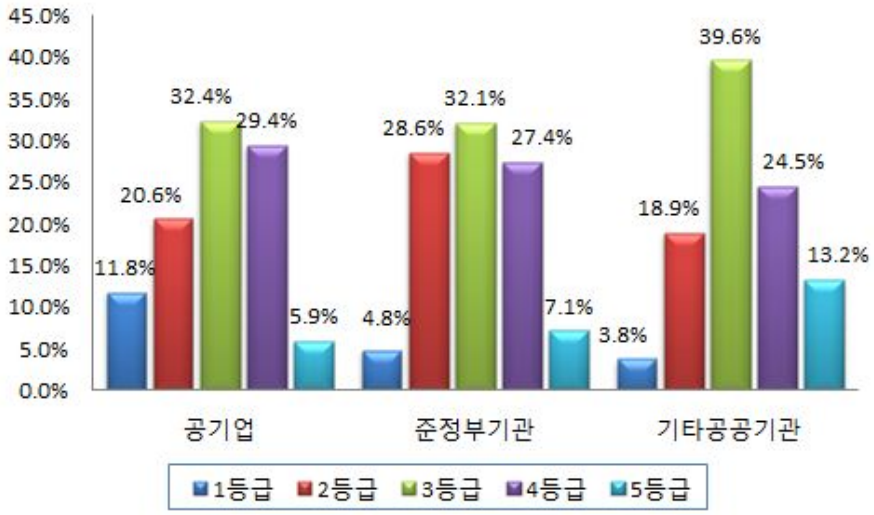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132〉 2016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10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독립기념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41개)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기타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분	기관명
3등급 (59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4등급 (46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 대한체육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5등급 (15개)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재)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부처별로 공공기관 등급 분포와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Ⅰ-133>과 같음.

〈표 Ⅰ－133〉 2016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기획재정부	3	0	2	1	0	0	3	1	2	0
교육부	16	1	2	3	5	5	13	4	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1	8	12	9	3	32	8	13	11
외교부	1	0	0	0	1	0	1	0	1	0
행정안전부	1	0	1	0	0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8	0	2	1	4	1	8	3	2	3
농림축산식품부	6	1	1	2	2	0	6	3	2	1
산업통상자원부	33	3	10	15	3	2	33	10	15	8
보건복지부	10	1	0	5	4	0	9	1	7	1
환경부	4	0	1	3	0	0	4	1	2	1
고용노동부	5	0	1	3	1	0	5	2	3	0
여성가족부	2	0	0	1	1	0	2	0	2	0
국토교통부	14	0	4	3	5	2	14	3	4	7
해양수산부	9	1	1	3	3	1	9	3	3	3
중소벤처기업부	4	0	1	1	1	1	4	0	2	2
국무조정실	1	0	1	0	0	0	1	0	1	0
방송통신위원회	1	0	0	0	1	0	1	0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0	1	0	1	0	0	1
금융위원회	7	1	2	4	0	0	7	2	4	1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1	0	1	0	1	0
국가보훈처	2	1	0	0	1	0	1	1	0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1	0	1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0	1	0	1	0	1	0
경찰청	1	0	0	0	1	0	1	0	0	1
소방청	1	0	1	0	0	0	1	0	1	0
방위사업청	2	0	0	2	0	0	2	1	0	1
농촌진흥청	1	0	1	0	0	0	1	0	1	0
산림청	1	0	1	0	0	0	1	0	0	1
기상청	1	0	0	0	1	0	1	1	0	0
전 체	171	10	41	59	46	15	164	44	72	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을 1개 기관도 포함하지 않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4.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표 Ⅰ－134〉 2016년도 종합청렴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3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3등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16개)	(1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등급)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4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5등급) 한국장학재단,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개)	(1등급)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4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5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외교부 (1개)	(4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2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8개)	(2등급)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3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4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5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무부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6개)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마사회 (4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 (33개)	(1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보건복지부 (10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환경부 (4개)	(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등급)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5개)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2개)	(3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4개)	(2등급) 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3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등급)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무부처	기관명
해양수산부 (9개)	(1등급) 인천항만공사 (2등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4등급)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5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 (4개)	(2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등급) 기술보증기금 (4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5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무조정실 (1개)	(2등급) 한국개발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1개)	(4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4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7개)	(1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2등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3등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4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1등급) 독립기념관 (4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혁신처 (1개)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4등급)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위사업청 (2개)	(3등급)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경찰청 (1개)	(4등급) 도로교통공단

주무부처	기관명
소방청 (1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1개)	(2등급)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2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상청 (1개)	(4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 『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2016.12.20.)』,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7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5년 및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결과를 공개한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을 1개 기관도 포함하지 않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4. ( ) 안은 부처별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대상 중 점수 및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

5.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7.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설출범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명이 변경됨.

7.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4)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44]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17년 9월 현재 경영 공시 의무 대상인 330개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 중임.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6개 대항목 하위에 총 40개 항목에 대해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통합공시 항목 40개 중 3개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245].
- 통합공시 항목은 정기공시항목이 24개이고, 수시공시항목은 16개임[246].
- 통합공시기준 <별표2>에 따라 벌점부과를 위해 통합공시 메뉴얼은 통합공시항목을 항목별로 하위단위를 세항목과 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항목과 기타항목으로 구분함.
- 2016년에는 공운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2016.9.23.시행)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임원성별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항목을 추가함.[247]
- 2017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공시기준을 확대하여 2017년도 정기공시부터 반영함.[248]

---

244)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7.3.27.)』 보도자료, 『'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7.3.24.)』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7.3월)』을 참조

245)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3개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임

246) 수시공시 16개 항목에는 임원현황,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내부규정, 투자 및 출자현황, 경영부담 비용추계, 납세정보현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 사항, 이사회 회의록·내부감사결과, 경영혁신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계약정보, 연구보고서, 기타정보공개,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등이 포함됨.

24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16.9.22.)』 보도자료 참고

248)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2017.2.9.)』 보도자료

〈표 Ⅰ-135〉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7년 3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89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0	89	120	31	28	24
Ⅰ. 일반현황	1	1	1	-	1	-
Ⅱ. 기관운영	13	37	51	13	17	7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2	23	23	6	12	5
Ⅳ. 대내외평가	7	9	9	-	4	5
Ⅴ. 공지사항(정보센터)	5	6	6	-	1	5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2	13	30	12	-	1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7.3월)』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Ⅰ-136〉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7년 3월 기준)

공공기관 운영 일반현황(14개)	재무정보(13개)
일반현황,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 현황, 내부규정,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현황, 주요사업, 투자집행내역,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 비용추계, 납세정보 현황, 감사보고서, 12개 주요기관 상세부채 내역
복리후생(2개)	**기타정보(12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8대항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경영혁신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계약정보, 연구보고서, 기타정보공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017.3월)』,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2017.2.9.)』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137〉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대항목	공시항목명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1호
Ⅱ.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제3호
	3. 임원현황	제3호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제3호, 제15호
	5. 임원연봉	제4호
	6. 직원 평균보수	제4호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5호
	8. 복리후생비	제4호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5호
	10. 노동조합 관련현황(명칭, 가입정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현황 등)	제15호
	11. 내부규정	제9호
	12. 징계현황	제13호
	13.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Ⅲ.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4.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15.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 계산서)	제2호
	16. 수입·지출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17. 주요사업	제15호
	18. 투자집행내역	제15호
	19.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제2호
	20. 장단기 차입금현황	제2호
	21. 투자 및 출자현황	제5호
	22. 연간 출연 및 증여	제15호
	23. 경영부담 비용추계	제15호
	24. 납세정보 현황	제15호
	25. 감사보고서	제2호
Ⅳ.대내외평가	26. 국회 지적사항	제12호
	27.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제11호, 제12호
	28.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8호
	29. 경영평가 지적사항	제8호
	30.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31.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제7호
	32.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제9제 제10호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대항목	공시항목명	
Ⅴ.공지사항	33. 경영혁신사례	제15호
	34. 임직원 채용정보	제15호
	35. 계약정보(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 정보)	제15호
	36. 연구보고서	제15호
	37. 기타정보공개	제15호
Ⅵ.공공기관 정상화추진	38.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제15호
	39.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제15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7.3월)』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공시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통합공시 점검을 실시함.

○ 통합공시점검은 2006년에 알리오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점검수준을 강화해 옴.

- 2013년에 정기공시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수시공시 등 관련항목에서 경영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는지 여부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기 시작함.
- 2014년에는 통합공시 실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에 해당 점검 체계 및 벌점 체계 등을 개선한 바 있음.
- 2016년에는 처벌위주의 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우수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 하여 우수공시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249)]

○ 2016년도 통합공시점검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통합공시 항목(2016년 기준 39개) 중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통합공시 점검대상항목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국민적 관심 측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 2016년 공공기관인 321개 기관 중 2016년 지정해제 된 2개 기관을 제외한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현황, 재무 현황, 복리 후생비 지급 현황 등 관련 항목을 점검함.

249)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 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점검 항목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8대 항목, 경영평가 지적사항, 직원보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투자출자, 납세정보, 감사보고서 등이 포함됨.

□ 통합공시기준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 부과할 수 있음.

○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중과실이며, 공시 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오류이면 경과실에 해당함.

- 수치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이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 벌점을 부과할 때 항목에 따라 과점 단위를 구분하여 정기공시항목은 세항목별 과점,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세항목별 과점을 부과하고 수시공시항목은 사유발생 또는 공시 회수별로 과점함.

〈표 Ⅰ－138〉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벌점 부과 체계

항 목	미공시 · 허위공시		지연 공시	공시 변경
	고의 · 중과실	경과실		
주요항목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수시) 0.1점
기타항목	3점	1.5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7.3.27.)』 보도자료

□ 통합공시기준 제14조에 따라 점검결과 벌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인사조치, 기관주의 조치를 실시함.

○ 연간 누적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자는 인사조치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또한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이 지정되었음을 3개월간 게시하며 관련자는 인사조치를 시행함.

○ 연간 누적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됨.
- 기관주의 대상 기관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을 실시함.

□ 이외에도 사후조치로 무벌점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2016년 10월에 개정된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무벌점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2년 연속 무벌점 기관의 경우 표창을 실시할 예정임.
○ 공기업(30개)·준정부기관(89개)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평가 계량지표로 반영함.
- 점검결과에 따라 공기업은 1~1.5점, 준정부기관은 1.5점을 경영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200개)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2)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2016년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벌점 및 사후조치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2015년에 비해 공시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됨.
○ 평균 벌점은 2016년에 9.5점으로 2013년 113.1점, 2014년 21.3점, 2015년 10.8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 평균 벌점 감소는 2015년에 개선한 벌점 기준과 기관들의 경영공시 개선 노력에 기인함.
-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5.3점)·준정부기관(9.1점)의 벌점수준이 기타공공기관(10.4점)의 평균 벌점 수준보다 낮음.
○ 사후조치 대상기관 역시 2016년 26개 기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불성실공시기관도 3개 기관으로 감소함.
-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3개 기관임.
-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사후조치 대상 비율이 높게 나타남.[250]

250) 연도별 신규 지정기관 중 사후조치 대상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77.8%(7개/9개), 2015년 47.4%(9개/19개), 2016년에는 36.4%(4개/11개)임.

○ 2016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 처음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18개임.

- 우수공시기관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상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8개 기관(이상 준정부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 기관(이상 기타공공기관)임.
- 2015년부터 2년 연속 무벌점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임업진흥원과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임.

〈표 Ⅰ－139〉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벌점 현황

(단위: 개, 점)

구 분	'14년	'15년	'16년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점검 대상	296	311	319	30	89	200
평균 벌점(점)	21.3	10.8	9.5	5.3	9.1	10.4
무벌점기관	3	16	18	3	8	7
사후조치대상	151 (50.2)	43 (13.8%)	26 (8.2%)	-	5 (5.6%)	21 (10.5%)
기관주의	129	35	23	-	5	18
불성실공시기관	22*	8	3	-	-	3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7.3.24.)』 보도자료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벌점 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 기관이 아닌 2015년에 개정된 벌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변경 된 기관의 경우,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그림 Ⅰ－46〉 20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 및 불성실공시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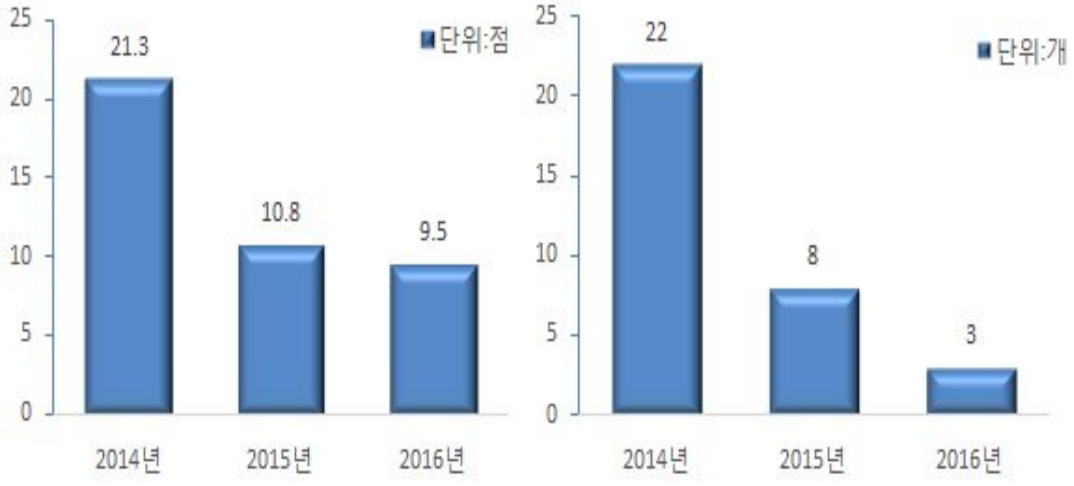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7.03.27.)』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Ⅰ－140〉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 현황

구 분	기관유형	기관명
우수 공시기관 (18개)	공기업 (3개)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7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테크(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불성실 공시기관 (3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7개)	(주)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7.3.27.)』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통합공시 점검결과 부과되는 벌점을 구간별로 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벌점 0점인 기관은 전체 기관의 5.6%를 차지하고,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전체 기관의 10.5%가 해당됨.

- 전체 공공기관의 58.3%가 0점 초과~10점 이하 벌점 구간에 해당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벌점 구간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0점 초과~10점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공기업은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이 없고, 벌점이 0점인 기관과 10점 초과~20점 이하인 기관이 각각 10%를 차지함.
- 우수공시기관에 해당하는 벌점 구간 0점인 기관의 분포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10.0%와 9.3%로 기타공공기관의 3.5%보다 높게 나타남.
- 20점 초과~30점 이하, 31점 초과~40점 이하 구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관주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Ⅰ－141〉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현황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10점이하	10점초과~20점이하	20점초과~30점이하	30점초과~40점이하	40점초과
공기업	30	3	24	3	0	0	0
준정부기관	89	8	52	24	4	1	0
기타공공기관	200	7	110	62	16	4	1
합계	319	18	186	89	20	5	1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7.3.27.)』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1. 2년간 벌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2.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변경된 기관의 경우,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그림 Ⅰ-47〉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벌점 구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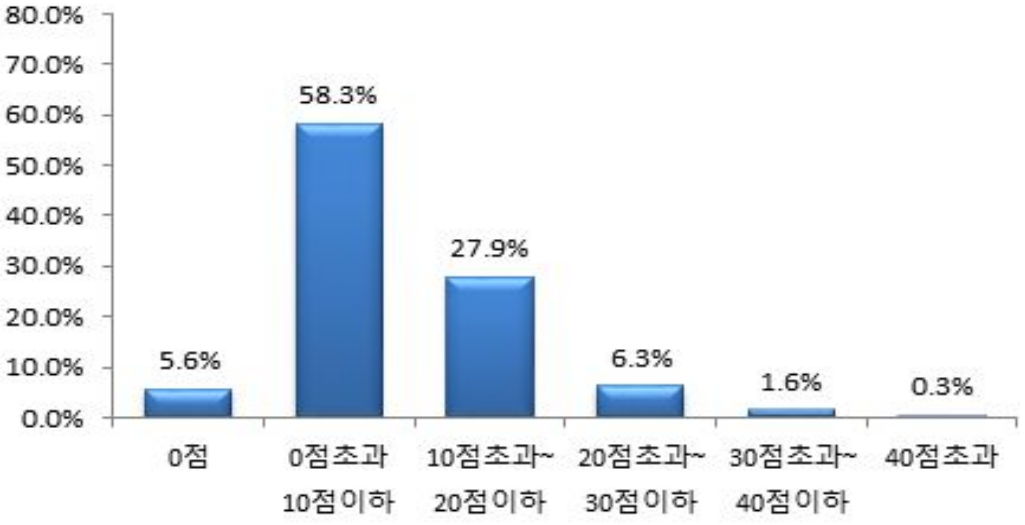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7.3.27.)』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Ⅰ-48〉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관유형별 벌점 구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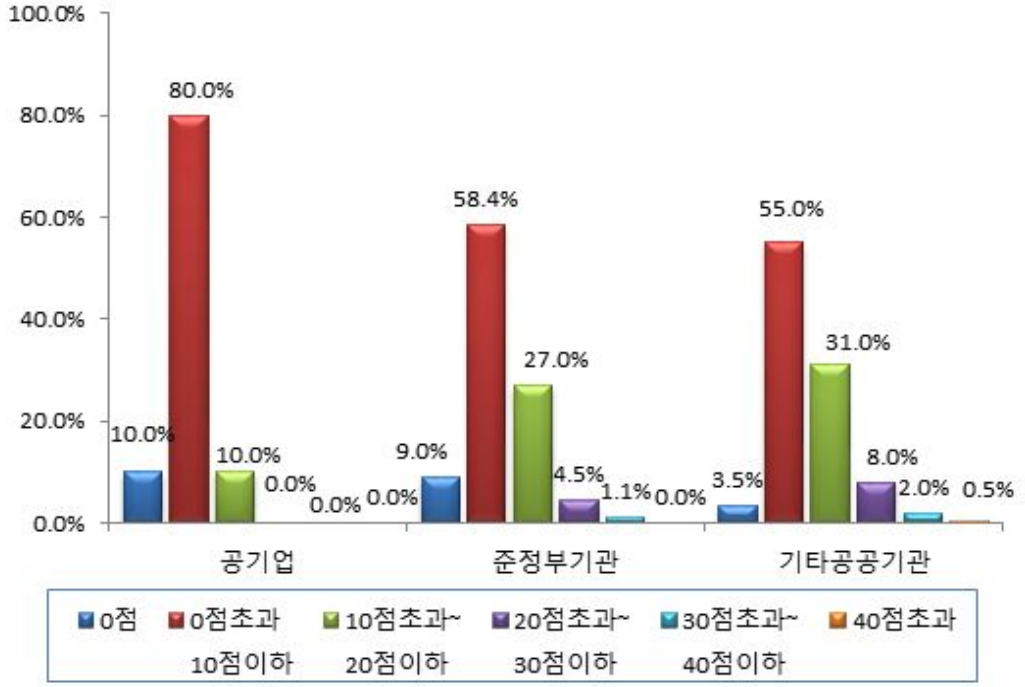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7.3.27.)』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변경된 기관의 경우,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벌점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Ⅰ-142>와 같음.

〈표 Ⅰ－142〉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벌점 분포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10점이하	10점초과~20점이하	20점초과~30점이하	30점초과~40점이하	40점초과
기획재정부	3	0	2	1	0	0	0
교육부	21	1	11	5	3	1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1	21	16	4	1	0
외교부	3	0	1	2	0	0	0
통일부	2	0	0	2	0	0	0
법무부	4	0	0	3	1	0	0
국방부	3	0	3	0	0	0	0
행정안전부	3	0	1	2	0	0	0
문화체육관광부	32	0	16	12	4	0	0
농림축산식품부	10	0	8	1	1	0	0
산업통상자원부	39	3	31	5	0	0	0
보건복지부	22	4	9	7	0	1	1
환경부	7	0	4	3	0	0	0
고용노동부	11	1	9	1	0	0	0
여성가족부	5	1	1	3	0	0	0
국토교통부	23	2	16	4	1	0	0
해양수산부	17	1	9	6	0	1	0
중소벤처기업부	9	0	8	0	0	1	0
국무조정실	24	1	17	3	3	0	0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2	1	0	0
금융위원회	7	2	3	2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0	2	0	0	0	0
국가보훈처	3	0	3	0	0	0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1	3	0	0	0
관세청	1	0	1	0	0	0	0
방위사업청	2	0	2	0	0	0	0
경찰청	1	0	1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산림청	1	1	0	0	0	0	0
농촌진흥청	1	0	0	0	1	0	0
특허청	5	0	2	3	0	0	0
기상청	3	0	0	3	0	0	0
합 계	319	18	186	89	20	5	1

자료: 기획재정부『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7.3.27.)』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7.25로 개편된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19개 중 50개 기관이 전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되었고 27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되었음.

○ 6개 기관은 전년에 비해 2016년에 개선도가 높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됨.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15년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2016년에는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됨.
- 기타공공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등 5개 기관은 2015년에는 불성실 공시기관이었으나 2016년에는 사후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된 기관 중 12개 기관은 2015년에는 사후조치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음.

- 준정부기관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9개[251] 기타공공기관이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되어 2016년에는 기관주의 조치 대상이 됨.
- 2015년도와 2016년도 모두 사후조치대상에 속한 기관은 10개 기관이며 이 중 ㈜워터웨이플러스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벌점수준이 전년대비 상승함.

〈표 Ⅰ-143〉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50개)	1단계 개선 (44개)	[사후조치대상아님→우수공시기관(14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관주의→사후조치대상아님(27개)]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KDN(주)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5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해당됨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50개)	1단계 개선 (44개)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업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재)중소기업연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불성실공시기관→기관주의(3개)]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단계 개선 (6개)	[기관주의→우수공시기관(1개)] (기타공공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불성실공시기관→사후조치대상아님(5개)]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악화된 기관 (27개)	1단계 악화 (27개)	[우수공시기관→사후조치대상아님(13개)] (공기업) 한국감정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잡월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후조치대상아님→기관주의(12개)] (준정부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타공공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2개)] (기타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7.3.27.)』,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2016.2.29.)』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변경된 기관의 경우,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수준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6년도 공시점검은 2015년 벌점 기준의 개선과 기관의 경영공시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균 벌점이 감소함.

- 기존의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벌점 5점을 과실의 경중과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최소 0.1점~5점까지 세분화하여 반영함.

○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4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통합공시 점검결과가 계량지표로 반영되면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였음.

-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공시경험이 부족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관심도가 낮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2월에는 신규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추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2016년도 통합공시 점검의 항목별 점검결과를 복리후생 관련 항목과 재무관련 항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복리후생과 관련된 공시 항목은 지속적인 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6년도에 복리후생 8대 항목의 경우 포상휴가제도 항목이 신규 도입되어 자료 입력을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복리후생 관련 공시항목 점검대상은 임직원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취업규칙,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임.

○ 재무 관련 점검 항목 7개 중에서 올해 처음 점검한 수입·지출현황 및 납세정보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투자·출자 항목에서도 위반 기관수가 증가함.

- 재무 관련 7개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담보제공·채무보증 현황 등임.
- 수입·지출 현황 및 납세정보 항목은 담당자의 입력시 부주의 또는 공시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일부 발생함.
- 투자·출자 항목은 2015년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음.

□ 2016년도 벌점부과 현황을 과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남.

○ 과실의 경중을 기준으로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과실이 21.5%, 경과실이 43.8%, 공시변경이 33.9%를 차지함.

○ 2016년에도 위반사례 중에는 여전히 계산 실수를 하거나 매뉴얼 해석오류, 단순 오타가 있는 등의 경과실로 인한 사례가 많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강원랜드(주),『사업보고서(2016)』, 2017.3월

고용노동부,『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10문 10답(2016.7.21.)』, 보도자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교육부 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명 '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2016.2.18.)』보도자료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NCS기반 능력중심채용 가이드북』, 2016.3월

국민건강보험공단,『감사보고서(2016)』, 2017.3월

국민권익위원회,『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 2016.3월

_____,『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6.7월

_____,『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6.7월

_____,『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6.7월

_____,『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6.12.7.)』보도자료

_____,『2016년도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2016.12.20.)』보도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사업보고서(2016)』, 2017.3월

기획재정부,『'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보도자료

_____,『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2013.12.11.)』보도자료

_____,『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마련(2013.12.31.)』보도자료

_____,『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2013.12.31.)』보도자료

_____,『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2014.2.7.)』보도자료

_____,『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 2014.2월

_____,『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4.5.1.)』보도자료

_____,『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4.6.18.)』보도자료

_____,『'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4.9.22.)』보도자료

_____,『고용・복지 분야 및 중소기업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2015.1.11.)』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2015.5.27.)』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투자 및 부채감축계획(2015.7.29.)』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 수정안(2015.7.29)』
_____,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5.9.16.)』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5.12.20.)』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6.1.15.)』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6.1월
_____,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2016.2월
_____, 『'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6.2.29.)』 보도자료
_____, 『능력중심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2016.3.31.)』 보도자료
_____,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2016.5.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2016.6.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2016.6.14.)』 보도자료
_____,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16.6.16.)』 보도자료
_____, 『2016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2016.7.1.)』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6.8.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9.2.)』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수정)』, 2016.12월
_____,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본격 추진(2016.12.8.)』 보도자료
_____,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2016.12.8.)』 보도자료
_____,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7.1.25.)』 보도자료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7.1.25.)』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현황(2017.1.2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자료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2017.2.9.)』 보도자료
_____,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안)』, 2017.2월

_____, 『'16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2017.3.24.)』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안건자료
_____,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2017.3.27.)』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2017.3.29.)』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7.3월
_____,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집』, 2017.3월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17.5.1.)』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2017.5.1.)』 보도자료
_____, 『'17년 정부출자주식 배당금 1조 5,562억원 수납(2017.5.19.)』 보도자료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2017.6.16.)』 보도자료
_____,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2017.6.16.)』 보도자료
_____,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감사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집』, 2017.7월
_____, 『2017 기금현황』, 2017.7월
_____, 『통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통합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기관 변경 지정(안)(2017.9.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6
박한준·허경선,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2014
예금보험공사,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중소기업은행, 『사업보고서(2016)』, 2017.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6)』, 2017.3월
_____,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_____, 『사업보고서(2016)』, 2017.3월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도로공사,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전력공사,『결산서(2016)』, 2017.3월
_____,『감사보고서(2016)』, 2017.3월
_____,『사업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전력기술(주),『사업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업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철도공사,『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철도시설공단,『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보고서(2016)』, 2017.3월
한전KPS(주),『사업보고서(2015)』, 2016.3월

강원랜드(주), http://kangwonland.high1.com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ltm.go.kr
그랜드코리아레저, http://www.grandkorea.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Job-Alio) http://job.alio.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중소기업은행, http://www.ibk.c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전력공사, http://home.kepco.co.kr
한국전력기술(주), http://www.kepco-enc.com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부 록

부록 1 기관명 색인[252)]

【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75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51
강원대학교병원 ····· 56
(주)강원랜드 ····· 9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86
건설근로자공제회 ····· 116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518
게임물관리위원회 ····· 603
경북대학교병원 ····· 6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66
경상대학교병원 ····· 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503
고등과학원 ····· 315
공무원연금공단 ····· 174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508
광주과학기술원 ····· 220
교통안전공단 ····· 128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25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29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25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76
국가핵융합연구소 ····· 350
국립공원관리공단 ····· 1101
국립광주과학관 ····· 230

252) 기관명 색인은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 기관별 현황 편』(1권과 2권으로 분권)을 기준으로 작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1121
국립대구과학관 ····· 23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608
국립부산과학관 ····· 240
국립생태원 ····· 1106
국립암센터 ····· 1026
국립중앙의료원 ····· 1031
국립해양박물관 ····· 140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140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996
국민건강보험공단 ····· 991
국민연금공단 ····· 981
국민체육진흥공단 ····· 555
국방과학연구소 ····· 1781
국방기술품질원 ····· 1785
국방전직교육원 ····· 509
국제방송교류재단 ····· 578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756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177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289
국토연구원 ····· 151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545
극지연구소 ····· 1432
근로복지공단 ····· 1143
기술보증기금 ····· 1455
기초과학연구원 ····· 245

【ㄴ】

나노종합기술원 ····· 320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475

노사발전재단 ····· 1174
녹색기술센터 ····· 30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72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72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82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761

【ㄷ】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5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0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863
대한법률구조공단 ····· 492
대한석탄공사 ····· 833
대한장애인체육회 ····· 613
대한적십자사 ····· 1041
대한체육회 ····· 618
도로교통공단 ····· 1793
독립기념관 ····· 172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400
동북아역사재단 ····· 81

【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537

【ㅂ】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265
부산대학교병원 ····· 8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91

부산항만공사 ····· 135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48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101

【ㅅ】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11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35
사회보장정보원 ····· 1006
산업연구원 ····· 1528
서울대학교병원 ····· 9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106
서울요양원 ····· 1001
선박안전기술공단 ····· 138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1437
세계김치연구소 ····· 380
세종학당재단 ····· 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46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17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126
시청자미디어재단 ····· 1646
식품안전정보원 ····· 1753
신용보증기금 ····· 167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480

【ㅇ】

아시아문화원 ····· 583
IOM이민정책연구원 ····· 487
안전성평가연구소 ····· 450
에너지경제연구원 ····· 1533

(재)APEC기후센터 ····· 1874
여수광양항만공사 ····· 13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70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210
영상물등급위원회 ····· 628
영화진흥위원회 ····· 561
예금보험공사 ····· 167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593
예술의전당 ····· 63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04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153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15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215
울산과학기술원 ····· 275
울산항만공사 ····· 1367
(주)워터웨이플러스 ····· 1310
육아정책연구소 ····· 159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1758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938
인천국제공항공사 ····· 1235
인천항만공사 ····· 137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532

【ㅈ】

재단법인 국악방송 ····· 638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280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1051
재료연구소 ····· 340

재외동포재단 ····· 462
전남대학교병원 ····· 111
전략물자관리원 ····· 943
전북대학교병원 ····· 116
전쟁기념사업회 ····· 514
(재)정동극장 ····· 59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17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6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538
정부법무공단 ····· 49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245
제주대학교병원 ····· 121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 1412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 1417
주택관리공단(주) ····· 1320
주택도시보증공사 ····· 125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470
(재)중소기업연구원 ····· 1475
중소기업유통센터 ····· 1485
중소기업은행 ····· 1698
중소기업진흥공단 ····· 1460

【ㅊ】

창업진흥원 ····· 1490
축산물품질평가원 ····· 730
충남대학교병원 ····· 126
충북대학교병원 ····· 131

【ㅋ】

KDI국제정책대학원 ····· 1553
코레일관광개발(주) ····· 1325
코레일네트웍스(주) ····· 1330
코레일로지스(주) ····· 1335
코레일유통(주) ····· 1340
코레일테크(주) ····· 1345

【ㅌ】

태권도진흥재단 ····· 643
통일연구원 ····· 1543
특허정보진흥센터 ····· 1862

【ㅍ】

88관광개발(주) ····· 1737

【ㅎ】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184
한국가스공사 ····· 76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828
한국가스안전공사 ····· 868
한국감정원 ····· 1255
한국개발연구원 ····· 154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2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05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13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85
한국고용정보원 ····· 1149
한국고전번역원 ····· 13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64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720
한국공항공사 ····· 12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9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300
한국과학기술원 ····· 3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330
한국과학영재학교 ····· 325
한국과학창의재단 ····· 183
한국관광공사 ····· 550
한국광물자원공사 ····· 775
한국광해관리공단 ····· 873
한국교육개발원 ····· 15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6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0
한국교통연구원 ····· 1568
한국국방연구원 ····· 519
한국국제교류재단 ····· 46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1059
한국국제협력단 ····· 457
한국국토정보공사 ····· 1294
한국기계연구원 ····· 33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186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18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345
한국나노기술원 ····· 355
한국남동발전(주) ····· 781
한국남부발전(주) ····· 786
한국노동연구원 ····· 157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0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735
한국농어촌공사 ····· 7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578
한국뇌연구원 ····· 260
한국데이터진흥원 ····· 360
한국도로공사 ····· 126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653
한국동서발전(주) ····· 791
한국디자인진흥원 ····· 87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948
한국마사회 ····· 715
한국무역보험공사 ····· 853
한국문학번역원 ····· 65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66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6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566
한국문화재재단 ····· 1809
한국문화정보원 ····· 673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 678
한국발명진흥회 ····· 184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64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8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502
한국법제연구원 ····· 1583
한국벤처투자 ····· 149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8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02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106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069
한국보육진흥원 ····· 107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732
한국사학진흥재단 ····· 14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07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19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18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9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88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888
한국산업단지공단 ····· 89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154
한국산업은행 ····· 1703
한국산업인력공단 ····· 1159
한국상하수도협회 ····· 113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3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370
한국서부발전(주) ····· 796
한국석유공사 ····· 801
한국석유관리원 ····· 898
한국세라믹기술원 ····· 90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801
한국소비자원 ····· 1715
한국수력원자력(주) ····· 80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1387
한국수자원공사 ····· 1266
한국수출입은행 ····· 16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92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527
한국시설안전공단 ····· 129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1763
한국식품연구원 ····· 37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1222
한국어촌어항협회 ····· 1422
한국언론진흥재단 ····· 572
한국에너지공단 ····· 9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8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9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2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598
한국연구재단 ····· 194
한국영상자료원 ····· 68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688
한국예탁결제원 ····· 1708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16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95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65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1658
한국원자력연구원 ····· 390
한국원자력의학원 ····· 39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166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85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08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766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
한국임업진흥원 ····· 1822
한국자산관리공사 ····· 1685

한국잡월드 ····· 1199
한국장애인개발원 ····· 108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164
한국장학재단 ····· 45
한국재정정보원 ····· 22
한국저작권보호원 ····· 693
한국저작권위원회 ····· 697
한국전기안전공사 ····· 918
한국전기연구원 ····· 405
한국전력거래소 ····· 923
한국전력공사 ····· 812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96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83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410
한국정보화진흥원 ····· 2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603
한국조폐공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 ····· 1692
한국중부발전(주) ····· 8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184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85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837
한국지역난방공사 ····· 8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4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608
한국천문연구원 ····· 420
한국철도공사 ····· 127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425
한국철도시설공단 ····· 130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2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1212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70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707
한국콘텐츠진흥원 ····· 588
한국토지주택공사 ····· 1278
한국투자공사 ····· 27
한국특허정보원 ····· 185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430
한국학중앙연구원 ····· 146
한국한의학연구원 ····· 4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44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4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6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392
한국해양조사협회 ····· 1442
한국행정연구원 ····· 16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628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1879
한국화학연구원 ····· 445
한국환경공단 ····· 11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1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633
(재)한식재단 ····· 746
한약진흥재단 ····· 109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968
한전KDN(주) ····· 843
한전KPS(주) ····· 848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973
항공안전기술원 ····· 1350
항로표지기술협회 ····· 144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1397
해양환경관리공단 ····· 1377
환경보전협회 ····· 1136

부록 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253](330개, 2017.9월 현재)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시장형(14)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2)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3)
교육부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9)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3) 2017년 1월 지정한 2017년 공공기관은 332개(부설기관 23개)이었으나 2017년 9월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舊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舊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수시지정 결과를 반영한 2017년 9월 현재 공공기관은 330개(부설기관 23개 별도)임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시장형(14)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2)	
미래창조과학부 (46)					한국기계연구원(부설기관: 재료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 평가연구소) (37)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법무부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4)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문화체육관광부 (3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2)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4)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시장형(14)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2)	
문화체육관광부 (3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4)
농림축산식품부 (10)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
산업통상자원부 (41)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1)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5)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0)
보건복지부 (22)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 (15)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시장형(14)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2)	
환경부 (8)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4)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7)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국토교통부 (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5)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9)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1)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8)
중소벤처기업부 (9)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5)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시장형(14)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2)	
국무조정실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금융위원회 (7)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3)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주무부처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시장형(14)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6)	위탁집행형(72)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재단 (1)
산림청 (2)				한국임업진흥원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특허청 (5)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

부록 3 공공기관 설립근거(2017.9월 기준)

1 공기업(35개)

1) 시장형 공기업(14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

2) 준시장형 공기업(21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법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전KDN(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 준정부기관(88개, 4개 부설기관 별도)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2개, 4개 부설기관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법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법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45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관 제27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6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74조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3 기타공공기관(207개, 19개 부설기관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재)정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민법 제32조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재)한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민법 제3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 2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워터웨이플러스	국토교통부	상법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6항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민법 제32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법 제16조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33조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상법,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항만법 제88조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상법,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항만법 제88조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민법 제32조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로지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유통(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및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재료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및 제26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데이터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한국잡월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약진흥재단	보건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제13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39조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부록 4 공공기관 소재지 및 홈페이지(2017.9월 기준)

1 공기업(35개)

1) 시장형 공기업(14개)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www.airport.kr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www.kores.or.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h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21개)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co.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www.grandkorea.com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www.icpa.or.k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kab.co.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www.kepco-enc.com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www.koem.or.kr

2 준정부기관(88개, 4개 부설기관 별도)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개)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www.k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www.kspo.or.kr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14층	www.kofic.or.kr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www.sbc.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서린동)	www.ksur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www.kora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2개, 4개 부설기관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 4가)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www.hira.or.kr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www.ts2020.kr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www.knps.or.kr
국립생태원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50	www.서울요양원.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송학동 381번지)	www.fac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www.koroad.or.kr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www.i815.or.kr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www.ssi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st.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대림빌딩 2~3층	www.semas.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www.kcmf.or.kr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i-k.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www.nipa.kr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A동 4층	www.spri.k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TBC센터 6,7,8층	www.tipa.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삼릉빌딩	www.kofac.re.kr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반곡동)	www.mireco.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www.lx.or.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t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반곡동)	www.bohun.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4, 17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www.kistec.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4	www.ketep.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www.kisa.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www.kosaf.go.kr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2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www.nia.or.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3 기타공공기관(207개, 19개 부설기관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www.origin.or.kr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www.compa.re.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57길(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동서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ilje.or.kr
(재)정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3 정동극장	www.jeongdong.or.kr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www.kosbi.re.kr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0층	www.smartgrid.or.kr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35	www.kiaps.org
(재)한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www.hansik.org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www.high1.com
(주)워터웨이플러스	국토교통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www.waterway.or.kr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율곡동 790)	www.korcm.co.kr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co.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장항동, 웨스턴타워 티4빌딩 8층,9층)	www.iom-mrtc.or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4층	www.cwma.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dh.kr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4, 8,9층	www.nrc.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www.stepi.re.kr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www.nst.re.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or.kr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cfnmk.or.kr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www.knmm.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www.ipab.or.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www.krihs.re.kr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www.auri.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전민동)	www.ibs.re.kr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www.dgmif.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www.sports.or.kr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본관	www.nahf.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7층	www.kdemo.or.kr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popa.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www.ktitq.or.kr
산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www.sl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나라키움대전센터 13~15층	www.koreg.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www.kmrb.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mditac.or.kr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www.hanilmed.net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gugakfm.co.kr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층 309호	www.wiset.or.kr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3길 29	www.koda1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www.okf.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3층 5호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cuh.co.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용산동 1가)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www.kgls.or.kr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중앙동 4가)	www.bpsc.co.kr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항동7가)	www.port.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56(충무공동 82-2번지)	www.kohom.co.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www.sbdc.co.kr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50번지)	www.ibk.co.kr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한강로2가, 419번지)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용산 B동 10층, 11층	www.korailnetworks.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코레일유통(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www.korailtech.kr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kdwon.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www.khealth.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1	www.itkc.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www.kcdf.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4~6층	www.kistep.re.kr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www.kist.re.kr
-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nnfc.re.kr
-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www.kice.re.kr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0층	www.kf.or.kr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6~8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 재료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상남동 66번지)	www.kims.re.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nfr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층	www.kdata.or.kr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www.kcgp.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klt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삼동)	www.newseoulgolf.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 빌딩	www.k-vic.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www.kihasa.re.kr
-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www.kicce.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5,6층	www.kcpi.or.kr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fpp.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5층)	kncs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충무공동)	www.ktl.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3로 31 두산위브센티움 1,2층	www.ihaccp.or.kr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1201번길 62	www.kfri.re.kr
-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임암동)	www.wikim.re.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www.fip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www.ksd.or.kr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nea.or.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www.kae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www.kinac.re.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30 5층	www.drugsafe.or.kr
한국잡월드	고용노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kpfis.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공사 1, 5 층	www.copyright.or.kr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www.keri.re.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www.krr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www.ksponco.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www.pipc.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www.kiost.ac.kr
-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32	www.kriso.re.kr

기관명	주무부처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조정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re.kr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www.kei.re.kr
한약진흥재단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	www.nikom.or.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8-4(논현동)	www.kjc.or.kr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www.kiast.or.kr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IT캐슬2차 12층	www.kaan.or.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부록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7.9월 기준)[254]

1 부산 혁신도시(11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남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개)	-
· 기타공공기관	5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개)

2 대구 혁신도시(9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2개)	-
· 준정부기관	6개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6개)	-
· 기타공공기관	1개	한국사학진흥재단 (1개)	-

254) 2017년 9월 현재 108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98개 기관이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완료한 상태임

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13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3개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3개)	-
· 준정부기관	9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8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개)
· 기타공공기관	1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개)	-

4 울산 혁신도시(7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3개)	한국에너지공단 (1개)
· 기타공공기관	1개	에너지경제연구원 (1개)	-

5 강원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3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3개)	
· 준정부기관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개)	
· 기타공공기관	1개	대한적십자사 (1개)	

6 충북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6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개)	-
· 기타공공기관	4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2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개)

* 밑줄 친 기관은 충북 지역(오송)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7 충남 혁신도시(2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2개)	-
· 준정부기관	-	-	-
· 기타공공기관	-	-	-

* 밑줄 친 기관은 충남 지역(태안, 보령)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8 전북 혁신도시(6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4개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4개)	-
· 기타공공기관	2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개)	한국식품연구원 (1개)

* 밑줄 친 기관은 전북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9 경북 혁신도시(8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3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개)	-
· 준정부기관	2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2개)	-
· 기타공공기관	3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개)	-

* 밑줄 친 기관은 경북 지역(경주)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10 경남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4개)	-
· 기타공공기관	4개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4개)	-

11 제주 혁신도시(3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1개	공무원연금공단 (1개)	-
· 기타공공기관	2개	-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2개)

12 세종특별자치시(19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3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
· 기타공공기관	1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2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개)	-

255)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국토연구원 본원은 2016년 8월말 현재 완료되지 않음

부록 6 2017년 기금현황(67개 기금)[256]

1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3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3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56)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기금현황』(2017.7.6)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및 업무이관 등을 반영하여 기금별 주무부처를 수정함(<부록 7>과 <부록 8>에 동일하게 적용)

2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3 사업성 기금(53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1항	2003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0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1항	2011년	환경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1항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	1967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7년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부록 7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257]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258]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257) 2017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이 중 35개 기금을 31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음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258]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법	-	한국연구재단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258]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258)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소관부처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임.

부록 8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259)]

1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3조 ○ 목적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2)설치연도	1960년	(3)운용개시연도	1960년	
(4)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65조 및 제73조)	○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금 :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제65조(비용부담금의 원칙) 등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 '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19년까지 단계적 인상('16년 8.0%)			
(7)기금의 용도 (제73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74조)	○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Tel : 064-804-2056)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5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5실지급	'16실지급	'17계획
		-	-	-

259)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기금현황』(2017.7.6) 내용 중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35개 기금에 대한 개요부분을 발췌함

2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4">○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목적 :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1992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2년</td></tr>
<tr><td>(4)주무부처</td><td>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2조제2항)</td><td colspan="4">○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2조제3항)</td><td colspan="4">○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체신관서, 기타 금융회사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4">○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3">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 (Tel : 02-2110-259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3">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기금관리팀:(Tel : 042-869-6021)</td></tr>
<tr><td colspan="3">인력규모 : 7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724</td><td>741</td><td>615</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1조
○ 목적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8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8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보건복지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보건복지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01조)</td><td colspan="5">○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6조, 제50조, 제102조)</td><td colspan="5">○ 국민연금급여 지급(국민연금법 제50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국민연금법 제46조)
○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국민연금법 제102조)</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1.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범위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2. 기금운용자산군 :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Tel : 044-202-360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예산조직부 (Tel : 063-713-5137)</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654명(본부 925명, 하부조직 4,729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42,700</td><td>48,585</td><td>62,698</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 목적 :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2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20조제2항)</td><td colspan="5">○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2조)</td><td colspan="5">○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팀 (Tel : 02-410-1314)</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5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 목적 : 국유재산의 원활환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2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기획재정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기획재정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6조의3)</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와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6조의5)</td><td colspan="5">○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Tel : 044-215-5264)</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Tel : 051-794-4820~4225)</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2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927</td><td>1,750</td><td>2,127</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6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 목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1991년</td><td colspan="2">(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2년</td></tr>
<tr><td>(4)주무부처</td><td>외교부</td><td colspan="2">(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국제교류재단</td></tr>
<tr><td>(6)조성재원 (제14조)</td><td colspan="5">○ 제14조(기금의 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6조)</td><td colspan="5">○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1.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2.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예산팀
(Tel : 02-2046-852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7 국제질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목적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7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외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외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3조)</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근거)
○ 기금운용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조)</td><td colspan="5">○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및 민간단체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Tel : 02-2100-8361)</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
(Tel : 031-740-0642)</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6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8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목적 :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3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4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고용노동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근로복지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88조)</td><td colspan="5">○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20% 가감 조정
○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91조)</td><td colspan="5">○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풀에 예치</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
(Tel : 052-704-7778)</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9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통일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통일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4조)</td><td colspan="5">○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설치)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8조)</td><td colspan="5">○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 국공채, 통안증권
○ 신용등급 AAA 이상의 은행채
○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연기금투자풀로 한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Tel : 02-2100-5744)</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Tel : 02-3779-6643)</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37명(본부 36명, 일선기관 1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2,813</td><td>2,277</td><td>2,279</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목적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6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68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55조)</td><td colspan="5">○ 제5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57조)</td><td colspan="5">○ 제57조(기금의 용도)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3.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4.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 044-201-222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기금관리부 (Tel : 061-931-11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7명(본사 7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147</td><td>1,169</td><td>1,216</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 목적 :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5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2조)</td><td colspan="5">○ 제22조(기금의 조성)
1. 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3조)</td><td colspan="5">○ 재보험금지급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여유자금 운용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제1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풀 예치</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Tel : 044-201-1796)</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Tel : 02-3775-6716)</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명(본부 5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648</td><td>662</td><td>657</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2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적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32조)</td><td colspan="5">○ 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4조)</td><td colspan="5">○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3항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다른 기금으로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Tel : 044-201-1732)</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Tel : 061-338-593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3명(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294</td><td>1,565</td><td>1,619</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⑬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목적 :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기획재정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기획재정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4조)</td><td colspan="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란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7조)</td><td colspan="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 (기금의 재원)
1~4.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5.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Tel : 044-215-8776)</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Tel : 02-3779-535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38명
(본부 88명, 사무소 26명, 파견, 연수, 휴직 등 24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2,915</td><td>14,645</td><td>15,383</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⑭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목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3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73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문화예술위원회</td></tr>
<tr><td>(6)조성재원 (제17조)</td><td colspan="5">○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8조)</td><td colspan="5">○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4.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제1금융권 예치
○ 연기금투자풀 예치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el : 061-900-2290)</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4">○ 근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33조
○ 목적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200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9조)</td><td colspan="4">○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납입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0조)</td><td colspan="4">○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4"><table><tr><td colspan="2">구분</td><td>투자 가능 자산군</td></tr><tr><td rowspan="2">단기자금</td><td>현금성</td><td>MMF, MMDA</td></tr><tr><td>유동성</td><td>CD, CP, 정기예금, RP, 연기금투자풀 혼합형상품(단기매치형)</td></tr><tr><td colspan="2">중장기자금</td><td>CD, 정기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연기금투자풀의 혼합형 상품</td></tr></table></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4">○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3">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Tel : 044-203-5343)</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3">기관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Tel : 02-6450-5560)</td></tr>
<tr><td colspan="3">인력규모 : 9명(본부 9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739</td><td>1,666</td><td>1,591</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16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0년[260]</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0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td></tr>
<tr><td>(6)조성재원 (제25조제5항)</td><td colspan="5">○ 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6조)</td><td colspan="5">○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전파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파법』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2110-296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 (Tel : 02-2110-137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사업관리본부 (Tel : 061-350-1235)</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25 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261]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3,106</td><td>3,604</td><td>3,611</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60)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261)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 목적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7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교육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53조의2)</td><td colspan="5">○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조)</td><td colspan="5">○ 부담금의 징수
○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자산의 운용
○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유가증권의 매입
○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운용지원팀 (Tel : 02-769-4170)</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⑱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목적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학 교육진흥에 이바지 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0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교육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사학진흥재단</td></tr>
<tr><td>(6)조성재원 (제18조)</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9조)</td><td colspan="5">○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통화금융기관</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실
(Tel : 053-770-2510, 2520, 251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 colspan="2">'17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 colspan="2">'17계획</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19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5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37조의4, 제37조의5)</td><td colspan="5">○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7조의4, 제37조의5)</td><td colspan="5">○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또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탁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연기금투자풀
○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이 높고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Tel : 044-203-4517)</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관리팀 (Tel : 02-6009-4330)</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2명(본부 9명, 일선기관(부담금관리) 3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225</td><td>1,246</td><td>1,263</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적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5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중소벤처기업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중소벤처기업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20조)</td><td colspan="5">○ 법 제20조(재원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1조)</td><td colspan="5">○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가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 042-481-4565, 4361)</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 042-363-7100)</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7 명(본부 7 명, 일선기관 0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1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목적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0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0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언론진흥재단</td></tr>
<tr><td>(6)조성재원 (제34조제2항)</td><td colspan="5">○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td><td colspan="5">○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5조 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에 원칙)</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Tel : 02-2001-771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2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 목적 :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7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영화진흥위원회</td></tr>
<tr><td>(6)조성재원 (제24조)</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제24조 1항)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제24조 2항)
○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제24조 3항)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24조 4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제24조 5항)</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5조)</td><td colspan="5">○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제25조 1항)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제25조 2항)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5조 3항)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제25조 4항)</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영화진흥위원회 경영지원본부 재무팀
(Tel : 051-720-4724)</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3-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7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7조제3항)</td><td colspan="5">○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제3항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9조)</td><td colspan="5">○ 원자력진흥법 제19조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22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2. 금융회사 등에 예치</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Tel : 02-2110-2454)</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 (Tel : 042-869-6024)</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3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180</td><td>180</td><td>180</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3-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1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16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원자력안전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td></tr>
<tr><td>(6)조성재원 (제111조의4 제1항)</td><td colspan="5">○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1항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11조의4 제1항)</td><td colspan="5">○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2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확정금리형 상품
○ MMF, MMDA, RP, CD 등
○ 연기금 투자풀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Tel : 02-397-7385)</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Tel : 031-626-9754)</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6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1,250</td><td>1,283</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4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농림축산식품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4조제3항)</td><td colspan="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3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5조)</td><td colspan="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5조
1.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및 제27조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Tel : 044-201-1722)</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Tel : 061-931-11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 명 (본부 5 명, 일선기관 - 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493</td><td>459</td><td>441</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5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전기사업법 제48조
○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50조)</td><td colspan="5">○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 전기요금 × 3.7%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기술료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9조)</td><td colspan="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 전력수요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에 관한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에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연기금 투자풀 예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Tel : 044-203-5250)</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Tel : 02 - 6007 - 03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38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5,841</td><td>5,871</td><td>6,185</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6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목적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5년[262]</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42조)</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44조)</td><td colspan="5">○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Tel : 02-2110-2966)</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사업관리본부[263] (Tel : 061-350-1235)</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12 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264]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20,318</td><td>20,422</td><td>20,844</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62) 19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26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년부터 기금운용·관리 위탁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

264) 기금운용·관리기관 기금관리비 및 기금사업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비를 의미

27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 목적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1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1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국토교통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국토교통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5조)</td><td colspan="5">○『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 자체재원 :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주택법』 제75조 등
- 차입금 :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9조)</td><td colspan="5">○『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융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 현금성 및 유동성 : 정기예금, CD, MMDA 등
- 중장기 :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풀 등</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Tel : 044-201-3339)</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Tel : 02-3771-639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57명(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현원)</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239,107</td><td>265,925</td><td>167,948</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법률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목 적 :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td></tr>
<tr><td>(2)설치연도</td><td>1978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3">197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중소벤처기업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3">중소기업진흥공단</td></tr>
<tr><td>(6)조성재원 (제64조)</td><td colspan="5">○ 법 제64조(기금의조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67조)</td><td colspan="5">○ 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2. 연수사업 등 경상지출
3. 전산시스템구축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 055-751-9431~9)</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29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목적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문화체육관광부 장관</td></tr>
<tr><td>(6)조성재원 (제13조제2항)</td><td colspan="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15조)</td><td colspan="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풀</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3">(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Tel : 044-203-3219)</td></tr>
<tr><td rowspan="2">위탁관리</td><td colspan="4">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Tel : 02-2001-7821)</td></tr>
<tr><td colspan="4">인력규모 : 4 명(본부 4 명, 일선기관 0명)</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584</td><td>551</td><td>595</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0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중소벤처기업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기술보증기금</td></tr>
<tr><td>(6)조성재원 (제13조제1항)</td><td colspan="5">○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8조)</td><td colspan="5">○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기술·경영지도 등</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기관 예치
○ 연기금투자풀 투자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기술보증기금 종합기획부 (Tel : 051-606-7401)
자산운용실 (Tel : 051-606-7566)</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1 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무역보험법 제30조
○ 목적 :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69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69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산업통상자원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무역보험공사</td></tr>
<tr><td>(6)조성재원 (제31조, 제35조제1항)</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5조제2항)</td><td colspan="5">○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3조)</td><td colspan="5">○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제2호,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기업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 적용</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기획부 기금예산팀
(Tel : 02-399-5779)</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목적 : 민간투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과 국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94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95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기획재정부</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신용보증기금</td></tr>
<tr><td>(6)조성재원 (제31조)</td><td colspan="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32조)</td><td colspan="5">○ 보증채무의 이행
○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8조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포함)·사채·그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Tel : 053-430-4477)</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76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76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신용보증기금</td></tr>
<tr><td>(6)조성재원 (제6조제1항)</td><td colspan="5">○ 정부의 출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3조)</td><td colspan="5">○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유동화회사보증업무</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금융회사등에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Tel : 053 - 430-4112)</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목적 :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2003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2003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예금보험공사</td></tr>
<tr><td>(6)조성재원 (제26조3)</td><td colspan="5">○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지원자금의 회수자금
4. 제30조의3에 의한 특별기여금,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등</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26조3)</td><td colspan="5">○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의 정리</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 (Tel : 02-758-0161)</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3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관리)

<table>
<tr><td>(1)설치근거 및 목적</td><td colspan="5">○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 목적 : 신용보증을 위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td></tr>
<tr><td>(2)설치연도</td><td colspan="2">1987년</td><td>(3)운용개시연도</td><td colspan="2">1988년</td></tr>
<tr><td>(4)주무부처</td><td colspan="2">금융위원회</td><td>(5)관리주체</td><td colspan="2">한국주택금융공사</td></tr>
<tr><td>(6)조성재원 (제56조, 제59조의3)</td><td colspan="5">1.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2.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3.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td></tr>
<tr><td>(7)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9조의4)</td><td colspan="5">○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td></tr>
<tr><td>(8)여유자금 운용범위</td><td colspan="5">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4.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td></tr>
<tr><td>(9)회계방식</td><td colspan="5">○ 국가회계기준</td></tr>
<tr><td rowspan="2">(10)기금관리방식</td><td>직접관리</td><td colspan="4">부서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Tel : 051-663-8492)</td></tr>
<tr><td>위탁관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td><td colspan="2" rowspan="2">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주)</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td><td>'15실지급</td><td>'16실지급</td><td>'17계획</td></tr>
<tr><td>-</td><td>-</td><td>-</td></tr>
</table>

부록 9 2016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265)266)]

1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2		2	
	- 기관의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8		8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2		63	
	- 자구노력 이행성과	4			
	- 재무예산 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6 (2) (2)		6
	- 계량 관리 업무비		2		3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6 (3)		6 (3)	
	- 총인건비 인상률		3		3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267)]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8	32	20	30
합 계		40	60	40	60

265) 기획재정부『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2016.12월

266)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됨.

267)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2		3	
	- 기관의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5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6		6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2		2	
	- 자구노력 이행성과	4			
	- 재무예산 성과		6		4
	(부채감축달성도)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2)		
	- 계량 관리 업무비		3		6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6		6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3)		(3)	
	- 총인건비 인상률		3		4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268]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8	32	20	30
합 계		40	60	40	60

268)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2		4	
	- 기관의 경영혁신	3		3	
	- 국민평가		2		2
	- 정부 3.0		1.5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4		5
	3.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2		3	
	4.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예산 관리[269]	2		2	
	- 자구노력 이행성과	4			
	- 부채감축 달성도		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270]		5		5
	- 계량 관리 업무비		4		6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6 (3)		6 (3)	
	- 총인건비 인상률		3		4
	- 노사관리	3		3	
	소 계	22	28	20	30
주요사업[271]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8	32	20	30
합 계		40	60	40	60

269) 합리적인 예산운용 등 예산관리 중심으로 평가
270) 기금운용평가(비계량+계량) 결과 활용
271)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4 강소형기관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중장기 제출[272]		非 제출기관	
		비계량	계량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 국민평가(국민체감도 평가제외)		2		2
	- 정부 3.0		1.5		1.5
	-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1.5
	- 정부권장정책		5		5
	2. 업무효율		5		5
	3.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 재무예산 관리	2			
	- 자구노력 이행성과	3			
	- 재무예산 성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3[273]		1(2)[274]
	- 계량 관리 업무비		4		6(5)[275]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 보수 및 복리후생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6 (3)		6 (3)	
	- 총인건비 인상률		3		3
	- 노사관리	2		2	
	소 계	10	25	5	25
주요사업[276]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10	20	10	20
합 계		20	45	15	45

272) 부채감축 달성도 평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기관 중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만 적용

273) 사업비 집행률(1점), 부채감축 달성도(1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1점)임. 다만, 15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채감축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률(1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2점)으로 평가

274)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1점)와 사업비집행률(1점)로 각각 평가

275)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1점)와 사업비집행률(1점)로 각각 평가

276) 개별기관의 현안과제, 성과지표 도출 한계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별 가중치 조정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분야별 집필진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서니나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서영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문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